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828-01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11.4

농림수산식품자료실



0000725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4.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4월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마 상 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성 재 선임연구위원

김 강 호 전문연구원

요 약

- 이 연구의 목적은 2004년 수립된 정예농업인력 종합대책을 포함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을 종합·진단하고, 최근의 농림수산물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육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과거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역사, 정예농업인력육성정책을 분석하고 비농업 분야 인력육성정책 사례를 비교·검토하고,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를 통해 과거 농업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주요 농업인력육성 정책(농림수산계 학교,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 법인경영체, 신지식농업인, 선도농업경영체 등의 육성사업,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 교육훈련, 귀농·귀촌지원)의 역사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이전에 도입·추진된 사업들은 농업인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지만, 농업인력육성 사업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상당수 사업이 자금지원에만 머물러 농업인이 실제 영농을 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 해결이나 경영방식 개선에 대한 역량 강화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 대한 중간 진단 및 그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었다.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은 이전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농업인력육성 사업을 하나의 비전아래에서, 전체 농정과의 조화 속에 추진·점진된 최초의 농업인력분야 종합대책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비전—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의 농가 20만호 (전체농가의 1/4)를 육성하여 이들의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 담당—과 세부 사업 영역별 목표 성취가 어려워 보인다.

- 신규인력 양성·유입과 관련하여 40대 이하 신규 농가경영주가 매년 2,000~2,500명 규모로 유입되고 있어, 당초 설정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신규 유입자 대다수가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들로 농업계 학생들의 영농분야 유입 활성화가 요구된다.
 -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설정된 당초 사업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어서 달성이 어렵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후계농들이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농촌에 정착하고 있었다.
 - 전문성 신장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농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절대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당초 목표에는 많이 부족하였다.
 -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사후관리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중앙단위에서는 농촌정보문화센터·농업인재개발원 설립을 기반으로 해 인력육성단계별 사업의 전개 및 평가, 인력 DB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처내 실국 단위의 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고, 지역 단위의 농업인력육성사업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 비농업분야 정부 부처에서 해당분야 인력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고찰하고, 농업인력 육성정책에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를 정리하였다.
- (사)한국경제교육협회의 대국민 경제교육,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등은 농업분야의 잠재인력풀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는 인력육성 사업간의

연계 강화를,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지원 프로그램은 농가 경영체 승계를 촉진시키는 사업 도입을, 중소기업청의 ‘인력실태조사’는 농가 관점이 아닌 인력 육성의 관점에서 인력관련 정보수집 체계 마련을,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전담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는 지역의 농업인력 육성사업 전달체계로서 중간조직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이상의 과거 농업인력정책 역사,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진단 및 성과 평가,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에 대한 고찰한 결과와 관련 전문가 협의를 토대로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인력육성상] 농업인력육성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육성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이란 ‘잘사는 농업인’, ‘프로 경영인’, ‘윤리적 생산자’를 의미한다.
 - **잘사는 농업인:**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농업인, 농지를 가지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사람
 - **프로 경영인:** 여러 경영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창의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느끼는 전문 직업인
 - **윤리적 생산자:**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자신의 발전 뿐 아니라 이웃 농가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농업인
- [인력육성단계] 선진 외국 그리고 최근의 농업통계에서 활용하는 농가 구분 방식(주업/부업)을 활용하고, 주업 농가를 중심으로 잠재·예비 단계 재설

정 및 은퇴 단계 추가하여 '잠재단계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정착단계 → 은퇴단계' 등 5단계로 설정하였다

- [농업인력육성 목표] 2020년까지 전문농(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 농가) 20만호 육성하고,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한다.
-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방향] 잠재인력 및 예비 인력 풀(pool)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력의 성장단계별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 역량(회계·위기관리)과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고, 지역의 농업인력육성 관련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강화하고, 농업인력육성 정책이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계획·운영·평가되도록 해야 한다.
- [세부 추진사업] 기존 사업외에 신규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 잠재인력 발굴: 기존 관련기관에서 하는 사업의 확대 추진 (시범학교 운영 적극 활용): 농산어촌 유학, 농직업탐구 프로그램,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등 확대
 - 신규인력 유입: 농고·농대 영농관련 프로그램 사업 강화, 영농 승계(이양) 활성화 사업 추진, 비농가 출신 농업계 학생 및 비농대생의 신규 유입 촉진 사업
 - 영농정착 지원: 후계인력 정착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 지정
 - 농업인 전문성 개발(교육 + 컨설팅): 농업인 회계 및 위기관리 교육강화, 사회적책임·공공성 관련 교육 강화
 - 농업인력육성 시스템 개선: 세부 사업별 성과 진단 체제 구축, 농업인력 실태 조사 실시

ABSTRACT

New Orientation and Measures for the Farmer Fostering Policy(2004~201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new orientation and measures for the farmer fostering policy(2004~2013) by reviewing past related policies, evaluating a current farmer developing policy, and study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in other sectors.

Past farmer fostering policy review indicated that linkages between programs were relatively short and most were just funding without supporting problem solving or management revision of farmers, while those helped securing a new workforce in farming and advancing competitiveness of farmers.

Evaluation of the farmer fostering policy(2004~2013) showed that the policy has ever been the first comprehensive plan in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sector under one vision coordinated with other agricultural policies. The policy has 6 major program domains including preliminary farmer induction; new young farmer settlement; farmer education and training; agricultural consulting;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and associated human resource development. Performance analysis implied that the policy's overall goal and specific programs' performance objective has not been achieved.

Inspecting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s in other sectors suggested securing potential agricultural human resource program, fostering linkages between existing programs, farm succession promoting program, periodical agricultural human resource survey, intermediary organization for local agricultural human resource.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revised farmer fostering programs in pursuit of farmer who leads sustainable agriculture, which had three farmer images: wealthy farmer, professional farmer, and ethical farmer. The revised farmer fostering program set 5 developmental stages of professional farmers: potential, preliminary, start-up, settling, and retiring. New goal was set up: 200,000 professional farmers who has arable land over 3 ha or commodity

sale over 20 million won, who produce over a half of total agriculture product. New programs was proposed: digging out potential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inducing new human resources in farming area including farming program reinforcement in agricultural education institute and promoting farming succession program; introducing intermediary organization; farmer competency development program in such fields as accounting, risk management and social responsibility; agricultur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such as program impact assessment system and periodic agricultural human resource survey

Researchers: Ma Sang-Jin, Park Sungjae, Kim Kangho

Research period: 2010. 12. - 2011. 4.

E-mail address: msj@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내용	3
3. 연구방법	5

제2장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역사와 시사점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6
2. 전업농 육성사업	12
3. 법인경영체 육성사업	17
4.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21
5.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25
6. 농림수산계 학교 육성사업	31
7.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	33
8. 농업인 교육훈련	36
9. 귀농·귀촌지원 사업	40
10. 소결	43

제3장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진단 및 성과 평가

1. 정책의 비전	46
2. 투입 예산 내역	48
3. 추진 사업 내용	49
4. 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55

제4장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 사례

1. 잠재인력풀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86
2. 신규인력유입 활성화	92
3. 인력육성지원 시스템	97
4. 시사점	99

제5장 농림수산식품 인력육성정책 발전방안

1. 농업인력육성의 과제와 인력상	102
2. 농업인력육성의 단계 설정	110
3. 농업인력육성 비전 지표 재설정	120
4. 사업의 기본 방향 보완	122
5. 세부 추진 사업 보장	124

부록: 타부처 주요 인력육성 지원 사업	148
-----------------------------	-----

참고 문헌	159
-------------	-----

표 차 례

표 2-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주요 변천내용	9
표 2-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내역	10
표 2-3.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의 주요 개선내용	14
표 2-4. 연도별 전업농 선정인원	16
표 2-5.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19
표 2-6. 농업법인 운영 현황	20
표 2-7. 품목별 신지식농업인 선정인원 현황(1999~2010년)	25
표 2-8.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컨설팅 비교	29
표 2-9.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현황	32
표 2-10. 품목별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기준(가족경영체)	34
표 2-11.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현황	36
표 2-12. 농업인력육성 정책사업 내용 종합	44
표 3-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분야별 투입예산(계획)	49
표 3-2.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투입예산 현황	58
표 3-3.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여부	59
표 3-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의 전업농 소요추정	63
표 3-5. 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변화	64
표 3-6.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수준 농가수 변화 (2004~2009)	65
표 3-7. 품목별 도시 가구 소득 이상 농가수 변화(2004~2009)	66
표 3-8. 영농분야 신규유입자 연령·학력	70
표 3-9. 최근 5년간(2005~2009) 신규유입 농가경영주 변화	72
표 3-10. 농업인턴제 연도별 실적	74
표 3-11. 후계 농업경영인 정착률 현황	75

표 3-1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76
표 3-13. 농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가수 변화	78
표 3-14. 농업교육훈련사업 연도별 실적	79
표 4-1. 2단계 프로그램 지원 내용	94
표 4-2. 창업컨설팅 세부과제별 지원한도	96
표 5-1. 농업부문 총량지표 추이와 전망(1970~2030년)	107
표 5-2. 선행연구에서의 농업인력육성단계 설정	111
표 5-3. 정예농업인력 요건의 다양성	113
표 5-4. 일본의 농업경영체 구분	115
표 5-5. 농업경영체 유형별 주요 특성	118
표 5-6. 농업경영체 유형별 규모	119
표 5-6. 농가유형별 인력육성목표 규모	121
표 5-7. 농업인력육성의 단계별 목표와 관련 사업	123
표 5-8. 농과대학의 이원화된 교육체제 운영(안)	132

그림 차례

그림 2-1. 농업경영 컨설팅의 추진체계(1997년)	26
그림 3-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과 정책들	47
그림 3-2. 영농규모 상위 1/4 농가의 농가소득 변화(2004~2009)	67
그림 3-3. 영농규모 상위 1/4 이상 농가의 농업생산 비중 변화(2004~2009)	68
그림 4-1.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지원 단계	93
그림 4-2. 가업승계지원센터의 기능	95
그림 5-1.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의 농업인상	109
그림 5-2.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체계(농림부 1999)	110
그림 5-3. 농업인력육성의 단계	117
그림 5-4. 농업계 학생의 Career Path 설정(안)	129
그림 5-5. 지역 농업인력지원 조직(안)	140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960년대부터 상공업 중심, 도시 중심의 산업화에 따라 가속화된 이농으로 인해 농업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였음. 1990년대 UR 이후 진행된 FTA 협상은 가격·소득 불안정의 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농가경영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협하였고, 신규 농업인력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고령화 되어가는 농가의 경영악화 현상을 가속화하였음.
-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농업계 학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농업인 교육, 전업농 육성, 신지식농업인 육성 및 농업벤처 지원, 농업인 교육 평가체제 도입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였음.
 -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농업계 학교 본격 육성('90년대 중반~)
 - '91년부터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영농4-H회 지원('03, 14천명)
 - 도별 1개씩 9개 자연농고('95~'98)와 14개 농업계 특성화대학('94~)에 시설·장비·기자재 등을 지원
 - 정예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농업전문학교 설립('97)

- 농업인의 영농기술·경영 교육 및 연수 지원('80년대 초반~)
 - '82~'03년까지 110만명에 대해 기술·경영·정보화 교육 지원
 - '03년까지 후계농업인, 전업농 등 3천명에 대한 해외연수('85년~)
 - 후계농업인 선정 및 창업자금 지원('80년대 초반~)
 - 농업계 학교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후계농업인육성사업 실시('81년)
 - 후계자 122천명 선정, 2조 2천억원 지원('81년~'03년)
 -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농 육성('90년대 초반~)
 - '92년부터 후계농업인육성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업농자금, 영농규모화사업 등을 활용하여 농업인의 규모화 지원
 - 쌀전업농('95~'03) : 85,701명, 기타 전업농('92~'99) : 10,631명
 - 대학 졸업자를 중심으로 선도개척농으로 육성('95년~'98년): 210개 농가 및 농업법인(141억원 용자지원)
 -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지식농업인 및 농업벤처 육성('99년~)
 - 신지식농업인 173명을 선정, 홍보 및 자금지원 우대('99년~)
 - IT·BT 등 관련기술을 활용하는 벤처창업 지원('01년~): 창업보육센터·기술평가기관 지정, 투자조합 결성 등 창업 인프라 정비
 - 농업인 교육 평가체제 도입 및 농업경영컨설팅 지원('99년~)
 - 교육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실시('03년~)
 - 컨설팅('99년~'03년) : 2,828농가, 국고보조(사업비의 30%) 68억원
- 농림부는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의 하나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중점 육성'을 제시하고, 농업인 고령화에 대비한 신규정예농업인력 양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
- 농업·농촌종합대책을 기반으로 동년 12월에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

책이 마련되었고, 2013년까지 88천호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 20만호를 육성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규농업인력 육성과 기존 농업인력의 정예화 방안을 수립·추진해 왔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최초 설정한 사업 종료 시점(2013년)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와 추진과정 상에 발생되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이를 통해 지난 농업인력육성정책의 개선점을 면밀히 구명함으로써 향후 인력육성 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하고자 함.
- 이 연구의 목적은 2004년 수립된 정예농업인력 종합대책을 포함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다양한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을 종합·진단하고, 최근의 농림수산물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인력육성정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음.

2. 연구 범위와 내용

2.1. 연구 범위

-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이라 하면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력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루어야 함. 하지만 이 연구는 2004년 정부의 정예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중간 평가 성격의 연구이기에, 농림수산물 인력의 범위를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한정하였음¹.

2.2. 주요 연구내용

-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역사와 시사점 고찰
 - 농업인력 육성정책 배경과 주요 성과를 고찰함.
 - 농업인력 육성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함.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 진단과 성과 평가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정책비전, 투입예산, 추진사업을 고찰함.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신규인력 유입, 정착지원, 농업교육훈련 및 컨설팅, 사후관리 체계 부문의 주요 사업 성과와 개선점을 진단함.

-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정책 사례 고찰
 - 비농업분야 정부부처의 인력육성과 관련한 주요 사업을 고찰함.
 - 농업분야 인력육성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 발전방안 제시
 - 기존 정책에 대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력육성 목표, 사업추진방향을 강구함.
 - 신규유입, 영농정착, 농업인 전문성 개발, 잠재인력 개발, 인력육성시스템 개선 등에 필요한 세부 추진사업을 제안함.

1 또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농업 관련분야 인력으로 다루고 있는 여성농업인, 농업벤처, 유통전문인력 등과 관련한 정책들은 발주처(농림수산물식품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음.

3.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과거 농업인력육성정책의 역사,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관련 자료 검토
- 농업관련 분야(농촌·수산업·식품 분야) 인력육성정책 검토
- 비농업 분야 인력육성정책 사례 검토

○ 관련 통계 분석

- 통계청의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농가경제조사 등 농가 통계와 고용정보원의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등 농업인력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음.

○ 전문가 면담 및 협의

- 과거 농업인력육성사업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관련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 개최
- 전문가 협의회: 4회(2011년 1월 5일, 2월 17일, 3월 4일, 3월 30일)
- 현장 전문가 면담: 4회(2011년 3월 9일, 4월 11일, 4월 12일, 4월 13일) 수행
- 면담 및 협의 참여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농업 컨설턴트, 농업인단체,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담당자, 농촌진흥기관 정책 관계자, 농업계 대학 교수, 농업공공기관 관련 담당자, 농업정책 연구자, 비농업분야 인력육성 전문가 등

제 2 장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역사와 시사점

- 도시와 상공업 중심의 산업화로 인한 인력 유출로, 농업인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농정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주요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역사를 고찰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음².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가인구의 노령화 현상 심화, 농촌임금 상승과 농촌일손의 부족 문제 대두, 농촌청소년의 농업기피와 이농현상으로 인해 농업노동력의 질적 저하 및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농촌지역의 후계인력 부족문제에 따라 1977년부터 농수산부 내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78년에 기본방향을 수립하였음.

² 이 장에 언급된 정책 외에도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추진된 많은 농업인력육성정책이 있지만, 정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언급된 인력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1980년 8월 25일 농어민후계자 육성 강화안이 대통령에게 보고, 이어 9월 10일 농수산정책 조정 방향의 일환으로 농어민후계자 육성 방안이 발표되었음.
 - 1980년 11월 5일에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이 제정되었고, 1981년 2월 28일에는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시행령’이 공포되어 1981부터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됨³.
 -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은 권력형 부정축재자 기부재산을 매각한 대금 395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1981년 1,795명의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여 총 86억원을 지원함.
- 1984년에는 1987년까지 마을당 1명 이상의 후계농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갔으나, 1989년에는 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자가 확보되었다는 판단 하에 장기적으로 자연부락당 1명씩의 후계자 확보를 목표로 선발인원을 감축함.
 - 1989년 감축된 지원대상인원이 1991년 7월에 수립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씩 농어민후계자를 선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계자육성계획이 발표되었으며, 후계인력의 조기 확보를 위해 예비후계자제도가 도입되었음.
 - 예비후계자 제도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시 폐지되었음.
 - 2001년부터 기존의 후계농업인을 신규후계농업인과 취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하게 됨.
 - 기존의 후계농업인은 (재촌)신규후계농업인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농촌

³ 1978년부터 4-H(새마을청소년회)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영농후계자 육성자금을 통합·운영함.

외부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취농창업후계농업인을 구분함.

- 신규후계농업인은 기존대로 4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취농창업 후계농업인은 35세 미만인 자로 연령을 제한함.
 - 2004년에 종전의 후계농업인 명칭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변경되었고, 신규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이 농업종합자금으로 편입되었으며, 연령제한을 45세로 변경함.
- 2005년에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확대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창업농후견인제도⁴, 농업인턴제⁵가 도입되었고, 2006년에는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이 시행되었음.
-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은 우수후계농업인이 영농규모를 확대하거나,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15년) 자금이 지원됨.
- 2007년도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선교육 후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공통교육(기본교육, 전문교육) 및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지원금을 융자하도록 하였고, 영농정착지원자금의 효과적 투자 및 자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 종전 1년 내 지원방식에서 3년간 분산지원방식(3년 자금대출제 및 자금 Pool제)을 도입함.
- 2009년에는 사업 근거법령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사업 기본법’으로 변

4 창업농 후견인제는 창업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신지식농업인, 농업계 대학교수 등의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서 창업농을 지도·지원하는 제도이며, 후견인에 대해 월 50만원의 지도지원비가 지급됨.

5 농업인턴제는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 3학년, 농업계 대학 재학생 등 잠재적인 후계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영농현장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인턴 채용농가는 농업인턴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하고,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가 50%를 지원함.

경되었고, 기존 신규후계농과 취농창업후계농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창업농업경영인'으로 일원화함.

- 45세 이하로 연령제한을 통일하고 영농경력 제한을 삭제하였으나, 용자금 액수는 종전 신규와 창업농 연령에 따라 차별화하였음.

- 2010년도 사업에는 근거법령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환됨과 동시에 45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제한을 재변경하였고, 영농경력 역시 10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였으며, 종전의 상환기간(15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 예산당국의 용자기간 축소조정으로 10년(3년 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변경됨.

표 2-1.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주요 변천내용

년도	후계농업 경영인 명칭	사업목표	대상 연령	근거법령	기타
1981	농어민 후계자 (‘81~’93)	마을(법정리)당 1명 이상의 후계농 육성(‘84~’87) 자연부락(6만개) 당 1명씩 후계자 확보 (‘87~’91) 향후 10년간 매년 1만명의 농어민후계자 육성	30세 이하	농어민후계자 육성기금법	여성후계농 선발
1982					
1983					
1984					
1985					
1987					
1989			35세 미만		
1991	농업인 후계자		40세 미만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90.4 제정)	농어촌구조개선대책 발표
1992					예비후계자제도 도입
1994					산업기능요원제 연계
1998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탈북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포함
1999			예비후계자 제도 폐지		
2000	후계농업인			농업·농촌	

2001	후계농업인 (신규/취농)	신규: 40세 미만 창업: 35세 미만	기본법 (‘99.2 제정)	농업·농촌기본법 개정
2003				
2004	후계농업 경영인 (신규/취농)	신규: 45세 미만 창업: 35세 미만	기본법 (‘99.2 제정)	우수후계농업인 추가지원사업 시행 3년 자금대출제 선교육후지원 방식도입
2006				
2007				
2009	창업농업 경영인	45세 이하	농어업·농어 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영농경력제한 삭제
2010	후계농업 경영인	18-45세 미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경력 제한(10년 미만) 재규정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1981년부터 2009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조 8,443억원이며, 총 130,073명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음.

- 지속적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시행으로 마을당 1명 이상의 후계농이 정착하였으나, 1991년 이후 매년 1만명 정도의 후계농을 선정·육성한다는 계획과 달리 1992년 이후부터는 목표에 미달하였고, 특히 1999년부터는 육성인원이 급격히 감소하게 됨.

표 2-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내역

단위: 명(%)

연도	품 목								합 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한우	낙농	기타 축산	
1981	73 (4.07)	- (0.00)	213 (11.87)	29 (1.62)	34 (1.89)	1,369 (76.27)	20 (1.11)	57 (3.18)	1,795 (100.00)
1982	473 (25.62)	- (0.00)	347 (18.80)	67 (3.63)	92 (4.98)	685 (37.11)	116 (6.28)	66 (3.58)	1,846 (100.00)
1983	505 (27.95)	182 (10.07)	215 (11.90)	17 (0.94)	50 (2.77)	623 (34.48)	164 (9.08)	51 (2.82)	1,807 (100.00)
1984	1,130 (25.22)	1,132 (25.27)	257 (5.74)	20 (0.45)	101 (2.25)	1,376 (30.71)	424 (9.46)	40 (0.89)	4,480 (100.00)

연도	품 목								합 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한우	낙농	기타 축산	
1985	1,921 (21.29)	2,929 (32.47)	561 (6.22)	73 (0.81)	223 (2.47)	2,250 (24.94)	991 (10.99)	73 (0.81)	9,021 (100.00)
1986	2,532 (27.94)	3,756 (41.44)	653 (7.21)	90 (0.99)	286 (3.16)	1,036 (11.43)	561 (6.19)	149 (1.64)	9,063 (100.00)
1987	3,227 (42.00)	2,640 (34.36)	403 (5.24)	219 (2.85)	186 (2.42)	439 (5.71)	392 (5.10)	178 (2.32)	7,684 (100.00)
1988	1,677 (46.58)	1,118 (31.06)	176 (4.89)	236 (6.56)	57 (1.58)	136 (3.78)	145 (4.03)	55 (1.53)	3,600 (100.00)
1989	794 (42.92)	461 (24.92)	85 (4.59)	151 (8.16)	32 (1.73)	152 (8.22)	110 (5.95)	65 (3.51)	1,850 (100.00)
1990	634 (34.27)	623 (33.68)	139 (7.51)	99 (5.35)	54 (2.92)	174 (9.41)	74 (4.00)	53 (2.86)	1,850 (100.00)
1991	186 (13.78)	341 (25.26)	179 (13.26)	88 (6.52)	113 (8.37)	245 (18.15)	79 (5.85)	119 (8.81)	1,350 (100.00)
1992	1,373 (15.26)	1,098 (12.20)	1,430 (15.89)	525 (5.83)	409 (4.54)	2,590 (28.78)	713 (7.92)	862 (9.58)	9,000 (100.00)
1993	1,195 (13.28)	1,074 (11.93)	1,438 (15.98)	464 (5.16)	342 (3.80)	2,932 (32.58)	745 (8.28)	810 (9.00)	9,000 (100.00)
1994	450 (5.40)	833 (9.99)	1,606 (19.26)	501 (6.01)	417 (5.00)	3,067 (36.77)	685 (8.21)	781 (9.36)	8,340 (100.00)
1995	490 (5.04)	823 (8.46)	1,921 (19.74)	657 (6.75)	484 (4.97)	3,890 (39.98)	718 (7.38)	747 (7.68)	9,730 (100.00)
1996	473 (5.75)	750 (9.12)	1,466 (17.82)	545 (6.62)	385 (4.68)	3,428 (41.67)	466 (5.66)	714 (8.68)	8,227 (100.00)
1997	784 (9.20)	831 (9.75)	1,398 (16.40)	468 (5.49)	379 (4.45)	3,603 (42.26)	475 (5.57)	588 (6.90)	8,526 (100.00)
1998	1,481 (18.84)	1,049 (13.34)	1,360 (17.30)	547 (6.96)	364 (4.63)	2,193 (27.89)	337 (4.29)	531 (6.75)	7,862 (100.00)
1999	1,140 (23.66)	787 (16.33)	858 (17.80)	408 (8.47)	336 (6.97)	872 (18.10)	155 (3.22)	263 (5.46)	4,819 (100.00)
2000	1,326 (28.36)	797 (17.05)	813 (17.39)	376 (8.04)	303 (6.48)	687 (14.70)	124 (2.65)	248 (5.31)	4,674 (100.00)
2001	955 (37.61)	617 (24.30)	564 (22.21)	209 (8.23)	194 (7.64)	422 (12.91)	99 (3.03)	210 (6.42)	3,270 (100.00)
2002	699 (39.63)	380 (21.54)	400 (22.68)	169 (9.58)	116 (6.58)	404 (16.16)	134 (5.36)	198 (7.92)	2,500 (100.00)
2003	434 (34.39)	314 (24.88)	284 (22.50)	122 (9.67)	108 (8.56)	376 (19.69)	89 (4.66)	183 (9.58)	1,910 (100.00)
2004	202 (29.02)	117 (16.81)	202 (29.02)	91 (13.07)	84 (12.07)	305 (27.11)	37 (3.29)	87 (7.73)	1,125 (100.00)
2005	159 (27.89)	148 (25.96)	141 (24.74)	54 (9.47)	68 (11.93)	334 (31.81)	32 (3.05)	114 (10.86)	1,050 (100.00)
2006	171 (26.19)	156 (23.89)	174 (26.65)	78 (11.94)	74 (11.33)	216 (20.69)	51 (4.89)	124 (11.88)	1,044 (100.00)
2007	177 (28.05)	150 (23.77)	176 (27.89)	61 (9.67)	67 (10.62)	242 (23.40)	52 (5.03)	109 (10.54)	1,034 (100.00)

연도	품 목								합 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한우	낙농	기타 축산	
2008	340 (30.91)	218 (19.82)	296 (26.91)	123 (11.18)	123 (11.18)	386 (22.64)	63 (3.70)	156 (9.15)	1,705 (100.00)
2009	317 (32.12)	230 (23.30)	236 (23.91)	103 (10.44)	101 (10.23)	250 (17.39)	50 (3.48)	151 (10.50)	1,438 (100.00)
합계	25,422 (19.5)	23,628 (18.2)	18,082 (13.9)	6,629 (5.1)	5,603 (4.3)	34,778 (26.7)	8,115 (6.2)	7,816 (6.0)	130,073 (100.0)

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물식품 주요통계」.

2. 전업농 육성사업

- 영세소농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한국농업에 있어 일정규모 이상의 전업적인 농가경영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
 - 「농업기본법(1967년 제정)」에서 ‘자립 가족농의 육성’을 천명하였으나, 그 후 이를 뒷받침하는 시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음.
 -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을 통해 영농에 어느 정도 정착한 농업인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가운데 1989년에 발표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전업농 중심의 농어업 인력개발 촉진계획이 수립되면서 전업농 육성사업이 구체화되었음.
 -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농수산업의 경영규모 적정화와 경영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경영 능력과 영농의욕이 있는 농어가를 전업농어가로 육성”(제3조), “농수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등의 규정이 마련되었음.

- 전업농육성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2년부터 연간 1천명 정도의 전업농어가를 선정하여 5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음.
 - 사업초기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너무 적고, 분야별로 선정되지 못하여 자금운영이 경직되는 애로점이 있었는데, '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의 하나로 전업농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2004년까지 10년간 전문적인 가족단위의 전업농 15만호를 육성하는 계획이 마련되었음.

- 전업농 육성사업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의 연장선에서 수립되었기 때문에 1992년 사업 초기에는 후계자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추진되었으나, 1994년 '농어촌발전대책'에서 자금 지원규모가 확충되고, 1995년 「농림사업실시요령」이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
 - 지원대상은 품목별로 일정수준의 경영규모·영농경력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전업농 수준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한 자였음. 구체적으로 전업농은 55세 이하인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농업후계인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농업후계인력의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였음.
 - 선정은 영농경력, 농학계 학력, 경영규모,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 기계화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여 평점 우수자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쌀전업농의 경우 벼 재배 경영 규모가 3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하였음.

- 전업농에 대한 자금지원은 1994년까지는 후계자 자금과 마찬가지로 품목에 상관없이 전액 국고 융자금 5천만원이 지원되었으나 1995년부터는 쌀전업농과 그 밖의 전업농으로 구분되어 차별화되었고 2000년 이후에는 쌀전업

농에만 지원사업이 실시됨.

- 전업농에 대한 지원은 영농규모 확대 및 시설·장비 현대화, 그리고 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 기술 및 합리적 경영기법 도입에 대해 이루어졌음.
 - 쌀전업농의 경우 호당 평균 농기계 구입자금은 2,350만원(보조 20%, 용자70%, 자부담 10%)을 연리 3%, 1년 거치 4~7년 상환으로, 농지규모화 자금은 2,560만원(용자 90%, 자부담 10%)을 연리 4.5%,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음.
 - 기타 전업농의 경우 농가 수준에 따라 5천만원~1억원을 연리 6.5%,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하였음.
 - 1996년에는 전업농 육성 목표가 일부 수정되어 2004년까지 쌀(5~20ha) 6만호, 축산 3만호, 밭작물·채소·과수·화훼·특작 3만호 등 모두 12만호를 육성하도록 하였음.
 - 쌀전업농의 경우 우리나라 쌀 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UR 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1995년부터 본격 추진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기존에 쌀전업농과 기타전업농으로 구분하여 육성하던 것을 쌀전업만 지원하게 됨.
- 2004년에는 생산구조의 규모화와 경영능력을 갖춘 쌀전업농 중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2004. 8. 2)’을 마련하고, 소요 예산은 농업·농촌종합대책의 119조 투융자계획에 반영하였음.
-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은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갈 중추세력으로 2010년까지 호당 평균 6ha 수준의 쌀전업농 7만호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표 2-3.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의 주요 개선내용

구분	기 준	종합대책 내용
----	-----	---------

구분	기 준	종합대책 내용	
정책방향	· 농지규모 확대 치중	· 후보군관리 및 전문경영인육성, 규모화촉진 품질·경영 개선, 소득안정, 부담경감 등	
정책목표	· 호당평균 3ha, 8만6천호 -100만ha의 25%	· 6ha·7만호 -85만ha의 50%	
선정기준	· 1ha이상 60세 이하 농업인 -후계인력 보유자는 61세이상 도 선정	· 2ha이상 55세이하로 정예화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1.5ha이 상, 후계인력 보유자는 60세이하도 선정	
후보군	-	· 4ha수준 71천호 선정관리 -기선정 1.5ha이상(6만1천호)과 2ha이상 55 세이하 일반농가(1만호) 포함	
규모화	자금	· '95~'03년, 2조 7,128억원 -연평균 9천ha, 3천억원 -매매 2만8천ha, 임대 5만ha * 7만8천ha 논 유동화	· '04~10년, 4조 505억원 -연평균 1만8천ha, 6천억원 -매매 4만ha, 임대 8만4천ha * 12만4천ha 논 유동화
	연령	· 61세이상도 규모화자금 지원	· 60세까지만 지원
	대상	· 수요에 따라 지원	· 2~5ha 규모 집중지원 -6ha규모화 주력층으로 양성
	상한	· 매매 10ha, 임대 20ha	· 매매20ha, 임대 30ha -평야지, 간척지 등 확대
확대 모형	· 전국 평균개념 -평야지 4ha, 중간지 3.5ha, 산 간지 3ha	· 지역별, 규모별 모형 설정 -평야지 8ha, 중간지 6ha, 산간지 4ha	
경영이양	· 고령농가 경영이양 농지공급 중심 -규모화사업물량의 60%이상 책정	· 고령농가, 일반농가, 농지은행 등 다양한 채 널을 통해 규모화 촉진 -경영이양 농지, 집단화 가능 진흥지역 내 우 량농지 등 우선순위로 지원	
금리	· 3% 금리, 10~30년 균분상환	· 적정 수준 인하추진	
소유비중	· 현재는 소유비중이 높은 구도 -소유 : 54%, 임대차 : 46%	· 임대차 중심사업(65%) 추진 -향후 농지가격, 임차료 등의 변동상황을 감 안 탄력적으로 운영	
임대기간	· 5년 장기임대료 고정분할 납부	· 쌀값 연동산정 방식 개선 검토 · 고령농가 임대만료 농지 재임대 추진(경영이 양직불금 지원)	
소득보전	· 획일적 단일기준 적용 -단일 납부기준(3개년 평균기준 가의 0.5%)과 보전율(하락분의 80%)	· 생산중립직불제 등과 연계, 납부율과 보전율 을 다양화 -규모화된 쌀전업농의 실질적 소득 안전장치 로 기능토록 확충	

자료: 농림부, 2004.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

- 2008년부터는 기존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농지규모 확대를 위한 물량지원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양정여건의 변화와 쌀전업농의 역량강화 등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지원방식을 개편함.
 - 대상농지를 받까지 확대하고, 농지매매사업 지원단가(논 30천원/3.3㎡, 밭 35천원)에 포함된 10% 자부담을 폐지(인상효과 11%)했으며, 농가당 매매지원 상한면적을 20ha에서 10ha로 축소하여 경쟁 가능한 지원규모로 조정함.
 - 전업농 선정·관리를 시·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함.

- 1992부터 2009년까지 쌀전업농 80,526개 경영체, 기타 전업농 10,631개 경영체 등 총 91,260개 경영체가 선정되었음.
 - 하지만, ‘농어촌발전대책’ 및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수립 시 목표로 했던 육성인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적을 거둠.
 - 농어촌발전대책 수립 시 목표로 한 12만호 육성은 67% 수준인 80,356호가 선정되었으며,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의 목표치인 쌀전업농 7만호 육성은 12.6%(8,801호) 달성에 그침.

표 2-4. 연도별 전업농 선정인원

연도	쌀전업농	기타전업농	합계	육성목표
1992~1993	263	1,737	2,000	
1994~2004	71,462	8,894 ¹⁾	80,356	12만호 육성 (농어촌발전대책)
2005~2009	8,801	-	8,801	쌀전업농 7만호 (쌀전업농육성종합대책)
합계	80,526	10,631	91,157	

연도	쌀전업농	기타전업농	합계	육성목표
----	------	-------	----	------

주1: 2000년부터는 쌀전업농만 지원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 법인경영체 육성사업

-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음.
 - 제도의 도입취지는 해외로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강화되고 있어 농업의 구조개선이 긴급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업의 육성 등을 통해 영세 농어가의 전업을 지원하고, 그로부터 유동되는 농지를 활용하여 영농규모화를 이룩하는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것이었음.
 - 농업법인은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법제화되었으나, 이 당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은 농업법인을 개별 농가와 대응한 지원을 하고 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었음.
- 농업법인제도 도입 당시 영농조합법인은 농업경영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농업경영이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으로 제도화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스스로 농업경영을 담당할 수 없지만 농업경영과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는 보조적인 농업법인으로 설계하였음.
- 초기 영농조합법인은 그 구성원을 1ha 미만의 농지소유자로 제한하였고, 위탁영농회사는 농가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 사업크기를 농가 1호당 3ha

이내로 제한하였음.

- 초기 농업법인제도는 영세농의 협업을 전제로 한 것으로 대규모 기업적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며, 이러한 문제로 1993년 제도 개편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지상한과 위탁영농회사의 위탁상한을 폐지하게 됨.
- 1994년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여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음.
 -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여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였음.
 - 이러한 지원대책으로 1994년부터 농업법인정책이 변경되는 1997년 사이에 많은 농업법인들이 설립되었는데, 특히 농업인의 자율 설립이 가능한 영농조합법인이 많았음.
- 1994년 12월에 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기존의 위탁영농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개편됨.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목적은 기존의 위탁영농회사의 목적에 더하여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확대함⁶.
- 1997년 1월 부실 농업법인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실

⁶ 농업회사법인의 목적에 관한 개정은 기존의 영농조합법인과 내용적으로 차이가 없어지는 결과를 낳았으며, 농업법인의 두 가지 형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만 다를 뿐 설립목적과 사업범위가 동일하게 되었음(김수석 2007).

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음.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음.
- 공통지원요건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기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⑤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인 법인, ⑥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부적격 구성원 유무 또는 개인사업을 위한 위장설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등임.
- 사업별 지원요건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이며,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으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를 징구하고, 사업규모 1억원 이상인 경우 경영 및 영농기술능력 진단평가와 신용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 관계법령은 기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이관되었으며, 농업법인 유형별 설립기준은 표 2-5와 같음.

표 2-5.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
설립목적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설립자격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발기인 수와 출자자 책임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합자회사: 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병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2~50인(유한책임) 주식회사: 3인 이상(유한책임)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조합원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 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농지, 현금, 길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농지, 현금, 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3/4 이하
의결권	1인 1표제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
사업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 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가능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 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 가능 생산자 단체	농협,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농협,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자료: 김수석. 2007. “농업법인의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 「농촌경제」 30(4). 105-126.

- 농업법인제도 시행 년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표 2-6과 같음.
- 영농조합법인 69,533개, 농업회사법인 20,024개로 총 89,557개 법인이 운영 중이며, 2001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띠.

표 2-6. 농업법인 운영 현황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계
1990	-	6	6
1991	25	48	73
1992	72	206	278
1993	303	370	673
1994	1,298	711	2,009
1995	2,455	1,179	3,634
1996	3,598	1,476	5,074
1997	4,214	1,595	5,809
1998	4,711	1,670	6,381
1999	5,939	1,711	7,650
2000	5,986	1,667	7,653
2001	3,919	1,248	5,167
2002	4,315	1,283	5,598
2003	4,274	1,158	5,432
2004	4,425	1,067	5,492
2005	4,293	967	5,260
2006	4,410	898	5,308
2007	4,624	896	5,520
2008	5,075	928	6,003
2009	5,597	940	6,537
합계	69,533	20,024	89,557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4.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은 1990년대 후반에 사회 전반에 추진된 신지식인운동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음.
 - 1998년 12월 4일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21세기 지식기반사회

에 대비하여 신지식인운동을 지속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1998년 12월 9일 신지식인운동 확산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국장급 회의에서 신지식인 발굴·확산을 범부처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신지식인운동 추진반」을 구성하였음.

- 1998년 12월 18일 농업부문 신지식인 발굴·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부문 신지식인을 신지식농업인으로 명명하고 발굴·홍보하는 방안이 마련됨.
 - 1999년 1월 14일까지 농업관련 기관·단체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 후보로 발굴된 70명을 청와대에 추천하였고, 1999년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신지식농업인으로 발굴된 사례(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 57건)에 대한 현지 실사가 실시되었음.
 - 2월 1일 신지식인 활동현장 방문, TV 방영, 경연대회 등을 통해 확산 등과 관련한 전국민 신지식인운동 추진방안이 보고됨.
 - 「제2건국 한마음다짐대회」(‘99.2.3)에서 신지식농업인 발굴 사례를 소개하고 신지식인운동을 제2건국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키로 함.
 - 이어 동년 2월 12일 ‘농업분야 신지식인 발굴·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분야를 개선·개혁하거나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온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였음.
 - 농림부에서는 「제2의 건국」의 정책과제인 「창조적 지식기반국가」의 토대를 구축하고 ‘99년도 국정지표인 「지식기반확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그동안 독창성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온 신지식농업인 35명을 1차로 선정하여 발표함.
- ‘농업분야 신지식인 발굴·육성 계획’은 기존 농업인이 신지식인 마인드를 가지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신지식농업인을 지식농업시대 중심농업인력으로 육성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추진계획을 포함하였음.
- 지식농업 및 지식정보활용 중심의 농업인교육으로 농업인 의식구조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999년도 농업관련기관의 농업인 교육과정(20여 개)에 지식농업 및 신지식농업인 사례를 교육내용으로 포함하고, 2000년부터 농업관련기관(농진청, 농·축협 등)의 농업인 교육과정에 지식농업 과정을 신설함(2000년 농업인교육예산에 반영).

- 농업인이 농업관련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여 농업인정보화 교육을 1999년 15천명에서 2002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인터넷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함.
 - 현장농정점검지원단의 현지교육 및 현장점검 시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지식농업 내용을 포함시키고 신지식농업인 사례를 홍보함(지방자치단체의 농업인 및 관련공무원 교육 시 지식농업 및 신지식농업인 사례도 홍보하도록 유도).
 - 지식농업 및 신지식농업인의 필요성과 사례에 관한 교재를 작성하여 지자체와 관련 농업인단체(전농, 한농연 등)에 배포함.
- 신지식농업인에게 신지식농업인장(章)을 수여하고, 언론 및 TV 드라마(전원일기 등)를 통해 방송·기사화합과 동시에 농업인 대상 각종 교육 시 사례로 활용하고 신지식농업인과의 협의 하에 특별강사로 활용하는 등 자긍심을 고취하고 다른 농업인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
- 신지식 농업인 선정자에게는 직무나 신분·명예의 의미가 담긴 신지식농업인장을 수여하고, 문패 옆에 부착하도록 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킴.
 - 국가행정연수원 농업연수부, 신규농업인후계자교육(농진청), 농업인 지도자과정(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에 특별강사로 활용함.
 - 농업인의 날 수상 대상자 선정 시 신지식농업인을 우대하고, 신지식농업인 사례를 책자로 발간하여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인 단체에 배포함.
 -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식농업인과 사전협의 하에 「신지식

농업인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농협)하였고, 신지식농업인 사례를 활용한 홍보·교육용 비디오를 제작·보급함.

-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은 '(사)한국신지식농업인회'를 통하여 그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농업인에게 확산·보급하고 있으며, 농과계 학생에 대한 지식농업 교육도 실시함.
 -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모델을 네트워크화 하여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2003년부터 포털사이트(www.farmig.co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지식농업인 홈페이지 운영 및 전자상거래 등을 관리하는 등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관련정보를 일반농업인이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 2001년 4월 정부는 우리농업을 이끌어갈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을 발표함.
 - 2000년 기준 91명인 신지식농업인을 2004년까지 500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움.
 - 신지식농업인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브랜드 개발 및 경영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함.
 -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농업인 및 후배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지식농업인을 농업계 학교 강사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신지식농업인과 일반 농업인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
- 2005년에는 신지식농업인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신지식농업인운영규정」을 제정(2005.7.18. 훈령 제1204호)하였음.

- 신지식농업인 육성제도가 시행된 1999년 78명이 선정된 이래 2000년 13명, 2001년 26명, 2002년 15명, 2003년 17명, 2004년 24명, 2005년 21명, 2006년 24명, 2007년 23명, 2008년 31명, 2009년 22명, 2010년 13명 등 총 307명이 선정되었음.
-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500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한다는 목표가 수립되었으나, 2010년까지 선정된 인원은 307명에 그치고 있어 사업목표의 달성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임.

표 2-7. 품목별 신지식농업인 선정인원 현황(1999~2010년)

품목	경종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가공 및 기타	계
선정인원(명)	20	40	40	44	38	56	69	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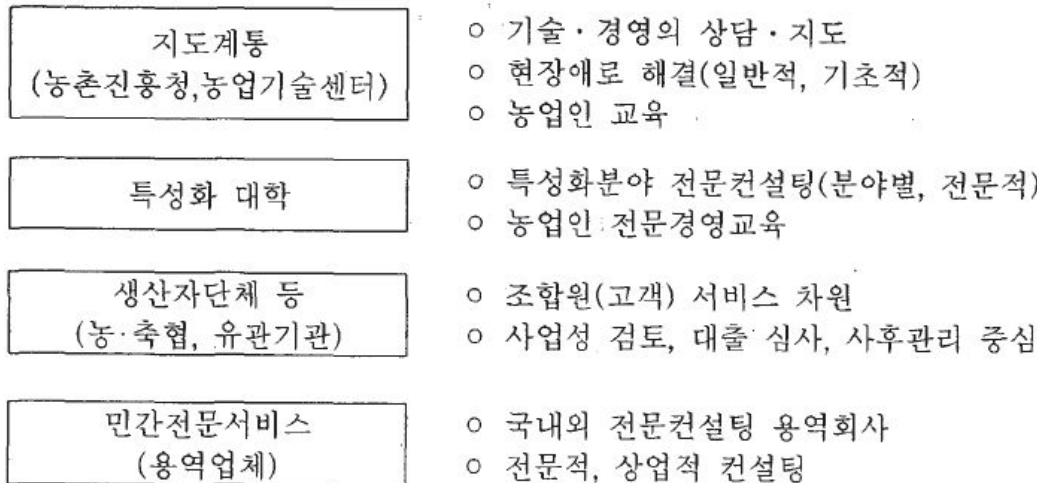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11.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신지식농업인 선발계획」.

5.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 우리나라 농업기술·경영에 대한 지도는 미군정 당시의 1947년 「농업기술교육령」이 공포되고 농사개량원(농촌진흥청의 전신)이 설립되면서 정부의 공적서비스인 농촌지도사업으로 도입되어 발전해 왔음(김정호 외 2000).
- 상업농의 진전과 규모화·전문화 추세에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경영 지도는 점차 한계에 봉착하고, 특히 1990년대 들어 농업법인이 발족하면서 기업적 농업경영이 요구됨.

- 1995년부터 농림부에서 농업경영의 혁신을 위한 벤치마킹 기법 또는 목표 관리제의 도입이 검토되면서 경영컨설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1997년 ‘농업경영 혁신을 위한 종합지원방안’이 수립되면서, 전문경영체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였음.

그림 2-1. 농업경영 컨설팅의 추진체계(1997년)



자료: 김정호, 허덕, 김연중. 2000.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경영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주요 품목에 대한 표준진단표⁷를 개발하

7 1996년에 농업경영혁신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쌀, 한우 등 10개 품목에 대해 농업인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진단표가 개발되었음. 경영진단표는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영규모, 생산과 소득, 자금지원 및 부채현황을 기록하는 농가일반현황과 자신의 농업경영성과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설정된 경영성과지표, 경영성과 수준을 세부요소별로 점검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영요소별 세부진단표, 경영요소별 세부진단표에 표시한 등급을 종합경영진단 평가표에 기록하여 전체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생산기반, 재배관리, 경영관리 등 분야별 및 세부 경영요소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점수화된 종합경영진단 평가표 등으로 구성되었음. 표준진단표는 1998년에 주요품목 30개, 1999년 50개, 2000년 60개 품목 등이 개발되었음.

여 농업인 스스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및 농촌지도계통 조직에 학계, 컨설팅 업체, 관계기관, 선도농가 등이 참여하는 컨설팅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고, 농·축협을 통한 각종 경영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제」를 도입하였음.

- 농업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공통교재를 제작하여 농업인 경영교육 과정에 활용하도록 보급하였음.
 -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전문경영체에 대한 집중경영교육이 되도록 농업법인경영체, 전업농육성대상자, 후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현장교육 등 집중경영교육을 실시함.
 - 농업인의 교육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농업인들은 진단표 작성과 다른 농가와 비교를 통해 스스로 농업경영 상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영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함.
 - 한편 2000년에는 농가경영 목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7개 분야 31개 품목 118건 사례를 DB화함.
- 농촌지도계통의 경영진단·지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야별·품목별 전문·상업적 농업컨설팅 서비스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민간 농업경영컨설팅 제도를 도입함.
- 이는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한 농업인의 자발적인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급변하는 경영여건에의 적응력을 높여 농가의 농업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원예·특작·축산분야 농가(법인)를 대상으로 유료(자부담 50%)의 전문·상업적 농업컨설팅 서비스기반을 구축함.
 - 1999년 당시 1,197백만원(국고 357, 지방비 202, 자부담 638)을 투자하여 총 156개 농업경영체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음⁸.

- 2005년부터 농업인이 보다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한도를 농업인 1천만원, 법인 2천만원에서 농업인 15백만원, 법인 30백만원으로 높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도 원예·특작, 축산분야 경영체, 국산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산물가공업체에서 RPC(미곡종합처리장)·APC(산지유통센터)·쌀 전업농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
 - 대외개방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농업경영컨설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고보조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농업인 자부담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였으며, 컨설팅업체의 전문화·규모화를 위해 전문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하였음.

- 2006년에는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생산기술 중심의 컨설팅에서 농업경영 전반으로 대상과 내용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컨설팅 업체 및 대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었음.
 - 경영, 마케팅, 브랜드 등 종합컨설팅이 가능하도록 지원 대상 농가기준을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위주로 제한하였음.
 - 농업계 전반에 검증되지 않은 컨설팅회사의 난립 문제가 제기되어 컨설팅업체 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업체의 컨설팅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고 2년마다 재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공모·평가·선정을 통해 풀을 구성하고, 농업인은 컨설팅 업체 풀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인증을 받은 컨설팅 업체는 2010년 기준 농업분야 40개, 어업분야 1개,

8 원예특작 41, 축산 115 등 총 156개 경영체를 지원하였음. 이중 법인체는 원예특작 25개, 축산 34개 총 59개임.

9 원예·특작은 3,000㎡ 이상, 가공의 경우 매출액 2억원 이상, 한우·젓소는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 양계 2만수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함.

농어업분야 3개 등 총 44개 업체가 있음¹⁰.

- 또한 농업경영컨설팅이 특정 품목에 편중된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한 품목에 50% 이상 배분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며, 농축산물 브랜드 주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를 통해 농가조직화,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시장 교섭력 배양 등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농촌관광, 브랜드, 클러스터 및 경영회생지원 등으로 농업경영컨설팅 영역을 다각화함.
-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중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컨설팅 사업과의 중복요인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부터 농촌진흥청과 농림부의 컨설팅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고, 컨설팅 대상 우선순위에 자원순환 농업경영체를 포함하였음.
 - 일정 규모 이하 농가 3개 농가 이상이 모여 컨설팅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기존에 농림부가 지원하던 것을 농촌진흥청이 실시하는 ‘농가경영컨설팅’에서 담당하도록 함.

표 2-8.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농업경영컨설팅 비교

구분	농림부	농촌진흥청
목적	• 민간컨설팅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 농업인 지도의 효율성 제고 및 경영개선 뒷받침

¹⁰ 농림부가 농림수산물부으로 조직개편 되면서 2009년 사업부터 어선어업, 양식어업, 종묘생산업,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어촌계를 사업대상자에 추가하고 어업분야 컨설팅을 담당할 컨설팅업체 인증을 통해 어업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시작함. 어선어업은 10톤 이상, 정치망어업 10h이상 등, 양식어업은 육상수조식 중 어류 등은 250평, 패류는 200평이상, 육상축제식은 2ha이상 등에 신청자격을 부여함.

구분	농림부	농촌진흥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컨설팅 희망법인 및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대상 -원예·특작·축산분야 대규모 경영체 • 대상경영체 수: 연간 약 1,000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희망 농업인 • 대상경영체 수: 연간 약 65,000농가
컨설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기장·회계·재무관리, 생산관리, 농자재·가공·마케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기반·시설, 생산기술, 농산물 판매활동, 경영기법 등의 진단, 처방, 지도·자문
컨설팅수행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컨설팅 기관 및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수,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기관별 역할 분담 -품목별 전문지도사, 연구원, 대학교수, 독농가 등
사업비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업체의 컨설팅료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컨설팅팀 운영 • 컨설팅체계강화를 위한 컨설턴트 양성
컨설팅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8,000천원(농가 30%)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부담 없음
지원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50%, 지자체 20%, 자부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50%, 지자체 50%
사업추진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자료: 농림수. 2006.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2008년에는 사업대상자를 친환경농업경영체까지 확대하고, 꿀벌 사육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인증 받은 농가와 꿀벌 200군 이상 사육농가까지 신청자격을 부여함.
 - 아울러 선정우선 1순위에 고품질교육과정(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과정, 농업경영인 MBA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을 컨설팅 대상자로 우대하였음.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9,358개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컨설팅 참가 농가 중 10%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농업소득 증가율을 조사하여 컨설팅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음.
 -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지원대상 농가는 사업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부담의 비중을 낮춘 2005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경영체가 컨설팅 지원을 받았음.
 - 성과평가 결과 전년도 대비 7%의 농업소득 증가율이 보고되었음.

6. 농림수산계 학교 육성사업

- 전문농어업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농림수산계 대학과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영자 양성 농수산고교 및 농업 전문대학과 농수산대학에 실험실습시설·장비비 및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함.
 - 농림수산계 학교 진학을 기피하고 입학 후에도 영농정착률이 감소하는 원인으로 실험실습을 위한 첨단시설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내실있는 경영실습과 선진기술교육의 어려움을 인식하게 됨.
 - 전문농어업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대학과 농수산계 대학 역시 연구시설 미비, 시설장비의 노후 등으로 선진 과학기술교육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됨.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 제정)」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1994년 제정)」에 근거하여 농림수산계고 중 자영농·수고를 지정·육성하고, 농수산계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을 선정하여 실험실습 시설·장비 및 자재 구입비를 집중 지원함.

- 1995년 사업시행 당시 농림수산계 고교 중 농고는 도별 1개교씩 9개교, 수고는 해역별 1개교씩 3개교를 자영자 양성 학교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을 목표로 함¹¹.
 - 농업전문대학은 익산대학(당시 이리농공전문대학)에 교육시설 및 연구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음.
 - 농업계 대학 특성화 지원은 지역·기능·분야를 고려한 특성화대학¹²을 선정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첨단 및 현장에로 기술개발, 농업인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등 지역 농림어업 발전과 과학기술연구 개발센터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음.
- 현장 중심의 지식·기술·경영 능력과 국제적인 안목을 갖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산하에 농업전문학교(현 한국농수산대학) 설립을 1995년부터 준비하여 1997년 3월에 개교하였음.
- 1997년에 6개과(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 축산)의 총정원 720명(40명×6개과×3년)으로 개교함.
 - 선발대상은 고졸 이상인 자로 출신학교장, 농촌지도소장 또는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자였으며 서류심사, 기초소양검사 및 면접시험으로 선발하였음.
 - 전문대학 졸업학력을 인정하였으며, 입학금, 수업료 면제 및 교육비 전액을 국고 지원하였고, 병영미필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이 가능하였으며, 졸업생 전원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함.

11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농공고, 공주농고, 김제농고, 강진농고, 안동농고, 경남자영고, 서귀농고, 대천수고, 완도수고, 포항수고 등 12개교임.

12 강원대 농생대, 강원대 산림과학대, 환경대, 서울대 농생대, 충북대 농대, 충남대 농대, 전북대 농대, 전남대 농대, 순천대 농대, 안동대 자연과학대, 경북대 농대, 경상대 농대, 진주산업대, 제주대 농대 등 14개 대학임.

표 2-9.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 현황

단위: 개교(억원)

연도	자영농수고육성	농업전문대학	농업계특성화대학
1995	12(184)	1(13)	5(50)
1996	12(138)	-	9(60)
1997	12(138)	1(4)	7(70)
1998	12(63)	-	10(82)
1999	-	-	14(80)
2000	-	-	14(74)
2001	-	-	14(74)
2002	-	-	14(60)
2003	-	-	14(60)
2004	-	-	14(61)

주: ()는 지원액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7.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

○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 등의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하여 다른 농가를 선도할 수 있는 전업농을 '선도농업경영체'로 지정하여 일반농가·법인경영체의 발전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1995년부터 추진되었음.

-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농업경영을 통해 지역농업 발전을 선도해 온 경영체를 선발하여 '선도농업경영체' 사업장을 발전모델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함.
- 일반농가에 대한 견학과 농과계 학생의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지역특성

에 맞는 경영모델 확산과 기술·경영기법 습득기회를 제공함.

- ‘선도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혁신과 경영채신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농업정책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도록 함.
- 농가 또는 농업법인 중 생산기술·경영기법·시설장비·소득 등에서 우수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선정하였으며, 1995년 시행 당시 선정대상 자격은 해당분야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고 경영규모, 기계·시설, 재배기술 및 경영능력 등에 있어 타 농가의 모델이 되는 농가로서 경영주가 전문기술 및 경영기법을 일반농가에 전파하려는 의욕이 있고 실질적인 교육능력이 있는 자였음.
- 1996년부터 기존 자격에 경영주의 연령제한(60세 이하)과 연간 농업소득(50백만원 이상) 및 전문품목의 소득비중(80% 이상) 기준을 추가하였음.
 - 가족경영체의 품목별 세부 선정기준은 영농규모를 산정하되, 일부 품목의 경우 1996년부터 다소 변경되어 시행되었음<표 2-14>.
 - 법인경영체의 경우, 설립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한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경영(순이익) 규모가 ‘사원(조합원 수)×품목별 신청자격 기준’ 이상인 경영체로 규정함.

표 2-10. 품목별 선도농업경영체 선정기준(가족경영체)

품목		선정기준	비고
곡물	쌀	10ha 이상	
	한우	100두 이상	
축산물	젓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	3만수 이상	1996년부터 4만수 이상으로 변경

	품목	선정기준	비고
과수	사과, 배, 감귤 등	2ha 이상	
채소	노지채소(마늘, 양파 등)	2ha 이상	
	시설채소	1,200평 이상	1996년부터 1,800평 이상으로 변경
화훼	시설화훼	1,200평 이상	1996년부터 절화류는 1,200평 이상, 분화류는 900평 이상으로 변경
특작	시설버섯	300평 이상	
	약용작물	2ha 이상	
기타			농업소득 50백만원 이상, 농업소득 중 전문품목 소득 비중 80% 이상

자료: 농림부. 1995. 1996.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선도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루졌으며, 재원배분 및 경영체당 지원 한도액은 연도에 따라 다소 변경되어 운영되었음.
 - 재원배분은 1995년 시행당시 국고융자 90%와 자부담 10%로 지원되었으나, 1996년부터는 국고융자 80% 및 자부담 20%로 조정되었음.
 - 경영체당 지원 한도액은 1995년의 경우 50백만원, 1996년의 경우 80백만원, 1997년의 경우 100백만원, 1998년의 경우 75백만원으로 변동이 많았음.
-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은 당초 교육·실습의 장으로 활용하여 기술과 경영기법 습득기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총 210개 경영체를 선정·지원하였으나,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 1998년에 종료되게 되었음.

표 2-11. 선도농업경영체 육성사업 지원 현황

단위: 농가, 백만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계	용자	자부담
1995	65	3,250	2,925	325
1996	70	7,000	5,600	1,400
1997	55	5,500	4,400	1,100
1998	20	1,500	1,200	300
합계	210	17,250	14,125	3,125

자료: 농림부. 각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8. 농업인 교육·훈련

○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의 필요에 따라 1982년부터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하였으나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중심의 교육이었음.

-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전업농가 교육, 선도개척농 교육, 선도농업경영체 교육, 산업기능요원 교육, 신규후계농 교육, 경영기술연찬 교육, 영농공개강좌, 개방화에 대응한 선도지도자 교육,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 농업기계 교육훈련 등을 실시함.
- 농가에 맞는 경영기술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도소를 ‘기술중심 지도’에서 ‘기술+경영+농외활동’에 대한 종합경영상담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지도인력을 작목별 ‘기술+경영+농정’의 상담요원으로 전문화

하는 등 농가경영 지원 기능을 강화함.

- 1997년 1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 등이 개정되면서 농촌지도공무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졌으나,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귀농인 영농교육**, 전업농가 교육, 선도경영농가 전문기술교육, 산업기능요원 교육,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영농공개강좌, 품목별 농업인 상설 교육, 새해영농설계 교육,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성농업인교육 등은 지속 추진됨.
-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른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 12)’ 수립 이후 2005년부터는 농림부 산하기관 및 공공·민간단체, 대학을 중심으로 농업인 교육훈련이 다양화됨.
 - 농업인의 확보 및 역량강화를 통한 정예농업인력 20만호 육성을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의 민간주도화, 지역특성화 농업인 교육,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인증제 도입 등 과거의 상부하달식 공급자 중심의 농업인 교육훈련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수립함.
 - 2005년에는 수요자중심의 교육훈련 강화를 위한 바우처(voucher)제도 시범운영, 농업인단체 교육역량강화, 농업·농촌 희망찾기 교육 운영, 농과대학 전공 트랙제 도입, 농고교사 직무연수 과정 강화, 농과대학과 지역농업인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이 실시됨.
 -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으로 전환을 위해 2005년 자조금 조성 단체 등 20여개 단체를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교육 시범사업을 추진함.
- 2006년부터는 생산자 단체 등 민간 주도의 교육훈련 체제를 강화하고, 교육내용 역시 중농 이상 규모화 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농고 현장체험교육 참여 고교에 대한 지원이 이루

어집.

-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18개)과 자조금이 조성되지 않았으나 기지원품목(6개)에 대해 품종선택에서 유통·마케팅, 이론·실습·해외연수까지 전 과정을 일괄 패키지 형태로 수요자 중심의 품목전문교육을 지원함.
 - 품목단체가 아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8개 일반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기존 회원관리 위주에서 마케팅이나 자금 활용 등 경영 기법, 농업인 성공사례 등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함.
 - 지자체·농협·대학·농업인단체·지역농업클러스터 등이 연계하여 지역농업교육협력체를 구성하고, 기술연구와 교육·지도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지원하였으며, 농업인 조직화를 위한 브랜드 육성교육을 실시함.
 - 현장체험교육 참여 농고 10개교의 현장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을 실시함.
- 2007년에는 맞춤형 농정과 연계한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 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 및 (돈이 되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
- 총 29개 품목단체(자조금 23개 품목단체, 비자조금 6개 단체)가 품목특성을 반영한 93개 과정을 추진하였으며, 농업인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11개 농업인단체의 경우 35개 과정의 경영·리더십 교육을 운영함.
 - 지역농업의 발전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6년 6개도 4개 시군에서 2007에는 전국 9개도 3개 시군으로 확대함.
 - 농업인 해외연수제도를 개편하여 선진농업기술 및 농촌개발 등 테마별 기획 연수방식으로 전환하고, 해외연수 전문기관을 2개에서 6개 기관으로 확대함.
 -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6년 3개 대학에서 2007년 7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함.

- 2008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체제 정착을 위하여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농업경영체별·수준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였음.
 - 총 29개 품목단체(자조금 25개 품목단체, 비자조금 4개 단체)가 품목별 기술경영 혁신역량 제고 교육을 위한 7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11개 농업인단체는 26개 과정의 농가수준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함.
 - 지역농업의 발전목표와 특성에 맞는 농업경영 및 기술향상 교육, 브랜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농업조직화 교육을 2008년 전국 9개도 6개 시군으로 확대함.
 - 농업인 해외연수제도를 기관·단체에서 농고·농대, 지역특성화사업단까지 확대함.
 - 농과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을 2008년 11개 대학으로 확대 운영하였음.

- 2009년에는 해외농업인턴제 도입과 농업마이스터대학 개교, 이주여성농업인 지원, 농고의 현장중심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됨.
 - 농업인턴제, 창업농후견인제와 별도로 국제감각을 갖춘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해외농업인턴제를 도입하여 인턴 1인당 630만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음.
 -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농업회계·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 대해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공모하여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함.
 - 이주여성농업인의 생활정착을 위해 영농교육후견인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영농기술교육(이주여성농업인과정)을 운영함.
 -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1개 농고를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농고비전스쿨을 운영함.

9. 귀농·귀촌지원 사업

- 귀농인에 대한 교육은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에서 농업정보활용법, 농가경영설계 및 진단 등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귀농인 영농교육’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1981년부터 시행되어 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역시 2001년 신규후계농업인과 귀농창업후계농업인으로 이원화되면서 농업을 희망하는 농촌 외부인력 유입을 도모함¹³.
- 하지만, 귀농·귀촌에 특화된 정책사업은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음.
 - ‘귀농·귀촌 종합대책’은 경제 침체 등으로 농촌정착 의향이 높은 계층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촌에 새로운 인력 영입을 통한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귀농·귀촌 종합대책’ 수립으로 2009년 정부 추경예산(안)에 귀농·귀촌정보시스템 구축(10억), 귀농교육(52억), 빈집수리비(105억), 귀농인의 집(21억), 홍보(3억) 등 191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함.
 - 교육비는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적용함.
 - 귀농자 영농정착자금은 창업농과 동일한 조건으로 기존의 이차보전 예

¹³ 자세한 내용은 1절 참조.

산으로 용자를 지원함(1,500억원, 연리 3%).

- 귀농·귀촌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 설치와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귀농 준비부터 정착까지 일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지역농협에 설치하여 전문상담가 등 상근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 상담전화를 개설함.
 - 수요자의 정보 접근성과 쌍방향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 ‘귀농·귀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정책, 지원사업, 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
- 귀농인을 위한 정착 및 영농교육을 위해 온·오프라인 귀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귀농 경험, 품목재배 이론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¹⁴.
 - 본인이 선택한 품목 생산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주말을 활용하여 농가방문을 통한 실습체험 참가를 지원함(1인당 참가비 15만원 기준 80% 지원).
 - 천안연암대(채소), 한국농업대(버섯), 여주농전(과수) 등 대학이 운영 중인 실습전문 합숙교육과정(2개월)을 확대하여 귀농 예정자로서 영농기반을 확보할 일정 수준의 자산이 있는 자를 우선 교육하고 있음(1인당 교육비 200만원 기준 80% 지원)¹⁵.

14 한결이네 귀농일기(통합농업교육정보서비스), 창업농업 성공길잡이(천안연암대귀농지원센터), 품목별 영농기술교육(농촌진흥청사이버농업인대학) 등이 있음.

15 교육은 ‘실습중심 귀농교육’과 ‘현장체험 귀농교육’으로 구분되며, ‘실습중심 귀농교육’은 귀농시 실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농업기술교육으로 100시간 이상으로 편성되고, ‘현장체험 귀농교육’은 귀농현장 체험교육으로 1박 2일 이상의 과정으로 운영됨.

- 귀농학교·농업학교 출신, 제대 후 구직자 등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인턴으로 파견하는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귀농교육 사업신청일 기준 18~55세 이하인 농고·농대 출신자, 제대 후 구직자 등 미취업자로서 연수 후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도농가 농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현장실습을 함.
 - 실습장소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창업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으로 시·군수가 인정한 농가에서 이루어짐.
 - 1인당 월 120만원(국고 50%, 지방비 30%, 농가부담 20%)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6개월 이내임.

- 귀농인의 창업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농지·축사 구입자금 등 지원 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함.
 -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영농교육 이수자에 대해 귀농인의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마련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
 - 지원은 농가당 20~200백만원 한도에서 연리 3%,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함.
 - 농지은행에 위탁된 농지를 임차해 주는 우선 대상으로 기존 전업농, 창업농에 더하여 귀농인을 포함시킴.
 - 소정의 귀농교육 이수자 중 귀농 실행자를 대상으로 귀농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계획 수립 등 개인별 컨설팅 내역은 귀농·귀촌정보시스템에 DB화함(1인당 컨설팅 비용 150만원 기준 국고 80%, 자부담 20% 지원).

10. 소결

- 199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인력육성정책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나, 1990년대 들어 법인경영체 육성사업이 시작되었고 중반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후속지원 사업으로서 전업농 육성사업이 시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신지식농업인 육성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등이 도입되었음.
-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가족농의 후계자 단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농업 분야에 신규 진입할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그들이 영속성을 가지고 성장하여 농업생산의 주도적인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자의 감소로 인해 조기 종결된 경우도 있으며, 한시적 자금지원으로 그친 사업도 나타남.
 - 선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1995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농업 인적자원의 감소와 함께 지원자가 줄어 1998년에 종료됨.
 -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사업은 주로 학교에서의 실험·실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에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이전에 도입·추진된 사업들은 농업인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고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나,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음.
 - 농업인력육성 사업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였음. 농업인력 육성사업들이

대부분 특정 사업 대상에 초점을 두고 계획되다 보니 농업인의 영농 성장단계에 맞는 사업들 간의 유기적인 연속사업으로 이루어지지 못함.

- 상당수 사업이 자금지원 이상의 사업이 되지 못함. 대다수 사업들이 농업경영체에 대한 자금지원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농업인이 실제 영농을 해 나가면서 겪게 되는 문제점 해결이나 경영방식 개선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은 하지 못함.

- 실질적인 인력 양성과 개발을 위한 사업은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후속사업을 통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2-12. 농업인력육성 정책사업 내용 종합

구분	사업목적	사업시기	비고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사업	영농후계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업노동력의 질적 제고	1981~추 진중	• 2001년부터 신규후계농과 창업후계 농으로 이원화된 이후 다시 후계농 업경영인으로 통합추진
전업농 육성사업	일정수준의 농산물 생산과 공급을 담당할 가족단위 전업경영체 육성	1995~추 진중	• 1995년부터 쌀전업농에 집중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 이후부터는 쌀전업농에 한정하여 사업추진
법인경영체 육성사업	영세농어가의 전업 지원과 유동농지의 활용을 통한 영농규모화 도모	1990~추 진중	•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농 업회사법인)으로 이원화 지원
신지식농업 인 육성사업	신지식인운동의 확산에 따라 농업부문 신지식인의 발굴·육성(지식농업시대 의 중심인력 육성)	1999~ 추진중	• (사)신지식농업인회 신설 및 「신 지식농업인운영규정」 제정
농업경영컨 설팅 사업	농업인의 자발적인 기술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과 경영능력 제고	1999~ 추진중	• 1999년 이전에는 ‘농업경영혁신지 원사업’에 포함되어 실시되었으나,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업체 중심 의 사업 실시
농림수산계 학교 지원사업	실험실습의 내실화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농고) 1995~98 (농대) 1995~04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및 농어촌특 별세관리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운 영

구분	사업목적	사업시기	비고
선도농업 경영체 육성	국제경쟁력을 갖출 정도로 발전하여 농업경영체의 모델로 육성할 전업농 집중 육성	1995~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하의 농업소득 50백만원 이 상(농업소득 중 전문품목 소득 비 중 80% 이상)의 경영체 및 이에 준 하는 법인 선정
농업인 교육·훈련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1982~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 업기술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 영되었으나, 2004년 이후 민간중심 의 농업인교육훈련체제로 전환
귀농·귀촌 지원사업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통한 농촌활력 제고와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2009~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후계농업경영자 육성과 병행 운 영 •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이전에는 농촌진흥청의 귀농자 영농교육 등 을 통해 부분적 지원

제 3 장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진단과 성과 평가

- 농림부는 2004년 2월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마련,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5대 정책의 하나로 '미래 농업을 선도할 정예인력의 중점 육성'을 제시하고, 동년 12월에 2013년까지 88천호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전업농·선도농 20만호를 육성한다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규농업인력 육성과 기존 농업인력 정예화에 대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2004~2013)을 수립하였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 무엇을 달성하고자, 어떤 사업을 추진하였는지를 검토하고, 과연 그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였음.

1. 정책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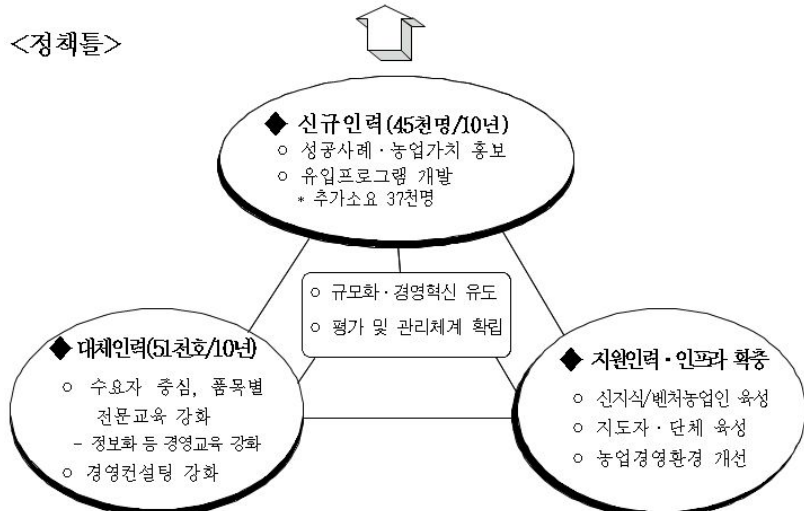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가시적으로 내건 비전은 향후 10년간 정예농업인력 20만호를 육성하여,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었음.
 - 신규인력 45천호 확보

- 기존 중소규모 농가 규모화 51천호
- 기존 전업농(감소분 제외) 104천호 유지

※ 정예농업인력의 정의: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향후 전업농, 선도농으로 성장하여, 소득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을 상회하는 농업인력. 품목별로 평균 쌀 6ha, 한우 100두, 젓소 100두, 돼지 3000두, 닭 55,000수, 과수 2.2ha, 채소 5.0ha, 화훼 1.5ha의 규모화된 농가를 의미(강대구 2004).

그림 3-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과 정책들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의 1/4이상(20만호)이 정예농업인력으로 성장 ■ 정예농업인력이 생산의 50% 이상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 전업농 7만호 육성 (생산의 50%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 (경작규모) 6ha, (소득) 53백만원 ◆ 원예 : 선도농가 11만호 육성 (생산의 50%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 (경작규모) 과수 1.7ha, 시설 15, (소득) 사과 51, 시설 48 ◆ 축산 : 규모화된 전업농 2만호 육성(생산의 85%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 : (사육두수) 한우 132두, 돼지 2,025 (소득) 한우 154, 돼지 113
	<p>농림업 취업인구 3~4%, 원활한 세대교체로 인력구조 안정</p>



자료: 농림부. 200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는 기존 농업인력육성정책들과의 차이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음.
 - 정책방향: 전체 농업인 대상 → 차별화된 정예인력 지원
 - 육성대상: 농업내부 주력 → 내·외부인력 유입 고려
 - 교육: 공급자 위주(교육) → 수요자·평생교육시스템
 - 창업지원: 일회성, 평균적 지원 → 지속지원 체계 마련
 - 컨설팅: 정부 주도 컨설팅 위주 → 정부·민간 역할 분담
 - 추진체계: 행정, 중앙정부 중심 → 농업인단체 역할 및 지자체 참여
 - 평가·사후관리: 단순 사업관리 수준 → 단계별 선택과 집중방식의 평가·사후관리체계 구축

2. 투입 예산 내역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는 ① 신규인력 양성과 신규 정예인력 유입대책(신규인력 양성·유입), ②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정착지원), ③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교육지원), ④ 농가경영개선,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경영개선지원), ⑤ 전문인력육성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사후관리 강화), ⑥ 농업부문의 관련 인력 육성 및 여건 정비(관련인력 육성) 등 모두 6개 분야에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간 2조 4,278억의 투자가 계획되어 있음.
- 분야별 예산 비중을 보면 전체 예산 중 66.1%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위주로 한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투입되고, 나머지 농업인 교육지원에 14.6%, 잠재인력 양성·유입에 6.2%, 경영컨설팅에 2.9%, 사후관리 강화에 2.7%, 그리고 관련인력 육성에 7.4%가 투입됨.

표 3-1.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분야별 투입예산(계획)

분 야 별	'03년	%	'08년	%	'13년	%	10년간	%
	○ 신규인력 양성·유입	-	-	182	6.3	280	7.6	1,517
○ 정착 지원	960	79.9	2,049	71.2	2,485	68.0	16,046	66.1
○ 교육 지원	222	18.5	327	11.3	477	13.1	3,545	14.6
○ 경영개선 지원	17	1.4	67	2.3	98	2.7	700	2.9
○ 사후관리 강화	-	-	69	2.4	105	2.9	666	2.7
○ 관련인력 육성	2	0.2	185	6.4	212	5.8	1,805	7.4
합 계	1,201	100.0	2,879	100.0	3,657	100.0	24,278	100.0

3. 추진 사업 내용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에 추진되어오던 사업과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6개 분야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됨.

3.1. 신규인력 양성·유입

□ 추진목표/방향

- 신규인력의 영농정착 관심 증대 및 정착 유도
 - 농과계의 영농정착 : ('03) 1,201명 → ('08) 1,760명 → ('13) 3,500명
 - 농 고 : ('03) 322명 → ('08) 600명 → ('13) 1,300명
 - 전 문 대 : ('03) 450명 → ('08) 530명 → ('13) 1,000명

- 4년제 대학 : ('03) 429명 → ('08) 630명 → ('13) 1,200명
- 비농업계의 영농정착 : ('03) 885명 → ('08) 2,360명 → ('13) 4,300명
- 직업훈련과정 : ('03) - → ('08) 1,000명 → ('13) 1,600명
- 기 타 : ('03) 885명 → ('08) 1,360명 → ('13) 2,700명

□ 세부 사업

- 정예인력으로 육성할 잠재인력 후보군 확충
 - 우수성공사례 발굴·활용 및 선도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 신규인력 유형별 차별화된 홍보 및 지원 추진
 - 4-H 회원의 농업 관심도 제고 및 농업계 학교의 단계별 교육 내실화
- 신규인력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신설
 - 농과계 : 농업인턴제(농고, 전문대), 대학생창업연수(농대)
 - 비농과계 : 4대 권역별 직업훈련과정, 귀농교육 등
- 효율적 대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 (과정 신설) 농림부, (홍보) 관련부서, (교육 등) 농진청, 민간 단체 등

3.2.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 추진목표/방향

- 후계농 영농정착율 : ('03) 79% → ('08) 81% → ('13) 86%
 - 농과계 학교 출신 : ('03) 82% → ('08) 84% → ('13) 88%
 - 비농과계 출신 : ('03) 75% → ('08) 79% → ('13) 84%

□ 세부사업

- 창업농의 영농정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창업자금 지원수준의 현실화
 - 창업단계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체계(후견인제) 마련
- 창업농의 영농 성장/성숙을 위한 지속지원 체계 마련
 - 영농규모 확장에 필요한 농지·시설 확보 지원
 -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과의 연계 강화

3.3.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개편

□ 추진목표/방향

- 21C 농업을 선도할 우수 후계농업인 육성
 -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의 배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인 양성
- 연간 5천명 대체인력육성 교육 및 신규 후계농 교육

□ 추진사업

- 농업인력 수급예측체계 구축 및 교육기관 입학유인 대책 추진
 - 농업인력센서스 실시, 교육·홍보 강화 등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훈련
 - 사이버 및 미디어방식을 결합한 입체적 교육시스템 도입
 - 농업교육 바우처 제도 도입을 통한 맞춤형 농업교육 강화
- 전문기술·경영교육 강화로 정예인력의 대체수요 대응
 - 매년 평균 6만명 이상 전문기술·경영교육 이수 추진
- 생산자 단체 등을 활용한 품목별 전문교육 강화
 - 단체중심의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배양 및 현장밀착형 교육 추진
- 교육과 연계된 농업인자격증제 및 비농업인 민간자격증 도입
- 관련기관별 합리적 역할분담과 지원체계 구축

3.4. 농가경영개선, 위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

□ 추진목표/방향

- 컨설팅의 역할 분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 민간컨설팅 역할 확대, 전문가 집단의 연계 강화
- 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회 대폭 확대
 - 컨설팅 대상 및 국고보조율 확대, 전문컨설턴트 양성
- 컨설팅 효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경영체와 공급업체에 대한 평가·사

후관리 강화

□ 추진사업

- 체계적인 컨설팅 지원 시스템 마련
 - 농업기술센터(농진청)의 지도업무와 민간 경영컨설팅의 역할 및 기준 정립
 - 정부·연구기관·대학이 연계한 컨설턴트 지원 체계 구축
-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여 농가경영 개선
 - 대외 개방에 대비한 농업의 체질강화 및 농업경영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컨설팅 지원 확대('05년부터)

3.5. 전문인력육성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 추진목표/방향

- 인력육성 단계별로 평가 시스템 구축
- 사후관리는 사업관리에서 인적자원관리 측면 강화
- 농업인 단체 역할 강화 등 관련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 교육·지도기관의 평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후관리

□ 추진사업

- 인력육성 단계별 평가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평가 체제 구축
 - 평가대상(내용): 교육기관(수요자 요구), 농업인(경영실적)
-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맞춤형 처방 등 사후관리 강화
 - 평가결과 공개, 자금 추가지원, 컨설팅 의무화, 재교육 이수 등
- 인적자원 관리 측면의 사후관리 인프라 확충
 - 지원내역, 이수교육, 영농정착 현황 등에 대한 D/B 구축 등
- 농업인 단체의 평가주체 역할 강화 등 농업인 인식 제고
 - 평가대상간의 경쟁 유발을 통해 전체적인 수준 향상 유도

3.6. 농업부문의 관련인력 육성 및 여건 정비

- 여성농업인을 전문직업인으로 육성
 - 향후 10년간 여성농업인력 19천명(정예인력의 20%)을 육성: 신규 후계 농으로 9천명, 기존 농업인 중 선도농으로 10천명 선발·육성
 - 여성농업인에 대한 불리한 영농여건을 발굴, 과감히 개선: 영농교육기회 제공, 여성에 적합한 작목선택 유도 등
 - 여성농업인의 복지서비스 개선 및 여성 지위향상 대책 추진: 여성농업인센터 및 농가도우미제도 확대 운영 등
- 기업적 경영환경조성을 통한 농업경영체 활성화

- 농업경영체를 경쟁력을 갖춘 전문화된 경영주체로 양성
- 농업의 성장동력으로서 농업벤처 육성
 - 신지식인 등 벤처농업인들의 교류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정보 확산과 능력향상
 - 창업보육센터 신설 및 기능 강화를 통한 보육기능 활성화
 - 농업벤처의 투자유치 지원 등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
- 유통전문인력 등 지도자·선도자 육성
 - 산지·소비지 농산물 유통현장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유통교육과정 개설
 - 농촌관광과 지역개발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 전통식품 명인을 지정하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가공기능인의 명예 보호
 - 신지식농업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우수사례 홍보 등으로 지식농업에 대한 참여 유도
-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증진 대책과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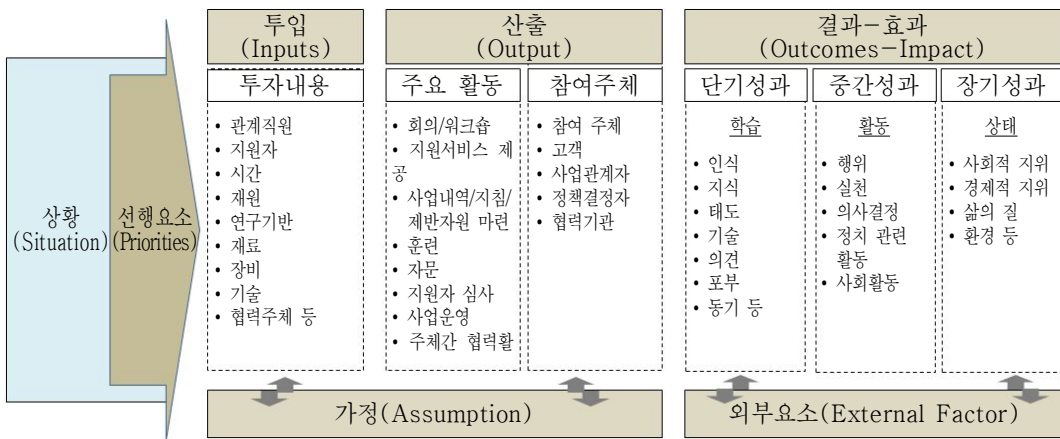
4. 사업 진단 및 성과 평가

- 이 연구에서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진단 및 성과 평가는 위스콘신 대학의 LOGIC 평가 모형에 근거하여 다음의 네가지 관점에서 수행하였음.
 - 계획한 예산이 투입되었는가(INPUT)?

- 계획한 사업은 얼마나 추진되었는가(OUTPUT)?
- 목표들은 몇 %나 달성되었으며, 성과는 무엇인가(IMPACT)?
- 문제점은 무엇인가(PROBLEM)?

위스콘신 대학교(UW)의 LOGIC 평가 모형

-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LOGIC 모형은 농촌지도사업 평가모형으로 1971년까지 활용된 USAID의 논리모형(Log Frame), 위계적 프로그램 효과 모형(the hierarchy of program effectiveness), 국가단위 장기 농촌지도사업 평가모형 등을 토대로 개발된 것임.
- 이 모형은 투입(input), 산출(outputs), 결과 및 효과 (outcomes-impact)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의 창업농 사업 및 4-H 리더 육성프로그램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음.



자료: Taylor-Powell, et al. 2008. Planning a Program evaluation.

4.1. 투입 예산 분석

- 당초 2013년까지 10년간 2조 4,2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었는데, 사업진행과정에서 수정이 되어, 2조 3,289억원임이 투입<표 3-2>.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사업 분야별로 당초 계획대비 실제 투입 예산의 편차가 큼. 특히 다른 사업 영역보다 잠재인력 육성과 관련한 예산 투입이 매우 저조하였음.
 -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간 1조 4,267억원이 투입되어 계획대비 58.8%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미진한 예산투입이 이루어짐. 향후 수정된 계획에 따르면 2011~2013년에 9,022억원을 투입함으로써 당초 계획대비 95.9%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 사업 분야별로 보면 잠재인력 양성에는 당초 계획의 3.0%, 정착지원에는 3.6%, 교육지원에는 43.1%, 사후관리 지원에는 0.0%가 지원된 반면, 관련 인력육성에는 300%가 지원됨.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정된 2013년까지의 향후 예산투자계획을 기준으로 보면, 관련인력 육성 536.9%, 교육지원에 132.9%가 투입되어 당초 목적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정착지원에는 52.6%, 경영개선 지원에는 56.4%되어 당초 계획의 절반정도만 예산되고, 특히 잠재인력 분야 사후관리 지원 분야는 매우 적었음. 사후관리 지원 분야의 경우 농업인재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많은 부분이 보완된 측면이 있다고 보면, 잠재인력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표 3-2.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투입예산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당초 계획	'04~'10 누계 (달성도)	추후 투자 계획				(수정) 계획대비 투자
			2011	2012	2013	10년간 ('04~'13)	
신규인력 양성	1,517	45 (3.0%)	14	-	-	59	3.9%
정착지원	16,046	5,794 (36.1%)	880	880	880	8,434	52.6%
교육지원	3,545	2,708 (76.4%)	622	672	708	4,710	132.9%
경영개선 지원	700	302 (43.1%)	31	31	31	395	56.4%
사후관리 지원	666	0 (0.0%)	-	-	-	-	0.0%
관련 인력육성	1,805	5,418 (300.2%)	940	1,420	1,913	9,691	536.9%
계	24,278	14,267 (58.8%)	2,487	3,003	3,532	23,289	95.9%

자료: 농림수산물부. 내부자료.

4.2. 사업 추진 실적¹⁶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는 당초 ① 잠재인력 양성과 신규 정예인력 유입대책(잠재인력 양성·유입), ② 성공적 정착을 위한 지원체계(정착지원), ③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교육지원), ④ 농가경영개선, 위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확대(경영개선지원), ⑤ 전문인력육성 평가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사후관리 강화), ⑥ 농업부문의 관련인력 육성 및 여

¹⁶ 연구의 범위에서도 밝혔지만,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관련 인력육성 영역에 대한 진단 및 평가는 하지 않음.

건 정비(관련인력 육성) 등 모두 6개 분야에 22개 세부 사업이 계획되었음.

○ 사업별 목표 달성 여부를 떠나, 당초 계획한 사업의 추진 여부를 보면, 22개 사업 중 19개 사업이 추진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아직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표 3-3>.

- 신규인력 양성·유입 및 정착지원 영역의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교육 지원 영역의 경우 농업인 교육·훈련, 그리고 한농전 개편 및 지원, 농진청 교육·훈련 등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농업인력센서스, 농업인 자격증 도입, 관련기관별 합리적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와 관련한 사업은 추진이 안되고 있음.
- 경영개선 지원 및 사후관리 지원 등은 세부 하위 사업별로 아직 미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었음.

표 3-3.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사업별 주요 내용과 추진여부

정책 사업	사업 주요내용	추진 여부
I. 신규인력 양성·유입		
1. 신규인력교육지원 -후계농업인 자녀 -4H회 육성 -농업계 학교 · 농고 · 농진 · 농대 · 영농정착 사례 홍보지원 · 영농정착희망자 과제이수지원	-한농전입학시 가산점 -농업흥미유발 프로그램 개발 -4H회 지도교사 확충 -자영농고 시도별 1~2개 집중육성 -한농전 정규과정 개편, 직업훈련과정 신설 -기타 전문대는 한농전과 학점교류, 대학생 창업연수와 연계 -기업적 전문경영인, 농촌지역사회 지도자, 유통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농업·농촌의 리더로서 역할하도록 지원 -대학생 창업연수와 연계 * 각도별 국립농대 1개씩 중점육성 -과제이수 및 해외연수 지원	○

정책 사업	사업 주요내용	추진 여부
-기타 농촌에 관심있는 대상 · 귀농자 · 제대군인 · 탈북주민 · 일반대학	-연7천명 규모의 증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5% -탈북자중 10%	
2. 농업인턴제	-영농에 관심있는 이론교육 받은 잠재인력의 현장 적용력 지원 -18~32세 미취업청(소)년(병역필면제자)이 선도농업인(영농조합법인)에서 인턴(10개월), 선도농가에 월 31만원 지원	○
3. 대학생 창업연수	-이수자는 창업농지원사업 대상선정시 우선배려 -영농정착을 원하는 고학력자에게 재학기간중 영농체험연수기회 제공	○
4. 직업훈련과정	-32세미만 대학생(병역필면제자)에게 2학기(1년)동안 실기 및 체험교육, 교육기관에 학생 1인당 3백만원 지원 -비농업계 잠재인력 유입 유도 -44세미만 -4개 권역 6개 학과 11개 전공 -단기과정(3~6개월) -장기과정(10~12개월) -교육기간에 1인당 천만원 지원	○
II. 정책 지원		
1. 창업농 지원사업	<창업농:35세미만> -금리인하: 4%--> 2% -지원규모: 1억 --> 2억 -상위 10~20%에 대해 추가자금융자	○
2. 창업농 후견인제	<신규농: 45세미만> -종합자금지원 -농대교수, 신지식농업인 등이 경영·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교육, 상담, 1인당 5백만원을 후견인에게 지급	○
3. 추가지원	-쌀전업농 선정우대, 농지구입·장기임대시 우대 -품목별 농림사업에서 우대 -농축산경영자금 우대 -교육컨설팅 우선선정 -경영회생제도 우선심사	○
III. 교육 지원		
1. 농업인교육훈련	-마우처제도 운영	○

정책 사업	사업 주요내용	추진 여부
-품목별 전문교육		
2. 농업인력센서스	-주기적으로 농업인력구조 분석, 향후 수급상황 예측	×
3. 농업인자격증도입	-농업인 등록자중 교육이수 실적 및 수준에 따라 자격 차별화(선도농업사, 중견농업사(농업경영사 4급), 유력 농업사(2급), 미래농업사(농업경영기능사)) -인증 교육이수한 생산자 단체에 자격증 발급(농업·농촌사랑 1급, 2급) -각급학교에 준비교육과정 운영 ->이수학생에게 자격증 수여	×
4. 관련기관별 합리적 역할분담 및 지원체계		×
5. 기타		○
-한농전 개편 및 지원		
-농촌진흥청 교육훈련		
IV. 경영개선 지원		
1. 농업경영컨설팅사업		○
-농업기술센터 지도업무와 민간경영컨설팅 역할/기준정립		
-정부·연구기관·대학 연계 컨설팅		
-마을단위 공동컨설팅		
2. 전문컨설턴트 양성		○
-컨설턴트 자질향상 유도		
-농업명예컨설턴트제	-은퇴한 교수·교사 및 농업계통 공무원 중 전문 노하우 갖춘자	
-농업컨설팅협회 설립지원		
-컨설팅 업체에 대한 평가	- 우수사례 발굴/홍보 강화	
V. 사후관리 강화		
1. 농촌홍보센터		○
2. 인력육성 단계별 평가		○
-유입단계	-유입대책에 따른 효과 분석	
-교육단계	-기관/프로그램 평가 (연1회)	
-영농정착단계	-후계농의 이력 및 경영실적	
-성장/성숙 단계	-후계농 경영실적 / 컨설팅 부실 여부	
3. 인센티브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
4. 정예인력 D/B구축	-농업인 등록제	○
	-영농현황, 교육이수실적, 자금지원 내역 등	
	-교육이수실적,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농업인 자격증제 도입	
VI. 관련 인력육성		
1. 여성농업인	-정예인력의 20%	○

정책 사업	사업 주요내용	추진 여부
2. 농업경영체		○
3. 농업벤처육성		○
4. 기타 전문인력육성		△
합 계		

4.3. 사업 성과: 사업 목적(비전) 달성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은 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의 농가(정예농업인력) 20만호 (전체농가의 1/4)를 육성하여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 정예농업인력을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의 정도가 달라짐.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2004년 설정한 영농규모에 근거한 정예농업인력 정의는 다소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달성 여부를 점검하기가 다소 어려운 실정임.
 - 정예농업인력(전업농) 20만호를 육성한다는 계획 수립 당시(2004년) 농림부에서는 기확보 정예농업인력을 18.9만호(쌀 8.6만호, 원예 9만호, 축산 1.3만호)로 보고 있음. 하지만 이 기확보 수치는 앞으로 투자를 하여 규모화된 정예농업인력으로 키우겠다는 의미의 육성대상으로서 쌀의 경우 1.5ha이상 농가, 축산의 경우 한우·젖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이상, 원예의 경우 과수 1.5ha, 채소·특작 0.7ha 이상의 농가를 의미하는 것이었음. 이들 농가를 2013년까지 쌀 농가는 평균 6.0ha의 농가 7만호가 전체 생산의 50%를 담당하고, 축산의 경우 전업농(평균 사육두수: 한우 132두, 돼지 2025두) 2만호(한우 9천호, 낙농 5천호, 돼지 4천호, 닭 2천호)가 전체 사육의 85%를 담당), 원예 선도농(최소 경작규모 과수

1.7ha 시설 1.5ha) 11만호(과수 3.9만호, 채소 2.4만호, 화훼 2천호, 시설 4.5만호)가 전체 생산의 50%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임<표 3-4>.

표 3-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의 전업농 소요추정

단위: 천호

연도	합 계			쌀 ¹⁾			원예 ²⁾			축산 ³⁾		
	기확보	대체 소요	추가 소요	기확보	대체 소요	추가 소요	기확보	대체 소요	추가 소요	기확보	대체 소요	추가 소요
2003	189	-	-	86	-	-	90	-	-	13	-	-
2004	192.3	5.1	3.3	86.6	-	0.6	92	4.8	2.0	13.7	0.3	0.7
2005	170.0	5.1 (△26)	3.7	61.6	△26	1.0	94	4.8	2.0	14.4	0.3	0.7
2006	173.8	5.1	3.8	62.7	-	1.1	96	4.8	2.0	15.1	0.3	0.7
2007	177.9	5.1	4.1	64.1	-	1.4	98	4.8	2.0	15.8	0.3	0.7
2008	182.2	5.1	4.3	65.7	-	1.6	100	4.8	2.0	16.5	0.3	0.7
2009	187.0	5.1	4.8	67.8	-	2.1	102	4.8	2.0	17.2	0.3	0.7
2010	191.9	5.1	4.9	70.0	-	2.2	104	4.8	2.0	17.9	0.3	0.7
2011	194.6	5.1	2.7	70.0	-	-	106	4.8	2.0	18.6	0.3	0.7
2012	197.3	5.1	2.7	70.0	-	-	108	4.8	2.0	19.3	0.3	0.7
2013	200	5.1	2.7	70.0	-	-	110	4.8	2.0	20.0	0.3	0.7
수요 합계	88	51	37	10	-	10	68	48	20	10	3	7

주1: 쌀전업농 대체소요(△26)는 현재 전업농 정예화에 따른 감소분이며, 증가는 연도별 사업량 비율을 적용

주2: 원예분야 연도별 대체소요는 60세이상 경영주비율(54%)의 1/10 적용

주3: 축산분야 연도별 대체소요는 60세이상 경영주비율(25%)의 1/10 적용

자료: 농림부, 200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 2004년 당시 목표를 설정한 농림수산물부내 관련 실국에서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 달성 여부가 추적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다만 쌀 농가의 경우 ‘영농규모화사업’의 수혜자(쌀전업농)의 영농규모는 성과지표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음. 영농규모화사업 대상자

는 논외의 경우 1.5ha 이상인 농가로 이들 농가의 평균 영농규모 변화를 보면 2005년 4.2ha이던 것이 2010년에는 5.2ha로 상승하였음. 이런 추세로 보면 2013년까지 쌀전업농들의 평균 경영면적 6.0ha 수준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기타 품목의 경우 품목단위로 규모 확장과 관련한 성과 지표가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음<표 3-5>.

표 3-5. 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변화

	사업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쌀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4.2	4.4	4.6	4.8	5.0	5.2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

- 이 연구에서는 2004년 계획을 근거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전체의 목적(비전) 달성 여부를 점검할 별도의 기준을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설정함.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 달성하고자 했던 궁극적 목적은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일정 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촌에 정착한 사람이면 도시 근로자 못지 않는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질문 ①에 반영)와 ②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일정 분량 이상의 농업생산이 농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 질문 ②에 반영)이기에 이에 근거하여 두가지 질문의 달성여부를 점검하였음.

①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이상의 농가(정예농업인력)가 전체 농가의 1/4이 되는가?

- 질문 ①은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와 관련 것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는 정예농업인력의 개념을 영농규모에 근거하여 정의하기도 하였지만

더불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과 비교하여 정의하고 있음. 영농규모에 의한 정예농업인력의 정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목별로 영농규모 하한이 없이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다보니 이의 달성여부를 점검하기가 매우 까다로움.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이상을 올리는 농가를 정예농업인력으로 개념화하고 그 목표 달성여부를 점검함.

-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대비 농가의 (평균)소득이 최근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비교를 통해서는 당초 목표 달성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표 3-6>.
 -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의 평균 소득수준은 2008년 이후 70%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음.
 -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농가의 18.2%, 연간 농산물 판매액 2천만원 이상이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업농 중에서는 7.3%만이 도시 근로자 소득 수준을 넘고 있음.

표 3-6.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수준 농가수 변화 (2004~2009)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A)		37,271	38,840	41,133	43,819	46,867	46,664
농가 소득(B) (B/A %)		29,001 (77.8)	30,503 (78.5)	32,303 (78.5)	31,967 (73.0)	30,523 (65.1)	30,814 (66.0)
전체 농가수		1,240	1,273	1,245	1,231	1,212	1,195
목표 (A) 달성	농가 (%)	320 (25.8)	330 (25.9)	312 (25.1)	270 (21.9)	204 (16.8)	217 (18.2)
	주업농 (%)	167 (13.5)	167 (13.1)	158 (12.7)	124 (10.1)	85 (7.0)	87 (7.3)

주: 목표 달성 농가 비율을 농가경제조사, 농가수는 농업조사와 농업총조사 자료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농업조사」.

- 품목별로 보면 축산 농가 중 31.8%, 특용작물 농가 중 22.9%, 화훼 농가 중 24.5%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을 넘고 있었고, 쌀, 과수, 채소, 밭 작물 농가는 그렇지 못했음<표 3-7>.

표 3-7. 품목별 도시 가구 소득 이상 농가수 변화(2004~2009)

단위: 천명(%)

품목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쌀	141 (22.1)	141 (21.7)	146 (22.9)	125 (20.5)	86 (14.4)	87 (15.3)
과수	32 (23.3)	33 (22.5)	26 (19.0)	24 (17.0)	22 (14.9)	25 (16.8)
특용	89 (34.1)	12 (43.2)	86 (32.8)	53 (19.9)	58 (22.1)	59 (22.9)
채소	13 (35.3)	78 (33.9)	13 (35.1)	11 (29.4)	9 (22.3)	9 (19.9)
화훼	5 (47.2)	5 (53.2)	3 (25.0)	4 (41.0)	4 (35.4)	3 (24.5)
밭	19 (28.0)	28 (22.1)	17 (22.1)	13 (16.9)	7 (10.2)	11 (14.9)
축산	38 (45.9)	35 (43.1)	30 (40.5)	29 (36.5)	21 (27.2)	25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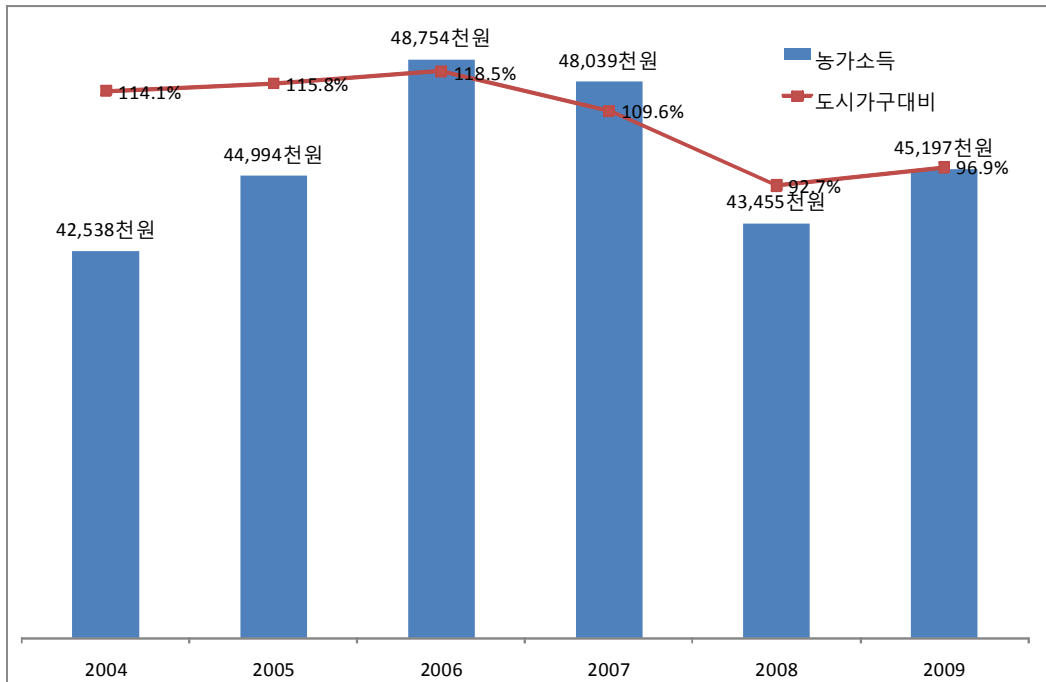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text{영농규모: 환산영농규모(m}^2\text{)} = \text{경지규모} + \frac{\text{농업고정(유형)자산(경지제외)}}{\text{농지평균가격}}$$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 한편 정예농업인력을 농가중에서도 규모화된 농가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농가중 영농규모 상위 25%로 정의하더라도 이들 농가의 평균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04년에는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114.1%였지만, 최근 2년간(2008, 2009년)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 수준 아래(92.7%, 96.9%)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그림 3-2>.

그림 3-2. 영농규모 상위 1/4 농가의 농가소득 변화(2004~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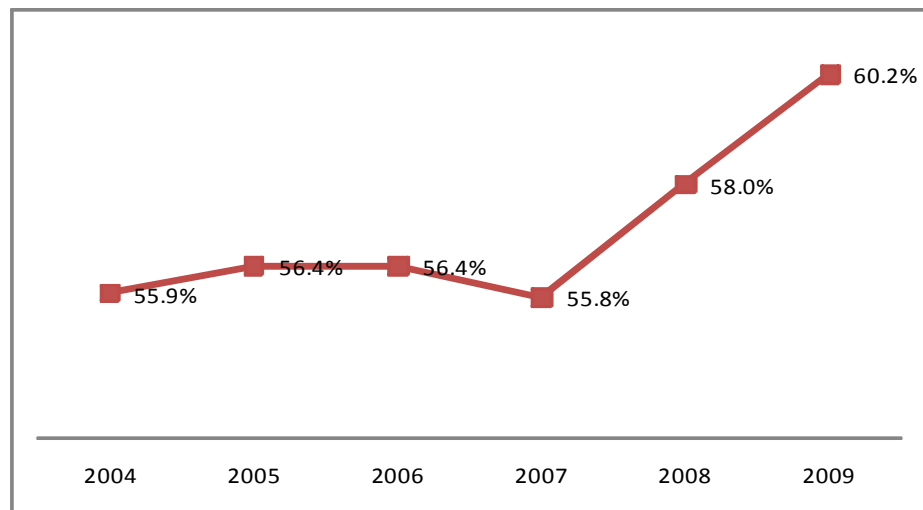


② 영농규모 상위 1/4 농가(정예농업인력)가 전체 생산의 50%를 차지하는가?

- 질문 ②는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중요한 목적중에 하나인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것임.
- 주요 품목(쌀, 과수, 한우, 돼지)별 영농규모 상위 농가(쌀 7만호, 과수 3.9만호, 한우 9천호, 돼지 4천호)의 영농규모가 목표치(쌀 평균 경지 6ha, 과수 최소 경지 1.7ha, 한우 평균 132두, 돼지 평균 2,025두)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는 획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한계¹⁷로 검토하지 못함. 따라서 이 연구에서 획득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수정한 ②의 달성여부를 평가함.

- 이 연구에서는 환산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상위 1/4 농가의 농업총수입 규모 합이 전체 농가의 농업총수입 합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분석함.
- 지속적으로 농가 규모화가 진척되어 영농규모 상위 1/4 이상 농가가 전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5.9%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9년에 60%를 넘어섬. 앞으로도 규모화가 지속됨에 따라 정예농업인력의 생산비중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그림 3-3>.

그림 3-3. 영농규모 상위 1/4 이상 농가의 농업생산 비중 변화(2004~2009)



주: 농업 생산비중 = $\frac{\text{영농규모 상위 1/4 이상 농가의 농업총수입의 합}}{\text{전체 농가의 농업총수입의 합}}$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전체의 목적(비전) 달성정도를 분석 결과는

17 2010 농업총조사를 통계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의 수행시점에는 아직 자료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임.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균 영농규모에 근거한 정예농업인력 정의로 접근하면, 쌀 품목의 경우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하리라 추정됨. 하지만, 기타 품목은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고, 더불어 관련 실국에서의 실적 관리가 부실하여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임.
 -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대비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정의한다면,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당초 달성하려고 했던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와 관련하여 당초 목적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앞으로도 농가수의 감소와 더불어 대농 중심의 영농규모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정예농업인력에 의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한 목적 달성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됨.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 달성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비전 설정의 기준이 몇가지 수정될 필요가 있음.
-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정예농업인력 정의하고자 할 때는 현재와 같은 평균 영농규모보다는 영농규모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농가를 정예농업인력으로 정의를 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현재와 같은 평균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정의하면 대규모 농가와 소규모 농가 모두 정예농업인력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큼. 한 예로 쌀 품목을 기준으로 보면 10ha이상의 영농규모를 가진 쌀농가와 1.5ha 수준의 쌀농가가 모두 쌀전업농(쌀 품목의 정예농업인력)으로 간주됨.
 - 쌀 이외 품목의 경우도 영농규모화사업, 과원규모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같은 영농 규모화와 관련한 사업 수혜 농가를 중심으로 이들의 규모 변화를 추적하여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예농업인력의 개념을 접근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음. 농외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은

현재의 농가소득 구조 하에서 농업인력육성 정책으로 통제할 수 없는 농외소득 부분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임.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통제 가능한 농업소득 부문만을 기준으로 하여 정예농업인력을 정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4.4. 사업 성과: 사업 영역별 목표 달성

□ 신규인력 양성·유입

- 신규인력 양성·유입과 관련하여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수립한 목표는 농업계 학교 출신자 신규 취농자를 누적인원(2004~13년) 18천명, 연평균 2,100명 육성하고, 비농업계 출신자(귀농자, 제대군인, 일반대학)는 누적인원(2004~13년) 62천명, 연평균 2,400명을 육성하는 것이었음.
- 농업분야 신규유입(고용인력 포함)의 규모를 조사한 결과 농업계 학교 출신자보다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의 유입이 활발하였음<표 3-8>.
 - 농림수산물식품부가 교육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계 학교 학생은 매년 700명 내외였음.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 50~100명, 농업계 대학 출신자는 500~600명 정도임¹⁸.
 - 고용노동부가 매년 조사하는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를 토대로 하면, 농업 분야 종사자는 매년 12,000명 정도(최근 6년 평균 12,344명)가 농업 분야로 유입(이 중 40대 이하가 50% 이상, 고졸이상이 60%이상)됨

18 교육통계에는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와 한국농수산대학의 통계가 포함되지 않기에 이를 감안할 경우임.

표 3-8. 영농분야 신규유입자 연령·학력

단위: 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연령	20대 이하	1,548 (14.3)	1,288 (13.1)	1,007 (9.4)	2,946 (21.2)	1,411 (14.8)	4,145 (21.6)
	30대	2,071 (19.1)	2,079 (21.1)	2,482 (23.2)	1,851 (13.3)	1,630 (17.1)	3,489 (18.2)
	40대	1,411 (13.0)	2,352 (23.9)	2,363 (22.1)	1,622 (11.6)	1,724 (18.1)	2,723 (14.2)
	50대	1,821 (16.8)	1,280 (13.0)	1,389 (13.0)	3,087 (22.2)	2,155 (22.6)	4,373 (22.7)
	60대	2,440 (22.5)	2,185 (22.2)	1,692 (15.8)	3,098 (22.2)	1,713 (18.0)	3,594 (18.7)
	70대 이상	1,551 (14.3)	655 (6.7)	1,774 (16.6)	1,318 (9.5)	898 (9.4)	901 (4.7)
고용 상 지위	경영주	4,159 (37.8)	5,038 (51.2)	4,486 (41.9)	7,013 (50.4)	5,091 (53.4)	9,437 (49.1)
	무급 가족노동자	3,592 (32.7)	3,706 (37.7)	4,549 (42.5)	5,493 (39.5)	4,158 (43.6)	7,609 (39.6)
	임금근로자	3,243 (29.5)	1,095 (11.1)	1,671 (15.6)	1,416 (10.2)	282 (3.0)	2,178 (11.3)
학력	중졸이하	6,581 (61.0)	3,118 (32.3)	4,672 (45.9)	6,677 (48.0)	3,526 (37.5)	6,545 (34.0)
	고졸	2,503 (23.2)	4,969 (51.5)	3,865 (38.0)	4,066 (29.2)	3,944 (41.9)	7,468 (38.8)
	전문대졸 (2-3년제)	1,076 (10.0)	777 (8.0)	510 (5.0)	1,343 (9.6)	1,497 (15.9)	2,883 (15.0)
	4년제대졸 이상	635 (5.9)	794 (8.2)	1,127 (11.1)	1,836 (13.2)	449 (4.8)	2,328 (12.1)
계		10,842 (100.0)	9,839 (100.0)	10,706 (100.0)	13,922 (100.0)	9,531 (100.0)	19,225 (100.0)
농업계 출신자 ¹⁾	농고	-	-	98	94	123	61
	농대	266	318	280	328	315	330

1: 농림수산식품부, 2010. 「2009 농업교육백서」 재구성.

자료: 고용노동부, 각년도.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 통계청의 농업조사와 농업총조사 자료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 평균으로

보면 매년 6,133개의 농가가 신규로 생성되고 있음(이는 산업·고용 구조조사의 경영주수 통계치와도 유사함. 산업·고용구조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평균 5,871개 농가가 신규로 생성되고 있음). 신규 농가 경영주중 40대 이하의 비중은 최근 5년 평균 2,320명(37.8%)이었음<표 3-9>.

표 3-9. 최근 5년간(2005~2009) 신규유입 농가경영주 변화

단위: 명(%)

연령	조사년도					평균
	2005	2006	2007	2008	2009	
20대 이하	187 (2.0)	165 (1.7)	168 (2.2)	77 (1.2)	65 (0.9)	95 (1.5)
30대	1,279 (13.7)	1,452 (15.2)	819 (10.9)	546 (8.6)	711 (9.8)	706 (11.5)
40대	2,828 (30.4)	2,566 (26.9)	1,461 (19.4)	1,722 (27.3)	1,844 (25.3)	1,519 (24.8)
50대	2,816 (30.3)	2,813 (29.4)	2,402 (32.0)	1,974 (31.3)	2,155 (29.6)	1,869 (30.5)
60대	1,717 (18.5)	2,229 (23.3)	2,153 (28.6)	1,622 (25.7)	1,769 (24.3)	1,555 (25.3)
70대 이상	475 (5.1)	327 (3.4)	513 (6.8)	373 (5.9)	739 (10.1)	390 (6.4)
전체	9,302 (100.0)	9,552 (100.0)	7,516 (100.0)	6,314 (100.0)	7,283 (100.0)	6,133 (100.0)

주: 신규유입 농가경영주: 각조사년도에서 영농경력 1년 이하자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 신규인력 양성·유입 분야 사업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될 수 있음
 - 취업자 기준으로 최근 매년 만명 이상이 농업 생산분야로 유입되고 있고, 그중 과반이 40대 이하였음. 하지만 농가경영주 중심으로 보면 매년 5,000~6,000 개 농가가 신규로 생성이 되고, 이중 40대 이하는 40%수준인 2,000~2,500명 수준으로 당초 사업목표 4,500명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신규취농자 대다수가 비농업계 출신자들로 농업계 학생들의 영농분야 유입 활성화가 요구됨.

주요 사업: 농업인턴제

- 예비농업인력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해 영농정착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농업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인턴제는 농업분야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음.
 - 매년 농업인턴 200명을 확보하여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는데 목표를 둠.
 - 2005년 도입초기에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운영되었으며, 영농체험부터 영농정착단계까지의 신속한 정착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둠.
- ‘농업인턴’이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8~44세의 미취업자 또는 사업 시행년도 3월 31일 기준 농업계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자 및 농업계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의미하며, ‘농업인턴 채용대상자’는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후계농업경영인 및 농업법인 등 우수 전문농업경영체로서 ‘선도농가’로 용어를 통일함(농림수산식품부 2007).
 - 인턴은 선도농가의 지도 하에 24개월 이내의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인턴을 채용한 선도농가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 및 월보수의 50% 이내로 연간 6백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였음.
- 하지만, 농업인턴 사업의 경우 인턴의 현장실습 장소로 선도농가만을 지정하고 있어 자본·장비율이 높은 선도농가에서 체험한 경험이 그렇지 않은 인턴에게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인턴이 계획하고 있는 영농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경영능력을 배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영농규모, 품목, 자본 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우수 농가를 선정하여 농업인턴의 현장실습 농가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표 3-10. 농업인턴제 연도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사업량	100 (113)	100 (104)	100 (111)	200 (200)	250
사업비	500	500	600	1,200	1,507
국고(70%)	350	350	420	840	1,055
지방비(30%)	150	150	180	360	452

주: ()는 해당년도에 실제 선정된 농업인턴 수입.

□ 정착지원

- 정착지원 분야 사업의 목표는 사업설계 당시 79%이던 후계농 영농정착률(누적)을 2013년까지 86%까지 높인다는 것이었음.

$$\text{후계농업경영인 정착률(\%)} = \frac{(\text{선정한 후계농수} - \text{영농미종사자수})}{\text{선정한 후계농수}} \times 100$$

- 정착지원과 관련한 사업목표는 목표 설정 당시부터 달성이 거의 불가능한 목표였음.

- 농림수산식품부(2010)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업 설정당시(2003년)까지 후계농 사업으로 115,364명이 선정되었고 이중 23,186명이 취소되어 누적 영농정착률이 79.9%였음.
- 영농정착률을 2014년까지 86%까지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5,000명 이상(10년간 50,250명)을 선정하고, 이들 중 탈락자가 한명도 없어야만 달성 가능한 수치였음.
- 2009년까지 누적 영농정착률은 80.7%였음.

- 2004년 이전보다 2004년 이후의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착률은 그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표 3-11>.

-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종사 비율을 보면 1981~1990년에는 71.2%, 1991~2000년에는 84.5%였고, 2001~2003년에는 82.5%였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은 90.5%로 많이 개선되었음.

표 3-11. 후계 농업경영인 정착률 현황

사업연도	선정인원 (명)	취소인원 (명)	영농정착률	
			해당연도	기간
1981~1990	39,012	11,231	71.2%	
1991~2000	69,196	10,704	84.5%	
2001	3,070	549	82.1%	
2002	2,338	429	81.7%	'81~'03년: 79.9%
2003	1,748	273	84.4%	'00~'03년: 82.5%
2004	1,278	151	88.2%	'04~'09년: 90.5%
2005	1,744	291	83.3%	
2006	1,664	172	89.7%	
2007	1,436	139	90.3%	
2008	1,643	100	93.9%	
2009	1,412	15	98.9%	
계	124,541	24,054	80.7%	

주요 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우수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와 유지를 목적으로 2006년에 도입된 사업임.
 - 매년 1,500명 수준의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개선자금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둬.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그에 따른 평가를 거쳐 선정된 후계농업 경영인에 대해 추가자금을 지원함.
- 선정기준은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규모, 경영실적(경영관리/경영성과), 교육이수실적(최근 3년간/최근 1년간), 발전가능성(사업계획서/미래전망 및 영농의욕/작목반 등 영농활동) 등 총 100점을 기준으로 함.

- 선정후 5년 이상 경과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해당년도에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자는 영농설계에 따라 8천만원까지 차등 지원함
 - 추가자금 지원은 100% 용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함.
 - 추가자금은 농업경영컨설팅 비용, 영농규모 확대 및 개보수 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함.

표 3-12.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연도별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사업량	1,500 (1,829)	1,500 (1,772)	1,500 (1,670)	1,450
사업비(용자)	120,000	120,000	120,000	116,000

주: ()는 해당년도에 실제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수임.

자료: 농림부. 각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후계농업인에 대한 일회적 자금지원 외에 후속적인 지원이 없다는 문제에 의해 도입된 사업이나, 선정방법에 대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용자를 통한 자금지원 정책으로 인해 인력육성 측면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추가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후계농에 대한 평가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의 권한이 강해 선정권한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었음(내일신문

2006.2.1)

- 또한, 추가지원 자금 역시 금융기관(농협)의 용자에 의해 지원되고 있어 부채 누적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지원 정책에 그치고 있음.

□ 교육 및 경영개선 지원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교육지원과 경영개선 지원, 두 사업영역은 동일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전문기술·경영교육 그리고 컨설팅 통해 기존 인력 중 일부를 정예농업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것임. 매년 5,100명씩 2013년까지 5만1천호를 정예농업인력화 한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 달성과 관련한 평가 부문에서 다루었듯이 정예농업인력의 기준이 모호하고, 또한 이 연구에서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파악한 현재의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기준으로는 그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육 및 컨설팅의 성과로서 기존 농업인이 얼마나 정예화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농가의 농산물 판매금액의 변화를 분석하였음<표 3-13>.
 - 농산물 판매 규모별 농가수 변화를 보면, 최근 5년(2005~2009) 500만원 이하 판매 농가 비중이 2005년 51.7%에서 2009년 50.0% 소폭 하락한 반면, 2,000만원 이상 판매농가 비중은 18.1%에서 19.8%로 상승하였음. 특히 5,000만원 이상 판매농가는 동일기간 농가수 감소(78,193명)에도 불구하고, 1만여명 가까이 증가하였음.
 -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농가소득이 정체되어 있는 가

운데 대규모 농산물 판매 농가의 증가라는 소정의 성과가 있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음.

- 만약 매년 농산물 판매액 2,000만원 이상을 정예농업인력이라고 가정할 경우 2005년 대비 2009년의 해당 농가는 6,346농가 늘었음. 이는 당초 5만 1천농가를 정예화한다는 목표에는 많이 부족한 수치임.

표 3-13. 농산물 판매액 수준별 농가수 변화

단위: 명(%)

연간 농산물 판매액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100만원 미만	301,587 (23.7)	297,430 (23.9)	308,663 (25.1)	257,238 (21.2)	273,770 (22.9)
100~500만원	356,290 (28.0)	323,517 (26.0)	316,972 (25.7)	331,065 (27.3)	323,404 (27.1)
500~2,000만원	384,645 (30.2)	387,554 (31.1)	366,991 (29.8)	367,818 (30.3)	360,809 (30.2)
2,000~5,000만원	172,828 (13.6)	180,567 (14.5)	179,021 (14.5)	181,853 (15.0)	169,386 (14.2)
5,000만원 이상	57,558 (4.5)	56,014 (4.5)	59,362 (4.8)	74,076 (6.1)	67,346 (5.6)
전체	1,272,908 (100.0)	1,245,082 (100.0)	1,231,009 (100.0)	1,212,050 (100.0)	1,194,715 (100.0)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주요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 '농업교육체계 개편 방안(2006.1)'이 수립되어 2006년부터 농업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품목전문교육, 경영·리더십교육, 지역특성화 교육, 창업농교육, 심화교육(농정연계교육, 친환경농업교육, 해외연수), 농고현장체험교육, 농과대 영농정착교육, 도시민대상 귀농교육 등이 운영됨.

- 공공기관이 담당하던 농업인교육을 생산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교육내용도 일반적이며 평균적인 내용에서 중농 이상의 규모화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위주 맞춤형 전문교육으로 전환함.
- 품목단체는 품목선택에서부터 생산, 마케팅, 수출 전과정을 일괄해서 수요자 중심의 품목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일반 농업인단체는 기존 회원관리 위주에서 마케팅 또는 자금 활용 경영기법 및 리더십관련 교육을 담당하도록 함.

표 3-14. 농업교육훈련사업 연도별 실적

구분	2006		2007		2008		
	기관수	과정수	기관수	과정수	기관수	과정수	
품목전문교육	24	48	29	93	29	78	
경영·리더십교육	8	38	11	35	11	26	
지역특성화교육	6개도 4개시군	47	9개도 3개시군	182	9개도 6개시군	183	
창업농교육 ¹⁾	1,300		1,700		1300 ²⁾		
심화교육	농정연계교육	11	17	12	21	14	14
	친환경농업교육(쿠폰제)	11	11	12	27	12	21
	해외연수 ³⁾	2	-	6	-	9	-
농고현장체험교육	10	-	10	-	10	-	
농과대영농정착교육	3 ⁴⁾	-	7	-	11	-	
도시민대상 농업창업교육 (직업훈련과정)	3	-	3	-	2	-	
사업예산 ⁵⁾	122억원		130억원		215억원		

주1: 교육대상 인원수

2: 신규후계농 500명 제외

3: 해외연수전문기관 수

4: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

5: 교육인프라 구축 관련 사업비 포함(2005년 35억원)

자료: 농림수산물부·농업인재개발원. 2010. 「농업교육백서」; 농림부. 2007. 「농정에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물부. 2008~2009.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시도 지역의 경우 특화 품목에 대한 신기술, 유통, 마케팅, 2·3차 산업과의

연계 교육 등을 지자체, 대학, 농협 등이 협력체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함.

- 농대의 영농정착교육과정을 강원대, 공주대, 제주대에 시범 실시하였으며, 농고와 농가 간의 협약체결을 통한 산학협력 방식의 현장체험 교육과정은 시범 운영하였음.
- 한편 귀농자 등 비농업계 인력의 영농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3~6개월 단기 과정의 직업훈련과정¹⁹(도시민 농업창업교육)을 신규 도입하여 품목특성에 따라 농업이론과 실습, 영농설계 등의 교육을 운영함.

○ 2009년에는 수요자 맞춤형의 전문농업교육과 더불어 농업마이스터대학 설립·운영, 이주여성농업인 교육훈련 실시, 농업인식개선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추가 실시되었음.

- 농정에 부합한 창업·경영·마케팅, 친환경·품목기술, 조직화·리더십·농촌, 소비자·청소년, 농업회계·경영장부, 비용절감,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 대해 37개 기관 53개 과정을 통해 전문농업교육을 운영함.
- 전국 9개 도 농업마이스터대학, 23개 캠퍼스에서 85개 과정(2년, 40학점 이수)을 통해 품목별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짐.
- 이주여성농업인의 생활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교육후견인과 1:1 멘토·멘티 결연을 통한 영농기술교육(이주여성농업인과정)을 운영함.
- 농업에 대한 비전 제시와 인식전환을 위하여 71개 농고를 대상으로 멘토링 교육, 농고비전스쿨을 운영함.

○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및 2006년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새로운 교육 방식을 제시하고 추진해 왔으나 개편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음(나승일 외 2005; 2006; 마상진, 김영생 2005; 마상진 2010; 박은우 외 2010; 정진철 외 2009a; 2009b).

- 농업 인력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많지만, 농업 인력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고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도 미흡했으며, 이에는 체계적인 교육지원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이 미흡했던 것도 주된 요인으로 작용함.

- 농업교육훈련에 있어 실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실습장 및 실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축되지 않아 이론 위주의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나타으며 대학, 지자체 및 선도농가들이 실습 가능한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관리부실 및 네트워크 미흡으로 실습에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등급화가 미흡하고 단편적으로 운영돼 교육결과의 활용 및 정책 연계도 이뤄지지 못했음. 농업인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위취득 등 사회적 요구 및 성장욕구가 강하지만, 교육 표준화가 미흡하고 평생학습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이러한 욕구와 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평가임.
- 농업인들의 역량에 맞는 교육과정 선택을 도와주는 역량진단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역량에 적합한 교육이 이뤄지지도 못했음. 학습자가 교육과정 선택 등 예측 가능한 교육기회를 갖기 어렵고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남.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생인 농업인에 대한 충분한 요구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운영되다 보니 실습보다는 이론 교육에 치우치고 교육장이 영농현장에 동떨어지거나 교육시기도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음.
- 농고 현장체험교육 및 농대 영농정착교육은 체험, 견학 및 해외연수 위주 교육으로 운영됐지만 실습중심의 창업교육 성과는 매우 미비하며, 운영예산의 절대적 부족, 참여학생 모집의 어려움, 참여교육 및 졸업생에 대한 추가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한국농수산대학 이외의 농과대학 및 전문대 등에 대한 육성정책도 미흡했다는 평가임²⁰.

○ 농업교육훈련의 개선을 위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기능의 강화, 예산지원 체

제의 개선, 교육훈련 수급에 대한 분석, 영농특성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조직화 등이 제안됨.

- 농업인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기획활동의 강화, 교육훈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담당인력의 전문성 개발 및 컨설팅, 능력중심의 프로그램 내용 조직, 영농작목별 프로그램 운영, 예산지원체제 개선, 교육 이수생에 대한 교육이력관리 등의 개선노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나승일 외 2005; 2006; 마상진 2005; 마상진 외 2010).

□ 사후관리 지원

- 사후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수립한 성과 목표는 없는 상황임. 추후에 사후관리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목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05년 농촌홍보센터(농촌정보문화센터) 설립, 그리고 2009년 농업인재개발원 설립 등으로 인력육성단계별 평가, 인센티브 지원, 정예인력 D/B 구축 등 사후관리와 관련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음.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관리체계가 농업교육체제 개편방안이 추진된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농림부 2007; 농림수산식품부 2008; 2009; 2010).

19 만 44세 미만 정착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비 전액에 대한 국비지원과 교육기간 동안 월 50만원 한도 내의 훈련수당이 지급되며, 현장실습은 농림부가 인증한 선도농가에서 진행됨. 직업훈련과정이 도입된 2006년 당시 70명을 지원하였고 2013년까지 총 5,740여명 육성을 목표로 함.

20 2008년 기준 창업농 선정 결과 농과계 출신은 35%로 한농대 182명을 제외할 경우 농과계 출신은 18%에 불과함.

- 2006년도에는 농업교육훈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모델(20개 품목/4개 공통과정)이 개발·보급되었으며, 농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업교육과 컨설팅, 지도사업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하였고, 각 교육기관의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농업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2007년에는 귀농 교육생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e-tutor’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교육기관 평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분석을 통해 농업교육분류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현장중심 모니터링 및 평가 강화하는 한편 컨설팅을 병행 지원하였음.
 - 2008년에는 교육기관평가 방식을 이원화하여 농업인 교육과정의 경우 3일(24시간) 이상 중장기 과정 대상의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단기과정은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의 질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농과계 학교평가는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운영 컨설팅을 병행하였음.
 - 2009년에는 농업교육훈련의 다양화를 고려하여 공모과정, 농업마이스터 대학, 농고·농대과정, 해외연수과정, 현장실습교육 등 5개 교육유형 특성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였음.
- 하지만, 이들 사업들은 인력양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훈련에 대한 관리 체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인력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들은 지자체 또는 농협을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음.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개별 사업들이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다수 시행되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종합대책 이전부터 추진해 온 관행에 따라 관리가 이루어질 뿐 종합대책에 따른 총괄관리 체계가 별도로 구축되지 못하였음.
 -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조직과에서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부처내 관련 실국 또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이고 산

발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모두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또한 지자체의 경우 담당인력이 자주 교체되면서 장기간 추진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각종 사업을 통해 선정·지원된 농업인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농협 역시 사업에 대한 자금용자를 책임지는 금융기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영농계획에 대한 단계적인 컨설팅이나 교육·상담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움.

4.5. 사업 성과 종합 및 문제점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은 이전에 추진되어온 다양한 농업인력육성사업을 하나의 비전아래에서, 전체 농정과와의 조화 속에 추진·점검된 최초의 농업인력분야 종합대책이라는 의미를 가짐.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신규인력 양성·유입, 정착 지원, 교육 지원, 경영개선 지원(컨설팅), 사후관리 강화, 관련 인력 육성 등 6개 분야에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등 22개 세부사업이 추진됨.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을 통해 당초 달성하고자 했던 비전—도시 근로자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소득의 농가 20만호 (전체농가의 1/4)를 육성하여 이들의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 담당—성취와 세부 사업 영역별 목표 성취가 어려워 보임.
 - 신규인력 양성·유입과 관련하여 40대 이하 신규 농가경영주가 매년 2,000~2,500명 규모로 유입되고 있어, 당초 설정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음. 신규 유입자 대다수가 비농업계 학교 출신자들로

농업계 학생들의 영농분야 유입 활성화가 요구됨.

-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설정된 당초 사업 목표가 다소 비현실적이어서 달성이 어렵지만,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선정된 후계농들이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농촌에 정착하고 있었음.
 - 전문성 신장 및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농산물 판매액 변화를 기준으로 성과를 점검한 결과, 전체적인 농가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의 절대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지만 당초 목표에는 많이 부족하였음.
 -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한 사후관리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중앙단위에서는 농촌정보문화센터·농업인재개발원 설립을 기반으로 해 인력육성단계별 사업의 전개 및 평가, 인력 DB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림수산식품부처내 실국 단위의 인력육성 사업에 대한 제대로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고, 지역 단위의 농업인력육성사업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 달성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정예농업인력에 대한 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영농규모를 기준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정의하고자 할 때는 평균 영농규모보다는 영농규모의 하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쌀 전업농 사업처럼 사업 수혜자를 중심으로 영농규모화 성과를 추적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정예농업인력을 정의하는 것은 지양하고, 농업인력육성정책으로 통제가능한 농업소득이나 농산물 판매액을 중심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음.

제 4 장

비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 사례

- 비농업분야 정부 부처에서 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사례를 고찰하여(부록 참조), 이 중 시사하는 바가 많은 사업을 위주로 소개하고 농업인력육성에 반영할 만한 사항을 종합하였음.

1. 잠재인력풀 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

□ 경제관련 부처의 ‘(사)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을 통한 대국민 경제교육

- 학교 안팎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민간 경제 및 교육단체가 참여하여 한국경제교육협회(www.beacon.or.kr)를 2008년 12월 설립함.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 교육단체 및 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교

총,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예금보험공사, 한국소비자원 등
- 2009년 5월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경제교육주관기관’으로 지정

○ 실행조직 구성

- 사업팀: 경영기획팀, 전략사업팀, 연구개발팀 등 3개 팀
- 자문위원회: 정책지원센터, 연구지원센터, 사업지원센터 등 3개 위원회
- 11개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 운영(충남, 전남, 전북, 경남, 충북, 강원, 제주, 부산, 대전, 대구경북, 광주)

○ 경제교육지원법 제정(2009년 1월)

- 국민이 경제생활에 있어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세부적인 추진방향 설정,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결정함.

경제교육지원법 주요조항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 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국가의 임무) ① 국가는 학교 안팎에서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경제교육 내용이 마련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경제교육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8조 (경제교육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교육단체들이 구성원이 되어 설립한 법인을 교육내용의 중립성과 구성원의 다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경제교육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제교육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주관기관의 구성원의 상호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주관기관의 구성원이 추진하는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4.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5. 그 밖에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사업 수행

- 지역별 경제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상이한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경제교육단체와 협력하여 개발·제공
- 경제교육 낙후지역을 파악, 지역 경제교육단체 등과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경제교육방송 '아하경제' 등을 활용한 경제교육 활성화 사업을 전개함.
- 단계별·영역별 경제교육 표준화 프로그램을 발굴·개발하여 각 지역에 제공함.

○ 경제교육 인지도 확산 사업

- 2010년도 6월부터 송출한 경제교육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케이블 TV, IPTV, 인터넷 등에서 실시간·쌍방향으로 경제교육을 제공, 필요한 교육을 원하는 시간에 누구든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국민의 경

제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창구를 개설함.

- 2009년 12월 14일 창간한 초중고생 대상의 경제교육신문 ‘아하경제’ (온·오프라인)를 통하여 학교 내 경제교육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경제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며, 타 매체의 질 높은 경제교육 기사를 학교에 제공하는 창구로 활용함.
 - ‘움직이는 경제교육 박물관- 경제기차’ 운영: <한국 경제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이를 “기차”라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박물관 형태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함.
 - ‘아줌마 경제주간’ 지정 관련 행사: 경제주체로서 아줌마의 역할이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탈출에 있어 아줌마들의 위기관리 역량이 중요함. 이에, 아줌마들의 경제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회기반 조성 및 관련정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아줌마 경제주간을 지정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할 계획임.
- 제반 경제교육 협력사업
- 외교통상부, 외교협회, 국제교류재단 등과 협의, 경제교육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전개를 계획함.
 - 사회복지 단체 등과 협력하여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실시함.
 - 정부부처, 회원사, 언론매체, 교육단체 등과 경제교육 협력 사업을 실시함.
- 경제이해력 향상 및 경제개념 표준화 관련 사업
- 경제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경제이해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각 단계별 경제이해력지수를 개발함.
 - 교육적 체계화를 위해 각 영역의 단계에 걸맞은 경제교육교재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경제개념 표준화 사업을 시행함.

- 국민의 경제이해력 향상을 위해 우수 프로그램 인증 등을 통해 관리하고, 경제교육 주관 기관으로서 정부의 공인증 업무를 조력함.
 - ‘한국적 경제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한국경제사’를 경제교육의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을 시행함.
 - ‘경제교육도서 추천제’를 시행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지만 경제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 이해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함.
- 경제큰나무 심기 사업
- 경제교육의 질적 체계화를 위한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선교육 대상별 수준(예: 유·초·중·고·대학생, 일반인, 전문가 그룹 등)을 고려한 전국단위의 경제교육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시스템을 구축·운영함.
 - 특히, 기업현장이나 경제 관련부처에서 활동 후 퇴직한 인재를 강사로 초빙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이론 중심의 경제교육의 틀을 개선하고자 2009년 12월 “경제교육 ACE 봉사단”을 출범시켰으며, 소정의 교육기간을 거쳐 2010년 3월부터 활동을 전개함.
 - 이미 직무연수 참여와 원격연수 등을 통해 진행 중인 공교육 교내 교사들의 경제교육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추진함.
 - ‘전국 학교별 경제교육 전문교사’를 지정, 관리·운영토록 하여 공교육 내 교사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 확산운동을 전개함.
 -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전국 규모의 ‘지속적 관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다락방 사업”을 운영함.
 - 지자체의 경제교육 관련조직과 연계하여 전국적 규모의 체험식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 경제교육실태조사 및 경제교육종합정보센터 운영
- 2009년에는 전국 1만 1천여 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10

년도에는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경제교육 및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경제교육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함.

- 2010년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 적성검사식 이해도 조사 → 경제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계층별·영역별·지역별 특성 및 수요에 걸맞은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고, 경제교육에 대한 DB 구축 및 경제교육종합센터(<http://www.econedu.or.kr>)를 통해 경제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상호 공유하여 추진함.
- 21세기 국가경제교육협의회 운영
 - 경제교육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외부 지원력을 높이며, 협회와 경제교육 관계자 및 회원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위 계층별 협의회를 구성·운영함.

□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

-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집중 조명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대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 우수한 중견 중소기업이 많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취업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음.
 - 중소기업 인식개선 사업은 학생, 학부모, 제대군인, 교사 등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교과서 개편, 방송 홍보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TV 프로그램 제작·방송, 학습교재 개발, 중소기업 체험학습, 중소기업 바로알기, 중소기업 인식개선 UCC 공모전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2005년 12월 KBS스페셜 프로그램 ‘대한민국 87%의 힘’이라는 주제로

TV 프로그램이 제작·방송되었음.

- 초등학생용 중소기업 이해 학습자료 제작과 초중고 교사 중소기업 이해 연수, 대학과 연계한 자발적 중소기업 캠페인,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UCC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지방청별로 중소기업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충북의 경우 성공 중소기업 CEO강좌, 중소기업 아카데미 및 탐방 등을, 인천의 경우 중소기업체 현장실습 수기공모 및 장학금 지급 등이 운영되고 있음.

2. 신규인력유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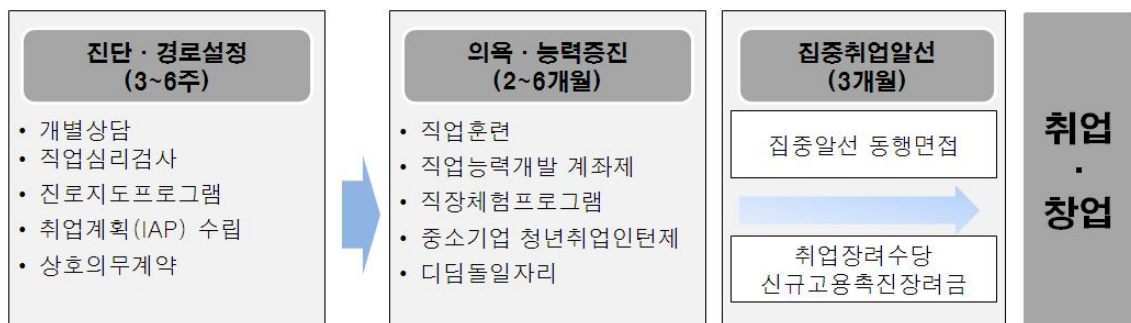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층(만 15세~29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만 32세 미만)에게 진로지도에서 취업알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년층의 취업성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개인별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제를 운영하여 1:1 맞춤형 상담관리를 통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업선호도검사·적성검사·직업가치관검사 등 직업심리검사, 직업지도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진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고, 모의면접 지도·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통한 구직기술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있음.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2단계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²¹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²¹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수당 월 50만원 지원, 직업능력개발 계좌제(200만원 한도, 자부담 없음) 발급 등

지 최장 약 1년 동안 각종 채용박람회, 동행면접 등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구직능력, 정보제공 및 상시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4-1.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지원 단계



자료: 고용노동부, 201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소개」. <http://newstart.hrd-net.co.kr>

○ 프로그램의 제1단계(진단·경로설정 단계)에서는 참여자가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전담상담원(personal advisor)이 참여자에게 약 한달 동안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취약점 및 극복방안을 발견하여 취업에 필요한 구직기술 등 취업역량을 함양하는 단계임.

- 1단계 동안 직업선호도검사 등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적성검사, 심층상담,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본인의 직업진로를 결정하고 개인별 취업계획(IAP)을 수립하게 되며, 1단계를 수료하는 자에게 참여수당 30만원을 지원함.

○ 제2단계(의욕·능력증진 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참여자의 적성·능력 및 개인별 취업계획(IAP)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직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을,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나 디딤돌 일자리 등 정부지원 일자리에도 참여할 수

있음.

표 4-1. 2단계 프로그램 지원 내용

구분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디딤돌 일자리
지원목적	직장에 대한 이해 및 경험 습득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한 참여자에게 자기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기업에서의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취업능력개발 및 경력형성 기회 제공	지역사회 NGO 등 비영리기관에서 일자리 경험과 직장생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기간	공공기관, 교육기관 : 1월~2월 사회단체(비영리법인) : 1월~4월 민간기업 : 1월~6월	발급횟수는 취업전 1회 원칙이며, 계좌유효기한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인턴기간 6개월,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지원	일자리 성격에 따라 3~5개월(주 5일 근무)
지원내용	연수생(참여자)에게 연수수당 월 50만원 지급	훈련생(참여자)에게 200만원 한도 직업능력개발 계좌 발급(다만, 일부 청소년은 한도제한이 없음)	인턴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80만원)를 지원하고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6개월 동안 매월 65만원 지원	근무시간이 주35시간인 경우 월 730천원 지급

자료: 고용노동부. 2011.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소개」. <http://newstart.hrd-net.co.kr>

- 제3단계(집중취업알선 단계)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클리닉, 면접가이드 등 구직기술 클리닉을 통해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취업준비를 지원함.
- 1·2단계를 통해 파악된 참여자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하며, 기업체 탐방·동행면접 수행·채용박람회 등 소식공지, 만남의 날 참가, 적합한 구인처 발굴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업승계지원’

-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명품 장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후계자 양성,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가업승계지원센터는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지원, 가업승계에 필요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우수 승계기업 포상, 외국 사례 등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선진 제도 발굴, 가업승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의 업무를 담당함.

그림 4-2. 가업승계지원센터의 기능



자료: 가업승계지원센터. 2011. 「지원전략」. <http://www.successbiz.or.kr>.

- 경영 2세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기업경영을 도모하고 미래를 선도할 명문 장수기업의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후계자 및 2세 경영인으로 구성된 ‘한국가업승계기업협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 한국가업승계기업협회는 회원간 정보교환 및 경영능력 제고, 경영전략 세미나 및 성공사례 공유, 국내외 장수기업 탐방 및 해외 교류, 후계자 교육 등 가업승계 지원사업 참여, 지역분회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회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며,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서 사무를 지원함.

□ 중소기업청의 ‘창업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청에서 실시하는 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타당성 검토, 창업절차, 창업공장설립, 경영·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지원 과제별 컨설팅 비용의 70%를 지원하며, 컨설팅 세부과제별로 지원한도액은 사업성 검토 400만원, 창원절차 대행 200만원, 창업공장설립 대행 500만원, 경영·기술지도 500만원, 사업화 컨설팅 800만원임.

표 4-2. 창업컨설팅 세부과제별 지원한도

세부과제	지원한도금액(만원)
------	------------

사업성 검토	400
창업절차 대행	200
창업공장설립 대행	500
경영·기술지도	500
사업화 컨설팅	800

자료: 중소기업청. 2011.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http://www.smba.go.kr>

3. 인력육성지원 시스템

□ 중소기업청의 ‘인력실태조사’²²

- 중소기업청에서 199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부족인력 등을 조사하여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사업임.
 -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중소기업지원 담당 공무원이 조사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조사항목은 현재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 향후 수요전망, 인력현황 전반(인력 미확보 사유, 이직률, 인력채용 방법 등), 업종별 기술인력 현황, 기술인력 양성 등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중소기업인력실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음.

²²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는 2009년부터 ‘중소기업사업전환실태조사’와 통합되어 ‘중소기업실태조사’로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직종별, 고용유형별, 직종별, 연령별, 종사자규모별 인력 현황, 인력부족 현황 및 대책, 신규인력 채용 및 교육훈련 현황, 외국인 근로자 현황, 정부의 인력정책 활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음.
-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우 발표되는 항목은 중소기업과 동일하나 분석 범주를 고용유형별, 직종별, 연령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1994. 1.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²³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전담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지방 중소기업의 기술, 창업, 판로, 인력과 정보 등에 대한 애로를 한 곳에서 해결(One Stop-One Roof Service)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도지사(광역지자체)가 추진주체가 되고 건립하고 정부는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였음.
 - 현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광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울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강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중소

23 이 법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기관, 관련단체, 연구소, 대학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협의기구(시·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강원중소기업지원기관네트워크, 제주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등 일부 광역지자체별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기업종합지원센터, 충남경제진흥원,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남중소기업지원센터,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총 1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별로 사업영역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지원정보 및 자료제공, 신기술개발지원, 자금지원, 인력채용, 판로개척, 상품전시 및 판매, 창업보육실 및 벤처타운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4. 시사점

- 잠재인력풀 확보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도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 효과성,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경제부처와 관련 단체들이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만들어 대국민 경제교육을 위해 초·중·고생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제반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인력육성 단계별 관련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분야 인력육성사업들은 육성 단계별 사업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비해,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진로지도, 직업준비, 취업알선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기존의 사업들을 연결하여,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취업준비를 위해 사업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진로탐색을 하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진로준비를 거치도록 한 후,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업승계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반 마련뿐 아니라 기술 전수 측면에서도, 기존 농가의 경영승계를 촉진시키는 것이 농업인력의 확보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수단이지만 농업 분야 승계 비율은 현재 5%도 안되는 수준임.
 -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법률에 기반하여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커뮤니티 형성, 가업승계메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인력관련 정보수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육성 정책에 있어 기본이 되는 많은 정보가 제대로 수집이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인력육성정책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확한 계획 수립이 힘든 상황임.
 - 중소기업청은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현재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 향후 수요전망, 인력양성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로 삼고 있음.

- 지역별 농업인력 유입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함.
 - 일반 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전담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음.
 - 현재 농업 분야에는 신규 인력 유입과 관련한 지원기관으로 지역별로 농업기술센터, 지역 농협 등이 있지만 기관에 전담자가 없고, 있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상담이나 안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제 5 장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 발전방안

- 1980년대 이후 추진된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역사와 시사점 고찰,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에 대한 진단과 성과 평가, 비농업분야의 인력육성정책에 대한 사례 고찰,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농림수산물 인력육성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당초 이 연구는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인력육성을 다루려고 하였지만,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종료시점이 가까워오면서 이 계획을 보완·발전시키는 위한 중간평가가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 연구에서는 농림수산물 인력의 범위를 생산 농업과 관련한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한정하였음.
-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다가올 과제를 점검하고,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농업인력상을 설정한 후, 농업인력육성의 단계와 농업인력육성의 비전과 관련한 지표를 재설정하고, 사업의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사업을 보완하였음.

1. 농업인력육성의 과제와 인력상

1.1. 미래 농업을 위한 인력육성의 과제

-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미래를 전망해보면 앞으로 2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 농업 지표의 변화를 낙관하기 힘들.
 - 농가소득의 증가는 1인당 국민소득 증가에 비해 느리고, 농촌인구는 계속 줄어들며, 농업총생산의 증가도 낙관적이지 못하여 국산 농산물의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임.
 - 농업부문은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 압력이 계속되는 반면, 비용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가격불안정, 제도전환, 경영위험 등 농가가 감당해야 할 각종 리스크에서 비롯되는 비용 상승 압력을 받을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상실, 자원유출, 지역사회 붕괴, 사회적 갈등 증폭, 다원적 기능의 상실이라는 악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쇠퇴경로로 빠져 들어 갈 가능성이 높음.
 - 우리 농업은 국제경쟁력 열세로 국내시장의 잠식은 가속될 것이지만, 이를 대체할 해외시장의 개척은 가능성이 작음. 판로가 막히는 만큼 생산이 위축되어 농가와 인구가 감소되어도 남아있는 농가의 파이가 커질 가능성도 작음. 농업의 약화를 커버해줄 비농업부문도 별로 나올 것이 없는 상황임. 농촌의 노령화 가속과 산업기반의 취약으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생활환경이 악화되면서 농촌의 공동화는 지속될 것임.
-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행로를 관행대로 따라간다면 그렇다는 것이지만, 새로운 활로를 찾고 전진 속도를 높이면 미래의 농업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음(박성재 등 2007).

□ 규모화와 전문화

- 우리나라 농업은 평균적으로는 영세농 구조라고 일컬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계층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업농 중심으로 규모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함.
- 규모화와 더불어 현재의 중심 농업인력들이 세계 경쟁 무대에서 필요로 하는 경영의식과 기술수준을 확보한 전문농업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의 과학화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고 시장과 소비자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전문농업인을 만드는 지원정책이 필요함.
 - 농업의 규모화 추세와 더불어 치열해지는 시장경쟁을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능력 있는 전문 경영체가 살아남을 것임. 이들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첨단에서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농업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선도자가 되도록 해야 함.
 - 이들은 새로운 기술, 정보,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할 줄 알고, 이를 요구하는 적극적 생산주체의 역할을 해야 함.

□ 협동 네트워크 및 조직화

- 한국 농업은 1970년대 이후 30여년을 시장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농업의 확대 과정에서 시장을 읽고, 판매를 조직화하며, 마케팅 요소를 배우는 단계로 발전해왔음. 지금까지 한국의 농업인들은 경영의식과 능력에서 선진국의 농업인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수익성 높은 작목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가공·포장, 작목반, 공동계산, 사업연합, 계열화 참여 등 부단한 변신을 해왔음. 그러나 개별 농가단위를 넘어 다른

농가나 조직과의 연대 또는 협동의 측면이나, 경영의 과학화와 합리화, 그리고 시장주의적인 경영의식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함.

- 우리 농업이 아무리 규모화를 할지라도 미국, 호주와 같은 큰 경지를 가진 농업국의 대농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한국농업이 세계의 농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대농장형의 농업이 아니라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협동조합을 통한 협동네트워크로 경쟁하는 농업의 형태를 지향해야함. 이를 위해 농업인들은 규모, 품목에 관계없이 협동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다양한 경영주체의 육성

- 미래 농업의 경영체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분화될 것임. 극히 소수는 프로농업인에 의해 경영되는 개별 경영, 소수의 대규모 경영인이 결성한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과 같은 법인경영체, 많은 전업농 중심의 협동조합과 같은 대규모 생산자조직, 마을과 같은 지역단위 영세 고령농의 자원을 하나로 경영하는 마을경영체, 개별적인 취미농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것임.
- 프로화된 전문 농업인에 비해 개인적인 역량이 떨어지거나,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영규모가 작은 농가들이 협동조합 등 대규모 조직화를 통해 경쟁해나가도록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
 - 농업적 성장이 가능한 중소농가에는 협동조직화 지원정책, 품목별 생산단지화 지원정책, 고품질 농산물 생산농가 지원정책 등의 지원을 확대해야함.
 - 겸업 희망농가는 농외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겸업농가로 성장을 유도해야함.

- 고령 및 직업전환 희망농가는 은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야함. 은퇴 지원대책과 효과적인 경영권 승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농에게 무조건 은퇴와 복지대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대책이 필요함. 특히 고령 농업인들은 영농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관광농원이나 전통식품가공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임.

□ 위기관리 강화

- 최근 들어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이 빈발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정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연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농업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또한 수입개방 확대와 풍작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과일 등의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농업부문의 외부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농가 육성에서 농업경영의 위기관리가 중요함. 농업경영체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높은 소득을 위한 수익성 제고가 중요한 목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농업소득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위험요소도 중요한 고려요소임.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패에 따른 손실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농가의 발전을 위축시키게 됨.
- 농업 부문의 국내외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농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하고, 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한 조기예보체계

(AWS)를 갖춰야 하며, 위기 발생 시에 정부와 농업인 모두가 적확하게 대응하는 행동지침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위기가 종료된 사후 대책으로 과학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가 정립되어야 함(김정호 등 2010).

2030년 농업 주요 지표 전망

- 김정호 등(2001)은 농업관련 과거추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농업 주요지표를 전망하였음.
 - 주요지표의 과거 추이는 1970년 이후의 통계를 정리하였고, 미래 전망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전망모형 KREI-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²⁴을 이용하여 예측함.
- 농가호수와 인구의 추이를 보면, 지난 40년간 농가호수는 절반 수준으로, 농가인구는 2할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감소 속도가 다소 완화되어 2030년에 농가호수는 92만호(2010년 대비 79%), 농가인구는 173만명(2010년 대비 57%)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농가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이 2030년에는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농가경영주 수를 추산해 보면 2030년경에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기간적 전업농가는 20만호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임.
- 경지면적은 지난 40년 동안에도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왔으며, 앞으로도 거의 같은 추세로 이행할 것으로 보임. 경지면적은 2010년 172만ha에서 2030년 149만ha로 감소하고, 벼 재배면적도 같은 기간 동안에 91만ha에서 80만ha 수준으로 완만한 감소가 예상됨.
- 농업생산액은 1990년대까지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농산물 시장개방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정체 기조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도 증가 요인이 별로

없어 보임. 반면에 농업경영비는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업부가가치는 2010년 21조원(불변가격)에서 2030년에 19조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농가소득의 추이를 보면 농업소득은 정체되는 반면에 농외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표 5-1. 농업부문 총량지표 추이와 전망(1970~2030년)

구분	단위	1970	1990	2010	2020	2030	2010/ 1970	2030/ 2010
농가호수	천호	2,483	1,767	1,172	1,078	924	0.47	0.79
농가인구	천명	14,422	6,661	3,039	2,295	1,732	0.21	0.57
65세이상 비율	%	4.9	11.5	35.3	45.2	51.4	7.20	1.46
경지면적	천ha	2,298	2,109	1,718	1,574	1,488	0.75	0.87
벼 재배면적	천ha	1,203	1,244	910	809	802	0.76	0.88
농업부가가치	10억원	10,762	16,827	20,691	18,705	18,755	1.92	0.91
농가소득	만원	650	1,895	3,298	3,910	5,746	5.07	1.74
농외소득 비율	%	23.1	25.7	39.4	48.2	62.0	1.71	1.57

주: 1970~90년 수치는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0, 2020, 2030년 수치는 KREI-KASMO 추정치.
농업부가가치는 2005년 기준 가액. 농가소득은 GDP디플레이터(2005=100) 적용. 2020년과 2030년 수치는 2010년 불변 가액.

1.2. 농업인력상

- 인력육성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나 사업 설정 이전에 인력 정책이 추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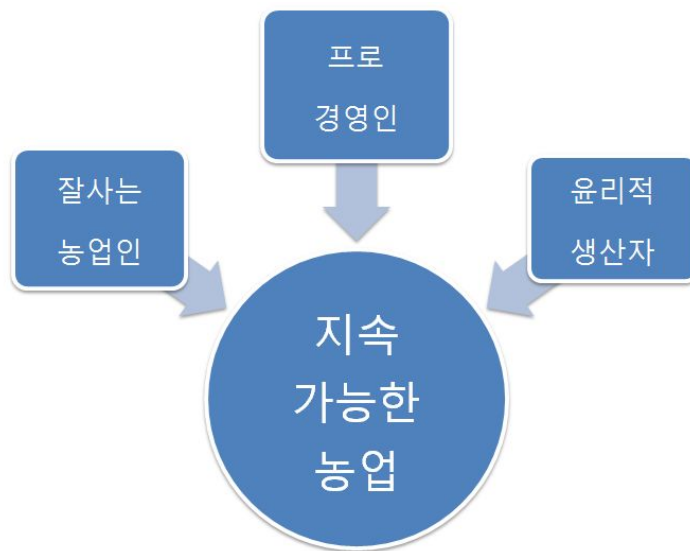
24 KASMO에서는 전망을 위한 외생변수로 경제성장률, 인구, 환율, 국제유가, 국제곡물가격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들 변수 역시 타기관에서 추정된 전망치이기 때문에 상당한 가정을 두고 있다

자하는 농업 인력상을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 설정하였음<그림 5-1>.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란 특정한 과정이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태계가 생태의 작용, 기능, 생물다양성, 생산을 미래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인간사회의 환경, 경제, 사회적 양상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개념임.
 - 그동안 농업·농촌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악순환 구조가 발생해 왔음.
 - (환경) 생산성 증대 노력 ⇒ 고투입 농법(환경오염)
 - (경제) 경쟁력 취약 ⇒ 지속적 수익창출 한계(성장정체)
 - (사회) 도·농간 생활격차 ⇒ 농어촌 공동화(지역사회 낙후)
 -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유지, 지역사회 및 국토환경 보전,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김병률 등 2009; 농림수산식품부 2010).
 - 농업의 주체로서 농어업인은 인류 역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 농업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여해 왔듯이,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속가능한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력육성정책을 통해 농업인은 잘사는 농업인, 프로 경영인, 윤리적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잘사는 농업인**이란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가지는 농업인, 긍지를 가지고 직업으로서 농업을 선택한 사람을 의미함.
 - **프로 경영인**이란 여러 경영 상의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며, 고품질 농산물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농업인, 창의적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느끼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함.
 - **윤리적 생산자**란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자

신의 발전뿐 아니라 이웃 농가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의미함²⁵.

그림 5-1.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의 농업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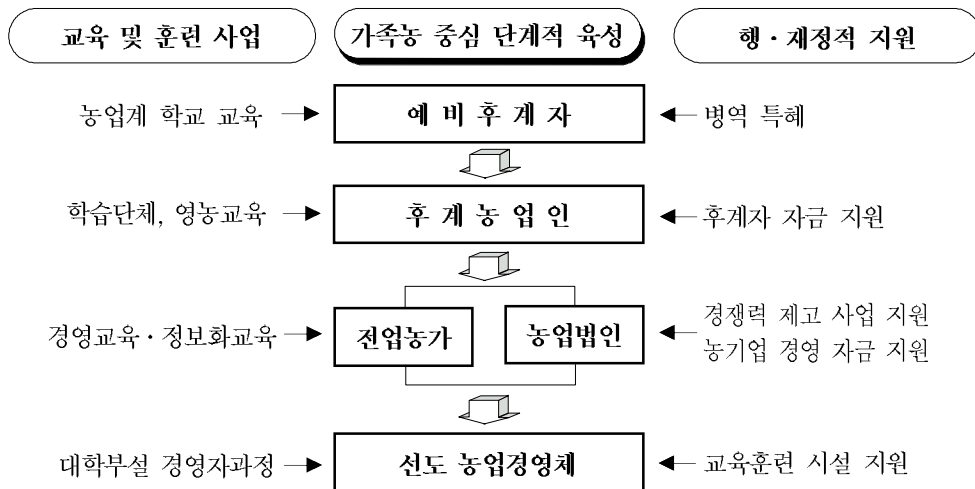
25 직불금 및 각종 정책지원 사업의 부당 수혜와 관련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업인의 범위와 더불어 도덕적 헤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농협의 나눔축산운동, 농어촌 공동체 회사 추진 등 농업·농촌 내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내부갱생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윤리적 생산자라는 인력상을 도출하였음.

2. 농업인력육성의 단계 설정

□ 농업인력육성단계 재설정 필요

- 그동안의 농업인력육성 정책(농림부 1997; 농림부 2004)은 크게 농업계 학생에 대한 교육 단계, 후계농업인 단계, 기존 농업인 정예화 단계, 선도 농업인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왔음<그림 5-2>.

그림 5-2. 농업인력 및 경영체 육성 체계(농림부 1999)



- 선행연구(이영대 외 1990; 정명채 외 1991; 정철영 외 2001; 서규선 외 2002; 장대구 외 2004)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업인 육성단계를 보면 농업계 학생 이전 단계와 은퇴 단계에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를 강조하고 있음<표 5-2>.

표 5-2. 선행연구에서의 농업인력육성단계 설정

	일반학생	농업계 학생	후계농	전업농			고령농업인
이영대 외 (1990)	가업 승계 유도 단계	교육 단계	정착지원 단계	자질 향상 단계			
정명채 외 (1991)		예비단계	영농착수 단계	정착 단계	성숙 단계		
				전업농화 단계			
정철영 외 (2001)	농업인력 확보	농업인력 양성	농업인력 신규진입	농업인력의 유지 및 퇴출			
서규선 외 (2002)	잠재 농업인력	예비 농업인력	신규 농업인력	신규 농업경영력	전문농업 경영인력		
강대구 외 (2004)	예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발전 단계	안정 단계	후계 수련 단계	경영이양단계

□ 농업인력관련 용어의 정리

-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이며 농업인력육성 정책의 대상으로써 정예농업인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농업정책 내에서도 전업농, 선도농업경영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업경영체, 우수농업경영체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표 5-3>.

- 전업농(전업농업인): 1990년대 초반 UR협상 이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력의 육성대상으로 등장한 개념임(전업농 육성사업). 타 산업부문의 종사자와 대등한 소득을 올리면서 농업의 경쟁력을 이끌어갈 선도적 역할을 할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경영체의 의미를 가짐.

- 선도농업경영체: 전업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선도농가의 개념이 제시되어, 1995년부터 선도농업경영체 지원사업이 시작됨(1996년부터 법인경영체를 추가). 선도농업경영체란 우리 농업을 선도해 나갈 전업농 내지 농업법인이며, 경영규모, 생산기술, 경영기법, 시설·장비, 소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가 일반농가 또는 농업법인의 발전 모델이 되고, 나아가 일반 농가와 농업계 학교 학생에게 현장감 있는 기술·경영교육을 실시하는 실습장으로 활용하는 데 주 목적이 있음.
- 신지식농업인: 1990년대 후반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신지식인운동의 일환으로 농업부문에서 추진되어 나타난 것으로 ‘학력과 전문자격증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상을 개선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능률을 실현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업·농촌의 변화를 주도하는 농업인’을 가리킴. 이들에게는 소규모 토지와 자본으로도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지식농업시대의 중심인력, 지식농업시대에 부합하도록 농업인 의식구조의 전환을 주도하는 인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였음.
- 우수농업경영체: 2004년 수립된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잠재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모델로서, 성공사례를 농업인의 새로운 사고와 창의적 노력을 위한 벤치마킹 제공처로서 활동할 수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수농업경영체’라는 이름으로 발굴하였음. 품목별 농업소득만으로 57백만원(’13년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을 상회(농업법인은 매출액 10억원 상회)하는 소득 또는 규모의 경영을 가지면서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성공사유를 가지고 있는 경영체를 의미함.
- 전문농업경영체: 농식품부(2010)가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을 발표하면서 우리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강한 경영주체로 제시한 것으로 경영규모가 3ha 이상 또는 판매금액 2천만원 이상인 농가를 가리키는 것임(일반농, 부업농, 자급농과 대비되는 개념).

표 5-3. 정예농업인력 요건의 다양성

		쌀	축산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업농 육성대상자 (2011)	1.5ha		육우 50두 양돈 1,000두	0.1ha	시설 0.3ha 밭 1.0ha		
	60세 이하		닭 30,000수 오리 5,000수 젓소 50두	60세 이하			
전업농	맞춤형 농정 (2006)	6ha	한우 100두 젓소 50두 양돈 1,500두 양계 5만수	사과, 배, 포도 1.5ha 복숭아, 단감, 귤 2ha	시설 1ha 노지(복합) 1.5ha 노지(전업) 3ha 인삼 4ha		절화 0.6ha 분화 0.3ha
고소득 전업농		10ha	한우 170두 젓소 90두 양돈 2,500두 양계 9만수	사과, 배, 포도 2.5ha 복숭아, 단감, 귤 3ha	시설 2ha 노지(복합) 2ha 노지(전업) 5ha 인삼 7ha		절화 1.0ha 분화 0.5ha
준 전업농		3ha	한우 50두 젓소 30두 양돈 500두 양계 2.5만수	사과, 배, 포도 0.7ha 복숭아, 단감, 귤 1.5ha	시설 0.5ha 노지(복합) 0.5a 노지(전업) 1.5ha 인삼 1.5ha		절화 0.3ha 분화 0.2ha
전문농업 경영체(2010)		3ha이상 또는 판매금액 2천만원이상					
농업인턴제 선도농 (2006)	5ha (전작 3ha)		한우 170두 젓소 90두 양돈 2,500두 양계 9만수	사과, 배, 포도 2.5ha 복숭아, 단감, 귤 3ha	시설 1ha 노지(복합) 1.5ha 노지(전업) 3ha 인삼 4ha		절화 0.6ha 분화 0.3ha
선도농업 경영체 (1994)	10ha		한우 100두 젓소 50두 돼지 1천두 닭 4만수	2ha	노지 2ha 시설 1,800 평	버섯300평 약용 2ha	절화 1,200평 분화 900평
우수농업 경영체 (2006)		품목별 농업소득이 57백만원 이상					
	10.7ha		한우 50두 젓소 50두 돼지 1천두 닭 4만수	3.3ha	노지 3.3ha 시설 1.2ha 일반밭 14ha		0.9ha

- EU의 경우 1980년대부터 농업을 주로 하는 주업농과 농업이 생계의 부수적 활동인 부업농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정책 대상을 주업농 위주로 가고 있음.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부터 농가를 전업/겸업으로 구분하던 방

식에서 주업/부업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음. 2000년대 중반부터 농업통계에서도 농가구분에 주업/부업 체제를 포함시켰고, 최근 농림수산식품부(2010)의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에서도 이 개념에 근거하여 전문농업경영인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외국의 농가 구분²⁶

- EU에서 농업경영체 유형 구분은 경영체의 표준조소득(SGM, standard gross margin)²⁷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의 영농규모와 생산품목별 전문화 정도로 구분하는데 영농규모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음.
 - 품목별 표준조소득은 조수입에서 직접비용을 뺀 것으로 3개년 평균값을 사용함. 조건불리지역과 같은 지역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지역지수를 곱해 최종 품목단위당 표준조소득을 산출함(품목별로 2년마다 갱신)
 - 개별 경영체는 품목별 표준조소득 지표를 근거로 작물별 재배면적과 축종별 사육두수를 곱해 해당 경영체의 품목별 표준조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합산해 경영체의 표준총조소득을 산출함.
 - EU에서 영농규모는 농업경영체의 표준총조소득 크기로 정해지는데, 유형화를 위해 일정 크기의 표준총조소득을 ESU(European Size Unit)로 나타내고 있다. ESU는 표준총조소득 1,200유로를 1 ESU로 계산함.
 - 현재 EU에서 사용하는 ESU의 크기에 따른 농업경영체 유형화는 16 ESU 이상을 주업농(professional farm), 그 이하를 부업농(non professional farm)으로 보는 한 가지 방법을 따름.
 - EU 농정에서 농업경영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주업농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농규모 크기에 의한 계층화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나타난다 할 수 있음.
 - ① 16~40 ESU 미만

- ② 40~100 ESU 미만
- ③ 100~250 ESU 미만
- ④ 250 ESU 이상

- 미국 농무부(USDA) 경제연구소(ERS)에서는 농가의 농산물 판매액, 경영주의 주업(농업/비농업) 그리고 농장의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구분함(미국에서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천달러 이상을 농가로 구분함). 이에 따르면 판매금액이 250,000 달러 이상인 경우는 대규모 농가(large-scale family farm), 그 미만은 소규모 농가(small family farms)임.
 - 소규모 농가(small family farms)
 - 은퇴농가(Retirement Farms): 농업인 요건을 갖추고 농업에 종사하지만 스스로 은퇴를 밝히는 농가
 - 자급농(Residential/Lifestyle Farms): 주업이 농업이 아닌 농가
 - 주업농(Farming-Occupation Farms): 농업이 주업인 농가로 판매액이 \$100,000미만인 저판매농가(low-sales farms)와 판매액이 \$ 100,000~249,999인 중판매농가(medium-sales farms)로 나뉨.
 - 대규모 농가(large-scale family farm)
 - 대농(large family farm): 판매액 \$250,000~499,999
 - 초대농(very-large family farm): 판매액 \$500,000 이상
- 일본에서 농업경영체는 전통적으로 가족농업경영인 농가가 주체이며 경영의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가족경영을 종전에는 취업상태에 따라 전업농, 겸업농(1종겸업, 2종겸업) 등으로 구분하였지만, 1990년 이후에는 고령 전업농가가 증가하는 등 전업농도 성격이 상반되는 농가가 나타나는 실태를 반영하여 '주업농가', '준주업농가', '부업적농가', '자급적농가'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표 5-4. 일본의 농업경영체 구분

구분	비고
농가	- 경지면적 10a 이상,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15만엔 이상
판매농가	- 경지면적 30a 이상, 또는 판매금액 50만엔 이상
자급농가	- 경지면적 30a 미만인면서 판매금액 50만엔 미만
주부업구분	(판매농가만 대상)
주업농가	- 농업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준주업농가	- 농외소득이 주(농가소득의 50%이상)이고,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있는 농가
부업적농가	- 65세미만 농업종사일수 60일이상인 자가 없는 농가

□ 농업인력 육성단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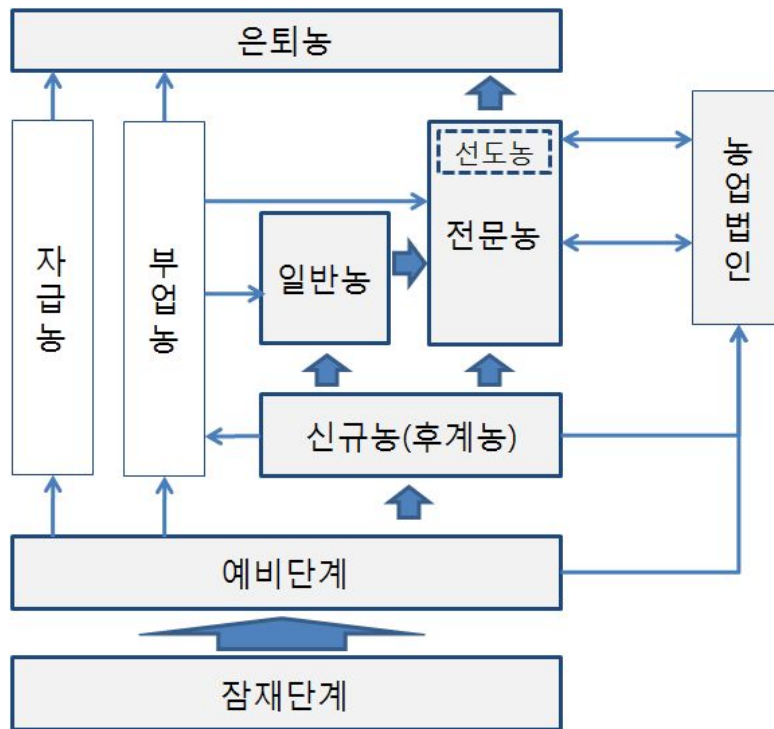
- 선진 외국 그리고 최근의 농업통계에서 활용하는 농가 구분 방식(주업/부업)을 활용하고, 주업 농가²⁸를 중심으로 잠재·예비 단계 재설정 및 은퇴 단계를 추가하여 '잠재단계 → 예비단계 → 진입단계 → 정착단계 → 은퇴단계' 등 농업인력육성단계를 5단계로 설정함<그림 5-3>.

26 유럽과 일본사례는 김수석 등(2006)의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연구, 미국 사례는 ERS(2010) 'Structure and Finance of US Farms'를 기초로 하였음.

27 김수석 등(2006)은 '표준수입'이란 용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 개념이 감가상각이나 재고증감, 대동물·식물의 증식이 반영이 안된 '조수입-직접비용'의 개념이어서 '조소득'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음.

28 다음과 같은 부업농가와 자급농가는 농업인력육성 주 정책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부업농가: 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외 수입이 농업수입보다 많은 65세 미만 농가
 - 자급농가: 경지가 없거나 경지규모가 30a 미만인 농가 중에서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65세 미만 농가

그림 5-3. 농업인력육성의 단계



- 잠재단계: 농업에 대해 무지한 상태의 일반 학생과 일반인
- 예비단계: 농업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농업계 학교 학생과 귀농 준비자
- 진입단계(신규농): 50세 미만,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농가 경영주
- 정착단계(일반농 / 전문농): 65세 미만의 주업농(경지규모가 30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농가 중에서 농업수입이 농업외의 수입보다 많은 농가) → 농업을 주 소득원으로 하여 농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농가
 - 일반농가: 경지규모가 3ha 미만이고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가
 - 전문농가: 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

만원 이상 농가

※ 주업농 중에서도 연간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억원 이상의 농가를 선도농가로 추가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임.

- 은퇴단계(은퇴농):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

○ 새로 정의된 농가유형별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신규농은 평균 영농경력이 3.4년이었고, 평균 연령은 42.3세, 경지면적은 평균 7,128m², 전문농은 평균 영농경력 27.9년, 평균 연령은 53.6세, 경지면적은 평균 30,989m² 였고, 농업소득은 33,212천원, 농가소득은 48,367천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보다 높았음<표 5-5>.

표 5-5. 농업경영체 유형별 주요 특성

농업경영체 유형	농업조사(2009)				농가경제조사(2007~2009 평균)		
	연령 (세)	영농 경력(년)	경지면적 (m ²)	판매 금액 ^a	환산 영농규모 ^b	농업소득 (천원)	농가소득 (천원)
신규농	42.3	3.4	7,128.4	3.70	-	-	-
일반농	56.3	28.3	10,298.4	4.84	13,386.3	6,262	18,714
전문농	53.6	27.9	30,989.7	8.06	41,855.7	33,212	48,367
선도농	51.6	25.2	39,501.0	10.31	69,913.5	66,234	92,113
은퇴농	72.2	45.6	8,446.3	3.95	15,309.9	7,019	23,378
자급농	54.8	20.7	1,839.2	1.51	8,333.0	-638	39,133
부업농	53.5	24.0	9,140.6	4.20	20,108.0	2,290	37,982
합계	63.4	35.9	11,665.2	4.53	20,276.6	9,860	31,051

a: 판매금액 급간: 1 '50만원미만', 2 '50~100만원미만', 3 '100~200만원미만', 4 '200~500만원미만', 5 '500~1000만원미만', 6 '1000~2000만원미만', 7 '2000~3000만원미만', 8 '3000~5000만원미만', 9 '5000~1억원미만', 10 '1억~2억원미만', 11 '2억원이상'.

b: 환산영농규모(m²)= 경지규모 + $\frac{\text{농업고정(유형)자산(경지제외)}}{\text{농지평균가격}}$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가경제조사」, 「농업조사」.

- 일반농은 1995년 60.8만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5.7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한 반면, 은퇴단계의 농가는 1995년 37.1만명에서 2009년 59.4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함. 전문농은 1995년 17.7만명에서 2009년 17.8만명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함<표 5-6>.

표 5-6. 농업경영체 유형별 규모

단위: 명(%)

농업경영체 유형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신규농		23,776 (1.6)	36,169 (2.6)	30,901 (2.4)	19,402 (1.6)
정착 단계	일반농	608,511 (40.5)	495,110 (35.8)	263,944 (20.7)	157,332 (13.2)
	전문농	177,455 (11.8)	188,939 (13.7)	190,450 (15.0)	178,154 (14.9)
은퇴농		371,169 (24.7)	451,758 (32.7)	549,490 (43.2)	594,351 (49.7)
비 정책 대상	자급농	92,575 (6.2)	89,753 (6.5)	101,715 (8.0)	88,453 (7.4)
	부업농	250,721 (16.7)	157,908 (11.4)	167,309 (13.1)	176,425 (14.8)
전체 농가		1,500,431	1,383,468	1,272,908	1,194,715

1: 1995년, 2000년의 경우 일반농, 부업농의 판매금액은 1백만원 이상임.

2: 1995년, 2000년 신규농 규모는 2005년 농업총조사, 2006~2009년 농업조사의 영농경력을 조사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

자료: 통계청. 각년도. 「농업총조사」, 「농업조사」.

3. 농업인력육성 비전 지표 재설정

-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목표를 계승하되 일부 수정·보완함.
 - 당초 2004년 계획은 농가의 1/4 이상(20만호)을 정예농업인력(규모화·전문화된 농업을 통해 도시 근로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농업인력)으로 성장시켜, 이들이 전체 농업 생산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이었음.
 -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비전 달성 여부를 평균 영농규모 또는 농가소득을 기준으로 한 정예농업인력 정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무리가 있음.
 -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도농간 소득 격차 완화라는 기존 농정의 근본 취지²⁹를 유지·발전시키되 비현실적인 비전 지표의 부분 수정 필요
- 목적(비전) 수정: 2020년까지 전문농(경지규모가 3ha 이상 또는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2,000만원 이상 농가) 20만호를 육성하고, 이들이 전체 농업생산의 50% 이상 담당하도록 함.
 - 당초 목표연도는 2013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여 추진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처럼 정예농업인력을 농업수입을 주로 하는 농가, 그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의 영농규모나 판매액을 가진 전문농으로 한정하도록 함.
 - 1995년 이후 농가유형별 변화율을 연장하여 추정된 값을 2009년 현재 17.8만명인 전문농이 2020년 16.7만으로 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목표치인 20만을 유지하려면 신규농의 지속적 유치와 더불어 일반농의 지속적 정예화가 필요함.
 - 20만 정도의 전문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진입이후 30년 이

²⁹ 일정량 이상의 농업생산이 농업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종사할 인력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과 일정 기간 영농에 종사하여 농촌에 정착한 사람이면 도시 근로자 못지않은 생활 여건을 누릴 수 있도록 함

상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40대 이하 인력이 매년 6,000~7,000명이 신규로 유입되어야 함.

- 그리고 신규 유입된 인력과 기존의 일반농중에, 2020년 전문농 목표치 대비 전망치의 차이(부족치)인 3.3만명이 새로이 전문농으로 육성해야함 <표 5-7>.

표 5-7. 농가유형별 인력육성목표 규모

단위: 천명(%)

농업 경영체	'95년 (A)	'00년 (B)	'05년 (C)	'09년 (D)	변화율(%)			2020년 전망치
					B/A	C/B	D/C	
일반농	608 (40.5)	495 (35.8)	264 (20.7)	157 (13.2)	-3.7	-9.3	-10.1	41 (4.1)
전문농	177 (11.8)	189 (13.7)	190 (15.0)	178 (14.9)	1.3	0.2	-1.6	167 (16.6)
은퇴농	371 (24.7)	452 (32.7)	549 (43.2)	594 (49.7)	4.3	4.3	2.0	820 (81.3)
전체 농가	1,550	1,383	1,273	1,194	-1.6	-1.6	-1.5	1,010

주: 전망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 1995년 이후 변화율을 연장하여 추정된 값임.

4. 사업의 기본 방향 보완

- (2004년)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의 원칙 확인
 - 젊고 유능한 인력 확보를 위한 강력한 유인대책 추진
 - 기존농의 교육·경영혁신 지원으로 자연감소 인력 대체
 - 농업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개선
 - 평가 및 사후관리 체제 구축으로 우수농가 발굴 및 성공사례 확산

- 기존 종합대책의 기본전략(원칙)을 유지하며, 진단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① 부족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투자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잠재인력 및 예비 인력 풀(pool)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함.
 - ② 후계 농업인력의 정착률 제고를 위해 ‘예비→진입→정착’단계별 각종 관련 사업간 연계 강화(패키지화)해야함.
 - ③ 경영 역량(회계·위기관리)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강조를 통해 프로경영인, 윤리적 생산자로서의 농업인 역량을 강화해야 함.
 - ④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각종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기반을 강화해야 함.
 - ⑤ 농업인력육성 정책이 보다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계획·운영·평가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어야 함.

- 인력육성 단계(잠재→예비→진입→정착→은퇴)별 육성대상, 목표, 관련 사업 및 기관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음.

표 5-8. 농업인력육성의 단계별 목표와 관련 사업

	잠재 단계	예비 단계	진입 단계	정착 단계	은퇴 단계
육성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고등학생 일반 시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생 귀농준비 사회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농 영농경력 5년 미만자(50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업농, 준전업농, 중소농 도시가구수준(80~120%)의 소득자 영농경력 5년 이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령자 또는 육체·정신·경제적으로 경영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 65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육성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지지 미래 잠재적 농업인력으로서 가능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과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농업분야 직업기초능력 함양 농업 분야로의 진로 계획 및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실용적 농업 역량 농업에 대한 사명감과 철학 경영인으로서의 기본역량 농촌 지역사회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농업경영인으로서 역량 구비 안정적 농가 경영 규모의 지속적 확대 도시가구 이상의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 노후설계 노년기 생산적 활동(지역사회 개발, 사회 봉사)에 필요한 역량 개발 후계세대에 경영이양
기존 관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자·시민 대상 교육 귀농·귀촌 성공사례 / 우수농업인 발굴·홍보 농업 희망찾기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농고 농대영농정착교육 과정 농업인턴제 한국농수산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후견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업마이스터대학 전업농사업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농업인 교육·훈련 신지식농업인 	
신규 추진 필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어촌 유학 농직업탐구 프로그램 식습관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 강화 비농업계학생 유입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 위기관리 교육·컨설팅 강화 윤리적책임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농승계활성화 사업
주요 관련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농업계 학교(농고, 농대) 농업연수원 농촌정보문화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재개발원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식품부 산하 공공기관(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대학 	지역 농업인력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계 학교 농협 농민단체, 품목단체 민간컨설팅 회사

5. 세부 추진 사업 보강

- 과거 사업에 대한 진단, 비농업분야 사례 검토를 토대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보완하고, 신규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였음.

5.1. 잠재인력 발굴사업 확대

- 농업인력육성을 위한 투자도 비농업분야의 인력육성사업들처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현재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유·초·중등 단계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잠재인력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인력육성과 관련한 투자는 대상 연령이 낮을수록 효과가 더 크기 마련임. 최근 비농업분야에서는 자기 분야의 우호세력을 마련하기 위해 유·초·중등 교육에 보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교총,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등 4개 교육단체,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개발원, 한국소비자원 등 경제 관련 총 23개 정부부처 및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여 학교 안팎의 대국민 경제교육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8년 12월 (사)한국경제교육협회를 구성하였음. 이를 통해 경제교육법 제정, 지역단위 경제교육, 대국민 경제인식 관련 실태조사, 경제교육 전문가 양성, 교사들의 경제관련 연수 지원, 다양한 경제관련 교과서 개발·보급 등 매우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에 개입하고 있음. 효율성, 효과성을 중시하는 이들이 유아, 청소년

- 교육에 매진을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함.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유입을 위한 제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음.
- 농업인력육성 사업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종사하려고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다 어린 나이의 학생들에게까지 대상을 넓혀야 함.
- 농업 잠재인력 육성사업은 농업에 대한 대국민 소양 제고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의 잠재 농업인적자원의 확보,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농정의 든든한 정책 후원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농업·농촌에 대한 기존의 소극적, 수동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농업이 우리의 식생활과 삶의 질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며, IT·BT 등을 활용하는 미래 유망 산업일 뿐만 아니라, 농촌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적극적인 이미지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기존 관련기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농촌 마을 체험 프로그램인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 농촌정보문화센터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업분야 직업을 체험하게하는 ‘농직업탐구 프로그램’
 -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의 식습관교육 프로그램
- 장기적으로는 농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전담할 실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설립할 필요가 있음(←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 사례 참조). 여기에서는 농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의 기본 방향(비전) 설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 내 실과, 산하 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진행되는 관련 업무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농식품 관련기관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각종 교육·홍보 활동의 전문성(교재개발, 프로그램개발, 강사지원 등)을 강화 및 이들 기관의 기존 교육·홍보 콘텐츠의 질 관리(정확성, 충실성 보완)를 위한 활동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민간 단체의 농식품 관련 교육·홍보 활동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하여 상호 벤치마킹 기회 제공과 더불어 상호 중복적인 활동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사 연구회 운영: 현장의 초·중·고 교사 중에 농식품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 중심으로 연구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원하여 교사들이 교과서 및 각종 교육관련 활동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각종 교과서 발간 지원 및 농식품 관련 교재 개발
- 현직 교원 연수 / 교대 예비교사 연수 프로그램 지원
- 농식품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강사 자원을 확보하여, 초·중·고 교육 현장(‘창의적 재량활동 활용’) 및 각종 교사 연수 현장(각종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수원)에서 농식품 관련 프로그램 요구시 운영을 부분적으로 지원 또는 프로그램 일체(세부 프로그램 내용, 운영 강사)패키지로 지원
- 대국민 농식품 소양에 대한 정기 조사: 시범학교 운영 및 농식품 관련 교과서에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식, 그리고 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을 조사하고, 나아가 전국민의 소양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 교육 활동 그리고 모니터링 활동의 성과 지표로 활용
- 초·중등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 국가의 입법가들 대다수는 비농업 지역 출신이고, 농업과 직접적 관계를 가진 경우가 점차 드물어지며, 생산 중심의 식량 및 농업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 정책으로의 초점 이동은 한 국가의 식량 수급 체계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는 문제 인식 하에 1980년대 들어 미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농업, 환경, 식품 관련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인 AITC가 추진됨
- AITC는 연방정부 차원의 조직과 주정부 차원의 조직으로 구성됨. 미국 농업부의 국가 AITC(national AITC)의 직원은 팀 리더, 국가 프로그램 리더, 프로그램 전문가, 프로그램 보조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활동결과는 농업연구지도청(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USDA CSREES)의 과학·교육 자원개발 부국장에게 보고됨. 각 주의 농업 교육은 지역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부 주에서는 자원봉사 네트워크에 의해 교사 교육 및 교재 배분이 이뤄지고, 몇몇 주들은 교육부, 또는 농업부 아니면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주는 농업 단체 또는 품목 단체를 통해서 제공함.
- AITC를 통해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음(일리노이주 AITC 사례).
 - 교재 및 교안 제공: 교사들을 위해 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와 교안 제공
 - Acres of Agventures: 지역 내 교사들이 농업 내용을 교과에 잘 접목시킨 우수 사례를 공유
 - Adopt a Classroom: 지역 농민과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농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농민이 학생들에게 글이나 사진을 통해, 또는 농장 방문을 통해 농업과 관련한 궁금증 해소
 - Grant: 농업교육 관련 교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재정적 지원(프로젝트당 USD 250)을 해 주며, 특히 신규 교사들에게 많은 혜택을 줌
 - Teacher of the Year: 매년 농업교육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시한 교사를 선정하여 시상
 - Preservice Teacher Workshop: 사범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순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으며, 농업과 관련한 교안 작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료(PreService Teacher Packet)를 무료로 제공

- Agricultural Awareness Conference: 매년 주 지역 내의 농산업체와 교육자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농업과 교육에 대하여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대회를 개최
- Summer Agricultural Institute: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들이 농업 관련 내용을 자신들의 교과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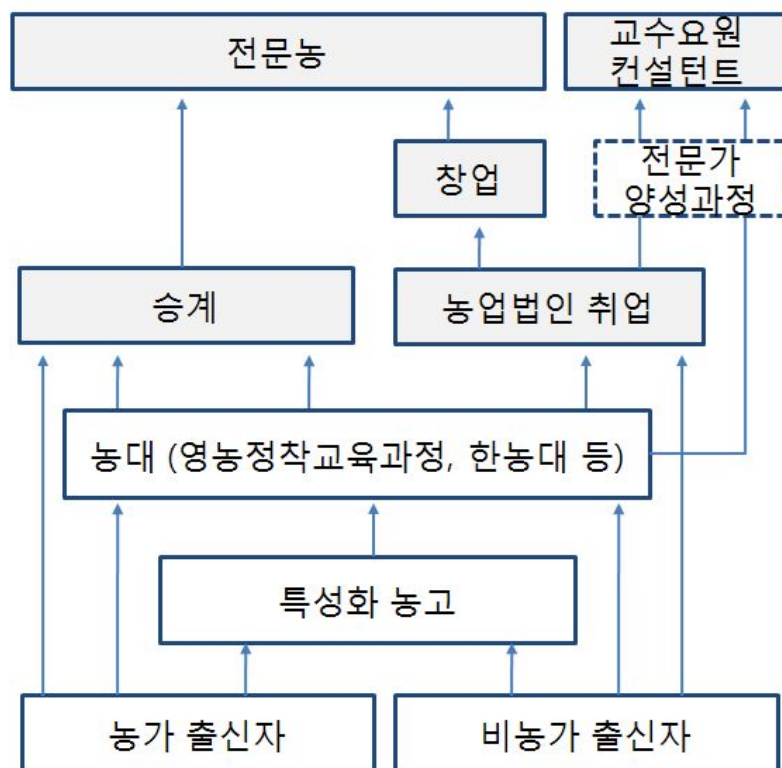
5.2. 신규인력 유입사업 보완 · 강화

□ 농고 · 농대 영농 관련 사업 강화

- 신규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농업계 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업인력의 육성의 출발은 우선 기본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신규 인적 자원의 유입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인 농업계 학교를 빼고 농업인력 육성을 얘기할 수는 없음.
 - 해당 분야 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관련 학교 교육기관이 없는 부처들의 경우, 보다 많은 일반 학생들이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최근 농업계 교육기관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지만, 농업분야는 아직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기관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음.
 - 농업계 교육기관에는 농업 분야별 교육전담 인력(교사, 교수)과 분야별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음. 더 여건이 나빠지기 전에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농업계 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³⁰.

- 농업계 학교에 대한 투자를 함에 있어 우선 농고·농대생들이 농업분야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경력경로(Career Path)를 제시해주고, 이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보장해 주어야 함<그림 5-4>.

그림 5-4. 농업계 학생의 Career Path 설정(안)



- 영농기반이 있는 농가출신의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농대→승계→ 전문농’으로 이어질 수 있게 유도하고, 영농기반이 없는 비농가출신 농업계 학생들은 ‘농고→농대→농업법인취업→창업→전문농’ 또는 ‘농고→

30 관련 교사(교수) 면담 결과 사회의 고용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최근 농업부문 자영자 육성을 목표로 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고교 단계에서부터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농가 출신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함). 추후에 이와 관련한 정확한 통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농대→전문가 양성과정→전문 교수요원/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농고, 농대, 영농현장조직(이후에 소개될 '지역 농업인력 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상호 연계되어 고용노동부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사업' 처럼 관련 사업들이 패키지 형태로 연계되어 지원될 수 있게 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 예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성화 농고 프로그램',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와 같은 분배위주의 평균적 개념의 학교 지원이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영농 교육에 대하여 더 많은 교육 자원을 투자할 준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더 많은 교육 예산 지원이 필요함.
-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의욕있는, 준비된 학교를 중심으로 현재의 학문중심 교육체제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영농중심 교육체제를 운영할 것을 제안함<표 5-9>.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데, 많은 이수생들이 이론 중심의 전공 강의나 실습, 영농정착교육과정을 통해 특화되어 제공되는 각종 현장 중심의 교육 간의 연계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현재와 같은 기존 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영농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개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과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를 위해 학문 또는 타 산업분야 취업 희망자들을 영농정착교육과정과 별도로 농업후계자를 육성하는 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함.
- 생명과학 분야 등의 학문 또는 취업 희망자들을 위한 기존의 학과 및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되, 농업후계자 육성을 위한 과정은 학생 선발 체제에서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학과 통합적인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임.
- 이 과정에서는 학생선발 시 농업계 고등학교 출신자를 우대하거나 영농 관련 배경과 역량에 초점을 두고, 특히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의 중요성 그리고 농업 및 생명과학의 최근 동향과 관련한 내용을 교육하고, 교육성도가 우수한 학생은 신입생 전형에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함. 이를 통해 지역 농업계 고등학교와의 인적 교류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농학에 대한 관심을 높여, 농대 신입생으로 유치할 수 있음.
- 한편 농업후계자 과정은 특정 학과의 전공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통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예를 들어 졸업 후 경종 작물 경영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작물 관련 과목뿐만 아니라 토양, 농기계, 병해충, 환경, 경영, 유통 등 인접 학문을 수강하게 함으로써 폭넓은 소양을 쌓게 하고, 현재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에서와 같이 다양한 농업인 강좌, 농가 인턴실습, 그리고 해외연수 등의 영농 현장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함.
- 이러한 영농중심 교육체제를 졸업한 학생은 지역의 농촌에서 농업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농업인이 되거나,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가로서 농업교육 강사 또는 영농 컨설턴트로 활약할 수 있을 것임.

표 5-9. 농과대학의 이원화된 교육체제 운영(안)

	학문 중심 교육체제	영농 중심 교육체제
운영 목적	- 관련 전공 분야의 학문적 발전 - 농업 (전후방) 관련 분야 인력 육성	- 농업 생산 분야 종사 인력 육성 - 지역의 농업 유지·발전에 기여
신입생 자원	-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 취농을 준비 중인 일반 성인
교육 내용 및 방법	- 기초 학문, 이론에 대한 강의와 실험 중심 교육	-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실습 중심 교육
교육운영 단위	- 학과 중심	- 전공간 통합교육
졸업생 진로	- 관련 전공 대학원 또는 생명공학 등 관련 산업분야 직장	- 전문 농업인 또는 현장 중심의 농업 컨설턴트

○ 농고, 농대생중 우수인력을 선별하여 농업 전문가(교수요원,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농업인력육성과 관련한 문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농업인력육성의 주체(교수요원, 컨설턴트)의 역량 부족임.
- 영농중심교육체제를 통해 현장 중심 교수요원, 농업컨설턴트가 양성하는 것 외에 농대생중 영농기반은 없지만 현장 농업에 기여할 의욕이 있는 소수 정예의 학생을 엄선하여 장기 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할 필요 있음.
- 국내의 최고 전문가진을 구성하여 이들의 교육을 전담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 네덜란드나 뉴질랜드 등과 같은 농업 선진국의 교육기관에 장기 연수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임.

□ 영농 승계 및 경영 이양 활성화 사업 추진

○ 농가 경영이 규모화됨에 따라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짐

에 따라 기존 농가의 경영승계를 촉진시키는 것이 농업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임.

- 농업총조사에 따르면 농가경영주 중에 영농승계자 보유농가는 2005년 현재 3.5% 수준임.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가업승계지원센터(www.successbiz.or.kr)’를 운영하면서,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커뮤니티 형성, 가업승계메뉴얼 개발, 우수사례 발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도 농가승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보다 1% 정도만이라도 경영승계 비율이 높아진다면, 매년 만명 이상의 경영기반을 가진 신규인력이 추가로 확보가능함.
- 한편 승계할 후계자가 없는 은퇴농의 농장이 신규농가에게 효과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은 자신이 농업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농장을 쉽게 물려주지 않음. 신규농가는 양질의 농장 확보 뿐 아니라 농장 규모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일반적으로 경영 이양에는 다양한 대인관계 및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세금, 농지이양 등에 관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매우 중요함.
 -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하고 농업 은퇴자와 신규농업인이 경영이양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주요국에서는 경영이양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음.
 - 은퇴농의 농지가 비농업인에게 매각되거나 휴경지로 남지 않고 농업생산에 계속 활용되도록, 은퇴농의 경영이양 계획 수립하도록 농가방문 등을 통해 컨설팅하고, 경영이양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필

요가 있음

Beginning Farmer Center

- 미국 Iowa 주립대학 내에 Beginning Farmer Center에서는 은퇴농의 농장을 신규농으로 이양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농가승계 및 경영이양 촉진사업을 199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신규농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은퇴농의 요구사항 조사, 상속인이 없는 은퇴농과 신규농 간의 연계를 위해 'Farm On' 프로그램 운영, 경영이양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매뉴얼(Farm Savvy)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경영승계 지원을 위해 농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의 공공기관 간 협의체(National Farm Transition Network)³¹를 구축하여 기존 농업인이 승계자를 육성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 이들 협의체는 전국의 농업인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는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영농승계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FarmLink

- 미국 각주의 농촌지도기관에서는 FarmLink를 통해 은퇴농의 경영승계를 지원하고 있음.
 - FarmLink는 가족농업의 창업지원과 농지의 유지·보전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창업 의지가 있는 예비농업인과 은퇴농을 연계시켜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조직으로 세대간 경영승계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함.
 - 전국에 설치된 FarmLink의 농촌지도인력들은 은퇴농의 농지가 비농업인에게 매각되지 않고 농업생산에 계속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 진입농과 은퇴농의 농지보전과 경영승계를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농촌지도인력은 경영승계 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설정과 농가방문 등을 지

원하며, 경영승계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교육도 실시함.

- 교육지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지도기관의 교육자료들을 통합하여 온라인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경영에 필요한 회계, 금융, 토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 풀(인명부)을 구축하여 농업인들이 승계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워크숍: 신규농과 은퇴농의 경영승계에 대한 사전계획(농지이전 등) 수립의 중요성과 계획에 따른 경영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며, 관련 정보자료 열람과 참가자의 의견공유로 이루어짐.
- 컨퍼런스: 가족농 구성원(은퇴자 및 승계자 등)을 대상으로 2회 이상 개최되며, 주로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는 의사소통기술 향상을 위해 진행됨. 첫 번째 컨퍼런스가 종료되고 약 6주정도 후에 두 번째 컨퍼런스가 진행되며, 그 사이에 구성원들은 사업 설정, 과업목록 작성, 가족회의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첫 번째 컨퍼런스에 진행된 가족 구성원 간 의사소통기술을 활용하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농 구성원들 간에 경영승계에 대한 핵심사항들을 토의하도록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도록 함.
- 컨설팅: 농가 경영주가 사업목표를 설정하도록 돕고, 필요한 교육기회 제공과 농가 구성원의 토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지도인력이 개별 농가들을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컨설팅은 주로 새로운 작목재배, 소득창출 방법, 그 밖의 기술지도 등에 대해 이뤄지며, 컨설팅 이후에도 전화를 통해 컨설팅 결과에 따라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함.

Resource Center for Farm Establishment

- 캐나다 퀘벡(Quebec) 주에서는 은퇴농의 영농승계 지원을 위한 'Resource Center for Farm Establishment'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퀘벡 주 내의 11개 지역별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센터장과 농업인 회원을 두고 있고 각 회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며, 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각 센터 내에는 지역 농업인과 공동 작업을 위한 전담 직원이 배치에 되어 있으며, 이들 지원들은 중재, 협상, 재무, 대인관계 분야의 교육훈련을 받게 됨.
- 이들 센터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원활한 경영이양을 위한 조사분석, 중재, 전략적 기획수립, 정보제공, 훈련, 사후관리, 멘토링 서비스 등임.
- 대다수의 가족농들이 영농승계에 소요되는 약 2-3년 동안 해당 지역의 센터에 가입하고 있음.

□ 비농가 출신 농업계 학생 및 비농대생의 신규 유입 촉진

- 농업계 학생 중에 비농가 출신 학생들의 농업분야 유입 촉진을 위한 농업법인으로의 취업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품목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돈버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규모가 전제가 됨. 영농기반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신규 취농의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비농가 출신자의 경우 성적이 우수하고 농업에 관심이 높더라도 일부 농업계 학교에는 입학조차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들 학생들을 영농분야로 유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일본의 경우 영농기반이 없지만 농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사회인들을 위한 농업회의소, 농업법인협회가 연계하여 1주일~한 달 정도의 농업법인 인턴십(체험)을 실시하게 하고, 6개월 정도의 장기 실습연수(OJT)를 제공하고 있음.
 - 부모님의 영농기반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 농업 법인 취업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후 농가를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31 지역별로 협의체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미네소타 주의 경우에는 'Minnesota Farm Connection' 이, 위스콘신 주의 경우에는 'Wisconsin Farm Link' 라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음. 이들 지역별 협의체의 개별 사업은 Iowa 주립대학의 'Beginning Farmer Center'의 사업과 연계·조정되어 이루어짐.

일본의 농업 인턴십 사업

-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생 중 농업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농업법인 회사에서 인턴십으로 근무할 수 있게 알선해주는 사업(1999년부터 시행)을 실시하고 있음. 이는 농업활동에 대한 체험을 통해 귀농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음. 최근에는 나이가 많은 일반 직장인들의 농업법인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OJT 연수사업’도 실시하고 있음.

일본의 법인체를 통한 취농 촉진 사업

- 일본에서는 1997년부터 귀농 희망자들을 농업법인 등에 취직시키는 귀농 촉진 사업을 시작하였음. 이 사업은 귀농 희망자들이 농업법인에 우선 취업해서 상당기간 영농기술을 배운 후, 회사 인근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영농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영농기술을 배우는 동안 급여를 받아 농촌에서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 효과가 높다는 평가임.

- 비농업계 학생의 경우 영농분야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힘들기에 영농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학 내 창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업화 역량을 갖춘 창업동아리의 우수 창업아이템을 발굴·지원하여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 가능한 사업을 육성·발굴하고 있음. 창업보육센터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한 창업동아리에는 동아리당 운영비 400만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짐.
 - 농대생의 경우 농대영농정착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영농과 관련한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대학생들의 경우 학점 이수 상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참여가 힘들. 영농에 관심이 있는 비농업계 학생의 경우 이들이 자발적으로 영농 동아리 활동을 할 경우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경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5.3. 정착 지원사업 강화

□ 지역 농업인력 전담조직(중간지원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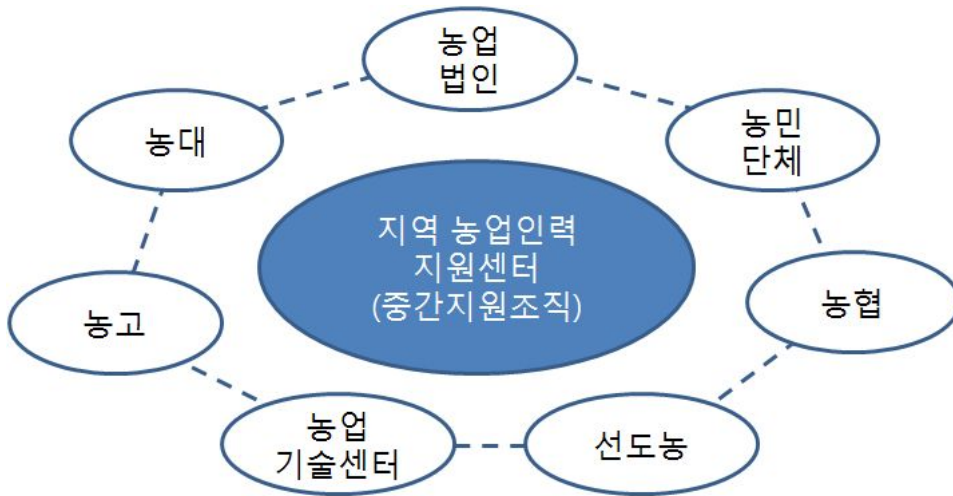
- 현재의 후계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사업체계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많은 부분이 정교화되었지만, 실제 지역 현장에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예를 들어 보면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계농 선정과 후속 지원 조직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침이나 평가기준, 지원기준 등이 최근에 많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농협 및 기타 후계농 지원 관련 기관의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후계농 신청자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일부 지자체의 경우 후계자 선정 이후 이들이 제대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 번도 갱신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함.
 -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다른 여러 업무의 하나로 다루고 있기 때문임(상당수 지자체에서 다른 업무들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음). 즉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은 현장 담당자의 개인 역량, 지자체 차원의 관심 부족에 기인함.
- 비농업분야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음.
 - 지방 중소기업 창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

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전담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두고 있음.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역별로 사업영역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주로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상담, 지원정보 및 자료제공, 신기술개발지원, 자금지원, 인력채용, 판로개척, 상품전시 및 판매, 창업보육실 및 벤처타운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농업 후계인력의 성공적 육성(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행정인력의 교체에도 지속적으로 전문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의 농업 후계인력육성 지원을 전담할 중간지원조직(지역 농업인력지원센터)이 필요함<그림 5-5>.
- 이 조직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자(준비자)는 항시적으로 관련 상담을 받고 선정과 관련한 평가자료를 준비하고, 이후 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임.
 - 또한 보다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지원(교육, 컨설팅, 학습조직, 개인학습 정보)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이외에 이 조직에서는 귀농·귀촌자 정착지원,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계절제 농업인력 지원, 선도농과 신규농의 연계를 통한 멘토링, 은퇴농과 신규농의 연계를 통한 농장 연계, 농고·농대생의 농업계 법인 취업 지원, 지역의 주요 농업주체 및 자원(농업계 학교와 농업법인, 농민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간 연계를 통해 각종 농업인력육성 사업들이 패키지로 수요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업무성격상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조직은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만약 사회적 기업으로 이러한 조직이 지역에서 활성화된다면 비농업 분야의 전문가나 농업계 대학생의 참여가 보다 원활해질 것이고(조직의 주체로서 또는 고객으로서), 이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기존 농업 분야 민간 자원과 공공 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연계(후계농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경제)될 수 있을 것임.

그림 5-5. 지역 농업인력지원 조직(안)



[주요임무]

- 귀농·귀촌자 정착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관리·개발 지원
- 선도농-신규농 연계(멘토링 시스템)
- 은퇴농-신규농 농장연계
- 외국인 노동자 등 농업노동력 공급지원
- 농고·농대생 취업 지원 / 농업인턴제 운영
- 지역의 농업교육자원(인적, 물적) 연계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의 충남형 사회적기업 지정 사례

- 2006년 귀농관련 소모임에서 시작한 서천군 귀농인협의회는 도농교류와 귀농인 지원이라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명목으로 2010년 충남형 사회적기업으로 지

정됨.

- 서천군청,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충남발전연구원,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 연암대 귀농지원센터, 전국귀농운동본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농촌폐교를 활용한 도농교류사업과 귀농 지원,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의 성공적 정착지원을 하고 있음.

5.4. 농업인 전문성 개발사업(교육 + 컨설팅) 개선

□ 농업인 회계 및 위기관리 교육강화

- 농업인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는 농업인들의 경영 전문성 제고 차원뿐만 아니라 농업인력육성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필요함.
 - 상당수 농업인이 자신의 영농 계획과 감가상각비, 투자분석 등 농가회계와 관련한 기본 지식조차도 없이, 우선 받고 보자는 식으로 정부 지원사업을 받고 있음. 그러다 보니 융자형태로 이뤄진 정부 지원사업은 그대로 부채로 이어지고 있음. 자금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의 정책자금 지원은 빚쟁이를 양산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
 - 자금(돈)에 대한 인식, 경영분석을 토대로 사업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농업분야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임. 마상진 등(2010)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개인적 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영농규모 변화, 조수입 변화에 있어 경영장부 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농가가 위기관리 방식들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기관리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최근 환경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및 가축질병이 빈발하고 있고, 또한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이 심화되고 있고, 국제 원자재시장의 불안정으로 비료, 농약, 사료, 연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농업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음. 수입 개방 확대와 풍작에 의한 과잉생산으로 과일 등의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처럼 농업부문의 외부여건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농가 육성에서 농업경영의 위기관리가 중요함. 위험수준이 높을수록 실패에 따른 손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농업투자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전문농으로의 발전이 위축됨.
 - 농업 부문의 국내외적인 위험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 구축과 위기관리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 그리고 농가에 대한 위기관리 교육 강화해야함.
- 호주에서는 농업인, 농가, 농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농업인 경영, 회계, 위기관리 등의 분야를 강조한 Farmbis라는 농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하였음.
- Farmbis는 경쟁력, 수익성, 지속가능성을 가진 농산업,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을 토대로 변화에 대응·적용할 수 있는 자립 가능한 농업인, 호주 천연자원 기반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음.
 - 특히 기존의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이나 지도가 생산 기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도록 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였음. 재정관리, 마케팅, 천연자원관리, 위기관리, 리더십 등과 같은 분야에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줌.
- 농업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인들이 이를 의

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통해서 농가경영회계와 관련한 전문성 개발을 강화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농업인 회계활용 교육프로그램은 시사하는 바가 큼. 참여개발식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와 동시에 참여 농가의 사정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이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 이를 통해 농업회계에 대한 농가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자본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경영체라는 자존감을 갖게 하며, 농가 구성원 단위의 교육을 통해 부수적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세대(부부) 간의 갈등도 해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의 농업경영체 경영회계 교육

- 농업회계에 대한 이해와 경영 마인드 제고를 통해 주먹구구식 농가 경영 관리를 극복하도록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부설 농업정책연구소에서는 농업인(부부)을 대상으로 소그룹 경영회계 교육을 실시함.
 - 1일차: 농업회계 이해 및 경영마인드 제고
 - 2일차: 논리적 사고법 트레이닝 / 표준 회계 이해
 - 3일차: 품목 특성 파악을 통한 회계요소 도출
 - 4일차: 품목 특성을 반영한 관리 회계 수립 및 계정 분류
 - 5일차: 프로그램 개발 평가
 - 6일차: 프로그램 실습 / 농업세무회계 이해
 - 7일차: 프로그램 실습
- 30명 단위로 총 7일간 (야간)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회계 교육과 차이점은 강사는 일반 경영분야 회계 전문가이지만 일반적인 회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와 참여한 농가가 함께 농가 사정과 품목 특성을 반영하여 자신만의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낸다는 것임.

미국의 위기관리 교육

- 미국은 지역별 거점 위기관리교육센터(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s)를 지정하고 농가에 체계적인 위기관리 교육 리더십과 농가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미국의 위기관리 교육은 생산 위기관리, 마케팅 위기관리, 재정 위기관리, 법률 위기관리, 인적자원 위기관리 등 크게 다섯영역에 걸쳐 이뤄짐.
 - North Central 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
 - Southern Region Risk Management Education Center
 - Western Center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
 - Northeast Center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

□ 사회적책임 · 공공성 관련 교육 강화

- 비농업분야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윤리경영, 책임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기업활동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농업부문도 이와 관련한 논의를 수용하여 개인 농가를 넘어서서 이웃 농가의 발전, 나아가 농촌 지역사회의 개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사회의 농업·농촌 부문에 대한 투자는 도시 및 상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희생 그리고 다원적 가치를 지닌 농업·농촌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최근 들어 직불금 및 각종 정책지원 사업의 부당 수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대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는 추세임. 농업계 내부에서도 나눔축산운동³², 농어촌 공동체 회사 추진 등 농업·농촌 내부의 사회적

- 책임에 대한 내부갱생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 지금까지 농업인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에 있어 농업·농촌의 발전과 관련한 농업인들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전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동안 농업인력 육성의 방향도 ‘돈 버는 농업’에만 집중했지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농업은 아니었음.
 - 농업인들이 자신의 농장발전뿐만 아니라, 다른 농업인의 발전도 선도하고, 나아가 농촌의 사회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교육을 통해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포함한 각종 농업인력 육성사업은 개인 농가의 발전 뿐 아니라, 농업·농촌 발전이라는 사회적 목적이 담긴 사업임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음.
- 소비자에게 깨끗한 농식품을 공급하는 생산자로서 자신의 발전뿐 아니라 이웃 농가와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농업·농촌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농업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

5.5. 농업인력육성 시스템 개선

□ 사업 성과진단 체제 구축

- 이 연구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진단 및 성과 평가를 하였지만 아직 한계가 많이 있음. 연구사업의 형태로 평가가 이뤄짐에 따라 평가와 관련하여 획득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었고, 아직 평가를 위한 자료 구축 시

32 사회에 만연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축산관련업계가 사회적 나눔 운동을 적극 펼치기 위해 2010년 7월부터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운동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음.

- 농업인력 사업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촌개발, 농촌복지 분야는 이미 2005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고, 최근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개발하여, 삶의 질 분야별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하였음.
 - 우선 현재의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부터 세부 사업영역별로 무엇을 성과지표로 하고, 그 달성여부를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것인지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점검 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명확한 성과지표의 설정과 더불어, 농업인력육성 정책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되기 위해서, 나아가 정책의 정교함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업인력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맞춤형 농정을 위해 농림수산물부가 농가의 경영등록정보를 정리해 있지만, 아직까지 인력육성과 관련해서는 많은 정보가 수집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농업인이 이외의 잠재, 예비, 그리고 은퇴 단계의 인력과 관련한 통계는 현재로서는 거의 수집체제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각종 사업을 통해 발굴되는 잠재단계의 농업인력에서부터 농업계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학생 인력(예비단계), 농업에 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신규인력(진입단계), 그리고 정착 단계의 일반농과 전문농, 경영 이양을 촉진해야 할 은퇴 단계에 있는 농업인력의 현황과 미래 변화 추이를 전망하고, 외국인 노동자 포함한 농업노동인력의 계절별·지역별·품목별 수급을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료 수집 체제가 필요함.

- 중소기업청에서는 정기적인 ‘인력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을 조사하여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농가경제조사나 농가(총)조사 등 현재와 같은 농가를 중심으로 한 조사와는 다른 농업인력 수급 현황에 초점을 둔 별도의 조사나 전망시스템이 추진되어 현재인력 및 부족인력 현황, 향후 수요전망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당초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에서 추진하려던 농업인력 센서스 사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부록. 타부처 주요 인력육성 지원 사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잠재 인력	중소기업 체험학습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대학생의 중소기업 현장연수 및 중소기업 CEO 강좌 수강을 통해 중소기업 인식개선 및 건전한 직업관 함양 * 현장연수(방학기간에 3~4주), CEO 강좌(정규학기, 연 2회), 인식개선	25억원 *장기/혁신형 연수 (3,194명, 67개 대학), 탐방(4,231명, 43개 대학), CEO 강좌(6,900명, 43개 대학)	24억원 *장기/혁신형 연수 (3,000명, 50개 대학), CEO 강좌 (4,000명, 30개 대학)
	중소기업 인식개선 (중기청)	-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을 집중 조명하여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대국민 인식개선 도모	6억원	30억원
	대학생 중소기업 현장체험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	대학생의 직업가치관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창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반 조성 * 대학생혁신형중소기업현장연수: 이공계 대학생이 혁신형 중소기업을 3주간 연수하고 학점 취득 * 성공중소기업CEO강좌: 이공계 대학에 성공 중소기업 CEO강좌 개설하여, 올바른 직업가치관, 중소기업CEO의 경영철학 및 창업가정신 등을 함양	-	24억원 50개 대학 10,000명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운영 (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고용지원센터	청년에게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 제공 * 월 40만원 연수수당 지급 * 위탁을 받은 사업운영기관은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기관 발굴, 연수생 직무교육 및 알선·관리, 연수수당 지급,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역할 수행	205억원	149억원 15,000명
	종합직업 체험관 (노동부)	기획지원팀	-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에게 다양한 직업을 탐색·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을 형성하고 자신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택을 지원 * 총사업비 : 1,961억원(부지매입비 474억원), 사업기간 : '05~'11년	115억원	382억원
	직업체험·	청년고용	고용지원센터	직업체험(job school), 취업캠프프로그램 운영 등	30억원	29억원, 28천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직업캠프 프로그램 (노동부)	대책과		*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내에 포함 운영		
신규 인력	마이스터고 육성 (교과부)	진로직업 교육과	교육과학기술부	장인(마이스터) 양성을 위한 전문계고 교과과정 개발, 기자재 구입 등 지원	'08년 8개, '09년 12개 신규지정	21개
	관광분야 청년인턴채용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한국관광협회 중앙회(국내)/ 한국관광공사(국외)	현장체험을 통한 실무중심의 관광인력 양성, 관광분야 구직자와 사업체 간 연계 지원 * 국내: 만 18세-33세 이하인 청년실업자, 정부와 인턴채용 사업체에서 인건비 매칭 지원(사업체는 최소 월 40만원 이상 인건비 지원 / 정부보조의 경우 6개월간 월 60만원 지원하되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 추가지원 * 국외: 관광산업에 관심이 있는 만 18-29세 이하인 자, 인턴취업국가에서의 체재비 일부 지원, 보험료, 비자발급 등 지원	175명, 1460백만원	250명, 1,630백만원 (국의 100명 제외)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지방자치단체	퇴직자, 향토 사학자, 주부 등 폭넓은 유희인력을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역사·관광 분야의 현장 전문인력 양성 * 지자체경상보조, 정률지원(50:50)	15개시·도 (제주 제외)	15개시·도 (제주 제외)
	인력채용패키지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년 미취업자 등에게 맞춤형 직무교육(2~3개월)과 취업예정 업체에서의 현장연수(1~3개월)참여 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 실무교육, 집합교육(20만원/월), 현장연수(70만원/월)	150억원 (교육 5,450명, 수료 4,218명, 취업 2,620명)	52억원, 3,000명
	해외기술 인력도입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내에서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인력 발굴·도입을 지원 * 업체당 연간 4명 이내 지원 * 체제비(1,500~2,000만원), 인력발굴(수도권 2백만원·비수도권 3백만원),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Economy, 편도)	21억원, 144명	20억원, 135명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력지원과	지방중기청/ 교육청	산업체와 특성화고(대학)를 연계, 산업체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실업난 해소	-	73억원('11년 기준)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중기청)					
	우수벤처 온라인채용 네트워크 (중기청)	-	(사)벤처기업협회	온라인 대학취업지원실과 채용수요가 있는 벤처기업 연계사이트	구인: 62,675건 구직: 15,291명	-
	채용박람회 (중기청)	-	지방중기청	지방중기청 등을 활용한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10회 내외)	1.1억원, 14회	5억원, 50회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중기청)	인력지원과	지방중기청	중소기업 채용수요조사 실시 후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직업교육 후 취업알선 * 고용장려금(50~70만원/월), 취업장려금(450~550만원/년), 교육훈련수당 월 30만원, 인력채용패키지사업(기업현장연수수당 : 70만원/월)	-	취업자 2,000명
신규 인력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중기청)	창업진흥과	창업진흥원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지원 인프라 및 실적 등이 우수한 대학을 지역의 창업거점으로 육성 * 15개 대학 이내 선정 (4년제 대학 12개 + 전문대학 3개)	-	최대 305.5억원 (선도대학당 40억원 한도) ('11년도 기준)
	청년창업 사관학교 (중기청)	창업진흥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창업을 준비중인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사관학교와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1대 1 코칭, 창업공간 기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마케팅 등의 창업단계 전분야를 일괄지원하여 청년창업CEO 양성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심의·선정위에서 결정(신청인은 총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현금 5% 이상 + 현물 25% 이하)	-	180억원('11년 기준) 청년창업CEO: 약 200명 내외 경영후계자: 약 50명 내외
	중소벤처창업 대학원 운영 (중기청)	창업진흥과	중기청, 호서대, 진주산업대, 한밭대, 중앙대, 예원예술대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체계적·전문적인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전문가 및 창업자 양성 * 혁신형 창업기반 구축을 위해 창업교육전문가, 창업투자전문가, 예비 기술기반형 창업자 등 창업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사 학위과정 운영 * 연간 600시간 이상 - 강의 35%, 실습 65%로 구성 - 강의는 외부강사 70%이상으로 세미나, 팀티칭 등 실무중심 강의 - 실습과목은 인턴제, 전문가 코칭, 해외연수(연1회) 등으로 구성	-	-
	가업승계후계	벤처	중소기업중앙회	컨설팅, 후계자 양성, 인식개선 및 정보제공 등 원활한 가업승계	1억원, 256명	2억원, 60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자양성 (중기청)	정책과	가업승계지원센터	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가업승계 중요성, 세제이해, 상속세준비전략, 가업승계플랜, 조직관리, 리더십 등(2박3일 단기과정, 총2회 실시) * 경영후계자 장기교육과정 신설 도입		
	기업-공고(대학) 인력양성 (중기청)	인력지원과	지방중기청/교육청	중소기업과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 학교 실습기자재 및 실험자재 구입비용 지원(70%), 참여학생 교육비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등	105억원, 80개교, 참여학생 2,210명	145억원, 75개교, 참여학생 2,200명
	특성화 전문계고 (중기청)	소요부처	소요부처	전략 및 첨단산업의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보급 등 현장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참여부처: 국방부, 문화부, 농림부, 중기청, 특허청	136억원, 71개교	137억원, 66개교
	중소기업 기술사관학교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기청/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인력 확충 및 예비 장인 양성을 위한 전문대(2~3년)와 공업고(3년)간 「5~6년제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공업고는 실습 및 기본교육을, 전문대는 이론 및 기술심화 교육을 담당)	40억원, 10개 컨소시엄	50억원, 10개 컨소시엄
신규 인력	중소기업청년 인턴제 (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운영기관	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29세 청년을 민간기업에서 인턴을 실시하는 경우 인턴기간(최대 6개월)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약정임금의 약 50%를 6개월간 지원 * 인턴기간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일반회계), 정규직 전환시 추가로 6개월간 65만원(고용보험기금)을 실시기업에 지원	1,331억원	1,065억원, 25천명
	글로벌 취업지원 (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해외취업연수 및 해외취업 알선 등 지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한 해외취업연수기관(약 70여개)	203억원	251억원 *해외취업연수(222억원, 6,175명) *해외취업 알선(29억원)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고용지원센터/민간위탁기관	취업으로 청년층에게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참여수당 30만원) * 개별상담·직업지도프로그램(1단계, 4주) → 직장체험·직업훈련 등(2단계, 1~8개월) → 집중 취업알선(3단계, 3개월)	169억원	89억원, 11,000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디딤돌 일자리창출 (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고용지원센터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 일자리 참여를 통해 일정기간 일경험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채용인원 * 해당기관 인원의 50% 이내 채용 * 참여자: 참여수당(주 35시간 근무 기준 월750천원)을 참여단체를 통하여 지급 * 참여단체: 참여수당과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8.5%), 관리운영비(참여자 1인당 월 6만원)를 고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지급	446억원	446억원, 1,000명
	취업성공 패키지 (노동부)	고용지원 사업급여과	고용지원센터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 * 1단계(진단·경로 설정)-2단계(의욕·능력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실시 * 1단계 참여수당(최대 20만원), 2단계 생계유지수당(기준 훈련일수 1일 당 15,000원, 최대금액 월 20만원 이내) 지급 * 취업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20만원,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 시 30만원,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을 각각 나누어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지급	124억원	197억원, 20,000명
	대학취업지원 기능 확충지원 (노동부)	청년고용 대책과	고용지원센터	대학의 진업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통해 청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개교당 평균 120백만원(최대 5천만원), 86개교 지원	143억원	104억원
	전문계고교취업지원기능확충지원 (노동부)	취업지원과	고용지원센터	전문계 고교의 직업진로지도 및 취업활동 지원(공모·심사제) * 신청고교의 사업계획서상 지원신청액에 따라 지원하되, 재학생수에 따라 상한액 설정(기본 2천만원 + (학생수 x 2만원), 최대 4천만원) * 1개교당 평균 30백만원, 149개교 지원	48억원	46억원
신규 인력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노동부)	장애인 고령자 고용과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업 구인수요 및 실직 고령자의 능력을 고려한 패키지(상당 훈련·현장연수-취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50세 이상 고령 구직자에게 해외 구인업체의 구인요건에 부합하는 수준의 해외취업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해외취업을 연계	11억원	52억원, 3,125명
	중장년훈련 수료자	고용서비스 지원과	고용지원센터	전직실업자 재취업훈련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지원	8억원	0.9억원, 32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채용장려금 (노동부)					
	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지원 (노동부)	-	-	성장동력산업 분야에 대한 Sector Council, 특성화 전문계고 지원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 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C) 19개소, 전문계고 35개소	152억원	144억원
	취업에로계층 직업진로개발 지원 (노동부)	-	고용지원센터	청소년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장년층·고령자를 대상으로 취업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선발·지원 * 급여수준: 월 60만원(사회보험료 포함시 69만원) * 근무시간: 1일 5시간, 주 5일 근무 * 사업내용 - 직업진로상담: 청소년 직업심리·적성검사,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자 상담, 관내 학교 순회 서비스 - 종합상담: 취업에로 중·고령 구직자 종합상담, 센터방문자·프로그램참여 자 상담, 사회복지관·자활후견기관·노숙인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순회 서비스 * 대상: 교사·교수, 기업·공공기관의 인사 등 업무, 노동부 퇴직자, 노동·고용분야 관련 공공·민간연구소 근무 또는 연구, 사회단체에서의 상담업무 경력자(해당경력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인 자	7억원	7억원
정착 지원	소기업 CEO 실전경영교육 (중기청)	인력지원과	중소기업연수원	기업경영 노하우나 교육기회가 부족한 소기업 CEO에게 사례중심의 실전경영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핵심리더로 육성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 본원(안산), 지방연수원(경산, 진해, 광주) 실시 * 교육과정의 70% 이상 출석 및 Action Plan 평가 통과자에 한해 수료 인정	5억원, 254명	20억원, 1,000명 (‘11년 25억원, 1,500명)
	고령자 및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노동부)	여성고용과	컨설팅위탁기관	-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등을 위한 컨설팅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80%, 5천만원 한도 - 일자리나누기, 근무체계 개편, 직무분할 등을 통해 단시간근로 일자리를 창출토록 컨설팅 지원 - 단시간근로일자리컨설팅 결과 상용직(무기계약) 단시간근로자 고용시 늘어난 인원에 대해 소요비용 일부 지원 * 신규 단시간근로자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 40만원 한도 - 기업·노사단체의 고령자 임금체계 개선, 직무 재설계 등을 위	18억원	66억원, 164개소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부)	사회적 기업과	고용지원센터	<p>한 고령자 고용컨설팅 지원</p> <p>* 총 컨설팅 비용의 80%, 기업 3천만원, 노사단체 1억원 한도</p> <p>사회적 일자리를 지역사회와 연계, 전략분야 개발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시장경쟁력을 갖추도록 경영,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p> <p>* 기업연계형: NGO-기업-지자체 등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p> <p>* 지역연계형: 지자체·대학·연구소·공공기관·다른 비영리기관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과 결합을 통해 사회적일자리 창출</p> <p>* 모델발굴형: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인큐베이팅하는 초창기 사업으로 기업·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또는 수익모델이 미흡하거나, 향후 기업·지역연계형으로 전환이 가능한 유형</p>	1,885억원	1,487억원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지원센터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능력개발카드를 발급하여 훈련비를 사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저조한 훈련참여율 제고 (연간 1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	148억원	173억원, 69천명
	근로자 수강지원금 (노동부)	능력개발 지원팀	지방고용노동청	이직예정자, 40세 이상의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협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게 훈련비용 지원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자비부담후 사후정산)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 이내	560억원, 281천명	535억원, 276천명
정착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현장 근로인력 등이 자발적 학습활동(학습동아리, 학습공간 구축, HRD 컨설팅 등) 비용 지원(3,000만원 한도)	86억원, 307개 업체	82억원, 250개 업체
	훈련 컨소시엄지원 (노동부)	기업인력 개발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기업·사업주단체·대학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업을 위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운영비 및 시설·장비비 등 지원 * 지원기관 : 102개소(기존 54개소, 신규 14개소, 사후관리 34개소)	783억원, 96개소	737억원, 102개소
	핵심직무 능력향상지원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우수훈련과정을 중소기업 근로자가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와 근로자 인건비 등 지원 * 훈련비 전액(훈련기관에 지급),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일부(시간당 최저임금 100%) 지원	347억원, 71천명	163억원, 24천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전문성 개발	중소기업 연수원운영 (중기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경영자, 종사자의 교육훈련과 현장 맞춤형 연수 지원 * 향상연수(최고경영자, 생산기술, 디지털기술연수, IT·자동화·CAD, 품질 연수, 경영), 맞춤형연수, 기업현장연수, 인터넷·우편원격연수, 국제연수, 한미음연수	144억원, 7,042회, 75,654명	141억원, 2,515회, 69,181명
	중소기업 계약학과 (중기청)	-	지방중기청	중소기업 재직자(중소기업 3년이상 재직, 이·공과계열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말·야간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사내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고급기술인력으로 양성 * 등록금의 70% 이내, 나머지 참여학생 또는 소속기업에서 부담	1개 대학, 35명(시범사업)	20억원, 10개 대학, 250명
	근로자학자금 및 훈련비 대부 (노동부)	기업인력 개발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대 이상에 재학 중인 근로자에게 학자금과 훈련을 희망하는 근로자에게 훈련비 융자지원 * 학자금(연 1~3%, 등록금 전액), 훈련비(연 1.5%, 연간 300만원 한도)	992억원	943억원, 25천명
	중소기업·비정규직근로자 JUMP 지원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기주도적 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모듈식 주말·야간 단기직무과정 제공	150억원	144억원, 57,142명
	능력개발시설·장비자금대부 (노동부)	-	-	사업주, 근로자·사업주단체 및 훈련법인 등을 대상으로 훈련시설·장비 확충비용의 일부 융자지원 * 연리 1~4%, 5년 거치 5년 상환, 1개소당 60억원 한도	100억원	95억원
전문성 개발	전직실업자 취업훈련지원 (노동부)	-	-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에게 훈련비·훈련수당 등 지원 * 월평균 훈련비/1인당 362천원, 평균훈련기간 5개월, 교통비 월 5만원, 식대 월 6.6만원	2,686억원	2,019억원, 114천명
	직업능력 계좌제 (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고용지원센터	훈련생 1인당 일정한도(200만원)의 계좌(카드)를 발급받아 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ETPL, Eligible Training Program List)을 수강하면 훈련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를 훈련생 본인이 부담(저소득층 구직자는 면제)		480억원, 30천명
	구직자직업능력개발지원	-	고용지원센터	신규실업자 등 직업훈련으로 신규실업자 훈련,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새터민 직업훈련 지원	1,246억원	800억원 *신규실업자(40,050명), 여성가장실업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노동부)			* 신규실업자·여성가장·영세자영업자(훈련비 362천원/월, 식비교통비 116천원/월, 여성가장 훈련수당 110천원/월), 새터민(훈련비 362천원/월·690천원, 훈련수당 500천원/월·100천원), 건설일용근로자(25천원/일·인, 훈련수당 15천원/일·인)		자(706명), 영세자영업자(1,272명), 새터민(1,100명), 건설일용근로자(90,000명)
	사업주능력개발지원금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기금 부담 주체인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훈련 실시시 훈련비 등 지원 * 2일 16시간(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인 경우 지원, 훈련비 단가에 따른 훈련비(대기업 80%,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등 지원	3,911억원	4,106억원
	우선선정직종 훈련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지방고용노동청	국가 기간산업 및 정보통신 등 전략산업 중 인력부족직종 중심으로 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실업자 취업 촉진 * 훈련위탁 : 민간위탁기관(8,860명), 대한상공회의소(3,130명)	1,104억원	998억원, 12천명
시스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여성가족부·노동부/지방자치단체 및 고용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경력단절여성 등 구직희망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One-Stop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 '12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계획 * 2개월이상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가장에게 월 15만원의 생계비가 지급	72개소, 8,423명	65억원, 77개소, 9,211명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교육과학기술부)	학연산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 기반 강화,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의 R&D 지원 등을 통한 지역내 산학협력 Hub 기능 강화로 역내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1단계사업('04-'08년), 2단계사업('09년-'13년) *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및 기업 실무 맞춤 교육으로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 일자리 사업: 미취업자 인턴십 제도 -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재교육 및 인턴십 지원으로 산업현장 및 일자리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기회 확대('10년: 300명)	17개대학(360억원) 15개대학(80억원) 12개기관(40억원)	17개대학(380억원) 15개대학(80억원) 12개기관(40억원)
	인력실태조사 (중기청)	인력지원과	-	중소기업 인력수급 현황, 부족인력 등을 조사하여 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	4억원	규제영향평가와 통합 실시 (10,000개 기업조사)
	산업인력구조	인력지원과	중기청/	사업주단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적자원관리·공동필	25억원, 20개	26억원, 20개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고도화 (중기청)		중소기업중앙회	요인력 확보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조합의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60~70%를 지원(나머지는 조합 자체 자금으로 조달) * 중소기업의 양적·질적 인력부족현상 해소를 위한 재직자 대상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지원분야 - 공동인적자원개발 분야: 기술/경영 현장교육, 사내훈련, 중소기업형계약학과 - 공동인력채용관리 분야: 공동채용박람회,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등	조합, 116개 프로그램, 참여업체 4,406개, 5,710명 참여	조합, 100개 프로그램, 참여업체 4,500개, 6,500명 참여
	워크넷 (노동부)	-	-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구직 포털사이트로 직종별, 분야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된 실시간 채용정보 제공	구인: 69,377건 구직: 695,858명	-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노동부)	인력수급 정책과	노동부/지자체/지역노사민정 협의체(또는 지역고용심의회)	지역 주도형 특화사업,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행하는 사업비 일부를 사업공모를 통해 각 지역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원 * 사업유형별 예상배정비율은 '시·도간 경쟁사업비(30%)'와 '시·도내 경쟁사업비(70%)' * 16개 시·도별 평균 1,048백만원 지원	121억원	171억원
시스템	한국폴리텍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11개)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 다기능기술자(15천명, 2년), 기능장·기능사(7천명), 집체훈련(12천명) 등	1,100억원	1,050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능력개발사업지원 (노동부)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원 양성(4천명), 직업훈련교원기술개발연수 및 직업훈련교구재개발 등	302억원	278억원
	산업인력공단 능력개발사업 지원 (노동부)	-	-	기업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민간훈련기관 지원 등	332억원	337억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력 정책과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한국어·생활법률·한국문화 교육 등 직업생활 지원에 위해 민관공동으로 설립·운영 지원	3개소 신설 (총 7개소)	52억원, 7개소

사업 유형	사업명 (주무부처)	담당 부서	수행 기관	주요 사업내용	2009년	2010년
	(노동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노동부)	기업지원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적자원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에 우수한 기관을 선발,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 *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동명의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40개 기관 선정	51개 기관 선정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양성 및 커뮤니티 운영 (노동부)	-	-	중소기업 HRD 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정보교류 등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3억원	3억원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 (노동부)	-	-	산업단체, 대표기업, 교육훈련기관,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개별 산업내 인력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방안을 도출 추진을 위한 민간주도의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지원 * 산업별 협의체의 역량제고를 위해 직무교육·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120억원	114억원

참고 문헌

- 강대구, 이근수, 정철영. 2002. 「창업농 지원사업 효율화 방안」. 농림부.
- 강대구, 정철영, 이종상. 2004. 「농업인력구조변화에 따른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 연구」. 농림부.
- 강대구. 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농림부.
- 강진구 등. 2006. “복합경영과 전문경영의 기준설정 및 경영성과 비교”. 「농업경영·정책연구」 33(3): 727-748.
- 김경덕. 1998. 농업인력의 현황 분석과 중장기 수급 전망.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등. 2009a. 「신농업 비전과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병률 등. 2009b. 「농어업 선진화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과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등.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수석, 김태곤, 강혜정. 2006. 「맞춤형 농정을 위한 농가유형 구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6. 「맞춤형 농정 추진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07. 「농가의 경제사회적 성격변화와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등. 2010. 「농업·농촌 2030/50 비전과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외. 2000.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마상진. 2005. 「신규 취농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호, 허덕. 2000. “농업경영 컨설팅의 시장 성격과 가격 분석”. 「농촌경제」 23(3)
- 김정호. 1983. “자립경영의 목표와 규모 기준에 관한 고찰”. 「농촌경제」 16(4): 67-80.
- 김종숙, 민상기. 1994. 「농업에 대한 국민의식과 사회적 인식 제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진모 등. 2005. 「농어업인 교육정책 혁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 김호탁 외. 1993. 농업인력 올바른 인식과 대책. 서울: 농민신문사.
- 나승일 등. 2005.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모형 및 평가지표 개발」. 농림부.
- 나승일, 정철영, 김재식. 1999. 산업인력구조 고도화 지원 촉진법 제정방안 연구. 서울: 교육부.
- 노동부. 2008. 「노동부와 함께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 농림부 경영인력과. 2005.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개선방안」.
- 농림부. 1998a. 가족농 중심의 농업구조 정책방향: 가족농의 규모화·전문화·협동화 방

안. 경기: 농림부.

- 농림부. 1998b. 1998년도 농업인력 육성 현황. 경기: 농림부 농업정책국.
- 농림부. 2000a.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대비한 지식농업 추진방향. 경기: 농림부.
- 농림부. 2000b. 2001년도 농림정보화촉진시행계획. 경기: 농림부.
- 농림부. 2001a. 신지식농업인 발굴·육성 계획. 경기: 농림부.
- 농림부. 2001b. 농업인력 육성 대책. 안. 내부자료.
- 농림부. 2001c. 2001년도 농업인교육훈련계획. 경기: 농림부.
- 농림부. 각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 농림부, 농촌진흥청. 1998. 농업인후계자·전업농가 경영실태조사보고서. 경기: 농림부·농촌진흥청.
- 농림부. 각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부. 각년도.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부. 2004. 「농업·농촌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
- 농림부. 2004. 「쌀 전업농 육성 종합대책」.
- 농림부. 2004. 「정예농업인력육성 종합대책」.
- 농림부. 2006. 「농업교육체계 개편방안」.
- 농림부. 2007. 「프로농업인 만드는 신바람 교육: 2007 농업교육계획」.
- 농림부. 각 연도. 「농림업 주요통계」.
- 농림수산부. 1984-1996. 농림수산주요통계. 경기: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부. 1991. 「농어민후계자 경영실태 조사결과 및 향후 육성 지원방향」.
- 농림수산부. 1995~1996.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
-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농림수산식품부. 각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수산식품부. 2010. 「창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 농정발전기획단. 2001. 주요 농정지표의 전망과 목표. 잠정. 서울: 농정발전기획단.
- 농촌진흥청. 2001a. 2001년도 4-H 육성 현황.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 2001b. 후계농업인 사업추진 실적. 내부자료
- 농촌진흥청. 2001c. 200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 경기: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1999. 지식농업 현장리포트. 경기: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2005.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 사례집」.
- 마상진 등. 2005. 「농업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박대식. 2008. 「농업계 대학생의 영농분야 신규유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정기환. 2008. 「신규 취농의 진입장애 해소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최경은. 2007. 「농업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학습 활성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최경환. 2008. 「선진 농업국의 농업교육 정책동향 및 우수사례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 2006. “농업인의 교육·훈련 참여 요인.” 「농촌경제」 29(3): 33-50.
- 마상진. 2008. “마을 사무장제도의 현황과 발전과제.” 「강원농수산포럼」 82: 7-39.
- 마상진·박대식·김강호. 2010.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진단 및 성과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민상기, 정명채. 1995. 「12월 연구 보고: 귀농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승규. 1999. 벤처농업의 가능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박대식, 김정호. 1999.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규 외. 2000. 농업경영체 시대별 발전 모형과 정책방향 연구.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 2003.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훈련의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등. 2007.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성재 등. 2008. 「선진국형 농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원규 외. 2000. 정밀농업을 위한 농업기계시스템. 수원: 농촌진흥청 농업기계화연구소.
- 박재민, 박명수, 김형주, 조현대, 박동배, 임하얀. 2006. 「고급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부 지원사업의 성과평가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배성의 등. 1998. 「귀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도농업기술원
- 설광언. 1993. 농업선진화를 위한 인식전환과 정책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설광언. 1994. 농업구조전망과 농정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설광언. 1998. 농업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손여석. 1999.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동향과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연구. 광주: 산경연구.
- 안덕현 등. 2001. 「농업인력 확보 및 육성방안 연구」. 한국농업전문학교.
- 오내원 등. 2006. 『농가등록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오상봉 외. 1998. 지식기반산업의 발전방안. 서울: 산업연구원
- 윤호섭, 박동규, 이영대. 1992. 「농업인력의 확보유지 및 교육훈련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하, 서규선. 1990.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의 성과와 발전과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22(4): 39-48.
- 이영대, 김종숙, 정명채. 1993. 「농업계 교육체제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대, 정명채. 1990. 「농촌인력의 체계적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영대. 1995. “농민의 직업관 및 거주지역에 대한 의식구조.” 「농촌사회」 5: 151~170.
- 이용환 외.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서울: 농림부.
- 이용환, 정철영, 나승일, 서우석, 강대구, 김수옥. 2000. 「21C 신지식농업인화 방안 및 교육·훈련 연구」. 농림부.
- 이정환. 2001. 한국농업과 농정 :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농정의 틀.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종성 외. 1997.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생활지도 활성화 방안.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기술인력연구소.
- 이현목. 2008.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진단과 과제.” 「한국농어민신문 창간28주년 기념세미나」.
- 정명채 외. 1997. 농업구조 개선과 중소농 대책.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명채, 민상기, 이영대. 1991.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지웅, 김성수. 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림부.
- 정철영 외. 2000. 농업계열 전문대학 재학생의 직업기초능력 향상방안. 경기: 신구대학.
- 정철영, 이무근, 이용환, 나승일. 2001. 「21세기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농업인력 육성방안」. 서울대학교.
- 정철영. 2000. “IMF에 따른 귀농희망 실업자를 위한 영농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1): 1-26.
- 중소기업청. 2008.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 '05년~'09년) 2008년 시행계획」
- 최경환, 마상진. 2008. 「초·중등학교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교과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 2009. “농림사업의 연령제한 실태와 개선방안.” 「KRIE 농정연구속보」 제56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경환·마상진·김강호. 2010. 「한국농수산대학 학과 신규개설 타당성 조사」. 한국농촌

- 경제연구원.
- 최양부 등. 1983. 「농가경제의 유형과 성격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 1999. 1999년 한국의 사회지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00. 농업기본통계조사 보고서. 대전: 통계청.
- 통계청. 각연도. 「농가경제조사」.
- 통계청. 각연도. 「농업조사」
- 통계청. 각연도. 「농업총조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한국농정 50년사」.
- 기업승계지원센터. 2011. 「지원전략」. <http://www.successbiz.or.kr>
- 고용노동부. 2011.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소개」. <http://newstart.hrd-net.co.kr>.
- 김정호, 허덕, 김연중. 2000. 「농업경영 컨설팅 체계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현권. 2008. 「한국의 정예농업인력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농업인 후계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승일 외. 2005. 「2005년 농업교육훈련 평가사업」. 농림부.
- 나승일 외. 2006. 「2006년 농업교육훈련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 농림부
- 내일신문. 2006.2.1. 「후계농업인지원사업 특혜논란」.
- 농어민신문. 2009. 「농업교육체제를 바꾸자」(2.19일자, 2.26일자, 3월5일자).
- 박은우 외. 2010.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2): 1-265.
- 양덕승. 2006. 「농업경영 컨설팅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철 외 2009a. 「2008년도 농업인교육훈련평가 농고 현장체험교육 평가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정진철 외 2009b. 「2008년도 농업인교육훈련평가 농대 영농정착교육 평가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중소기업청. 2011.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http://www.smba.go.kr>.
- Cressman, R. J. 2000. *Farm Family Succession in the 21st Century*. The University of Guelph.
- ERS. 2010. *Structure and Finance of US Farms*.
- RIRDC. 2007. *Farm Succession and Inheritance*.
- Taylor-Powell, E. & Henert, E. 2008. *Developing a Logic Model: Teaching and Training Guide*. University of Wisconsin-Extension.
- USDA. 1997. *Introduction to Risk Management*.

관련

연구보고

농림수산물 인력육성정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1. 4.
발 행 2011. 4.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ㅇㅇ인쇄사
02-739-3941~5 <http://www.>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